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여성장애인차별에 관한 사례연구

- 고등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국가인권위원회

여성장애인차별에 관한 사례연구

- 고등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2. 12. 30.

주관연구기관명: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책임연구원: 김은실(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여성장애인차별에 관한 사례연구

- 고등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책임연구원: 김은실(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박승희(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김광이(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정책자문위원)

나수현(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 석사과정)

박하연(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과정)

보 조 원: 양은진(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 학사과정)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목 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범위 ····· 2

Ⅱ. 선행연구

1. 여성장애인차별에 대한 기존연구 ····· 3
2.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기존연구 ····· 6
(1) 장애인 고등교육의 개관 ····· 6
(2)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에 대한 실태 조사 ····· 8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 10
2. 연구 방법 및 절차 ····· 13

Ⅳ. 여성장애인차별에 관한 사례연구 결과: 대학 진학준비에서 졸업 전후 취업준비까지

1. 여성장애인의 차별감수성 및 차별에 대한 대응 양식 ····· 15
(1) 여성장애인의 차별감수성 ····· 15
(2) 여성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대응 양식 ····· 27
2. 여성장애인이 지각한 차별 ····· 33
(1) 대학 진학 이전의 교육 과정에서의 차별 ····· 33
(2) 대학 입학 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 39
(3) 대학의 물리적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차별 ····· 51

(4) 대학의 학습 과정에서의 차별 ····· 63
(5) 대학의 취업 지원 과정에서의 차별 ····· 77
(6) 여성장애인에 대한 학내 성희롱·성폭력 ····· 81

Ⅴ. 여성장애인 관련 법 · 규범 및 정책 고찰
1. 국내 법 · 규범 및 정책 고찰 ····· 92
(1) 여성 관련 법 · 정책과 여성장애인 ····· 92
(2) 장애인 관련 법 · 규범과 여성장애인 ····· 98
2. 국외 법 · 규범 및 정책 고찰 ····· 104

Ⅵ. 결론
1.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재개념화: ‘이중차별’에서 ‘여성장애인 차별’로 ····· 109
2. 여성장애인차별의 특성 ····· 110
3.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 ····· 112

· 참고문헌 ····· 113
· 부록 1. 면접지 ····· 117
· 부록 2. 자문회의록 ····· 123

표 목 차

<표 1> 여성장애인 교육이수정도 비교 ····· 2
<표 2> 연도별 특별전형제도 실시 대학 및 입학생 현황 ····· 10
<표 3> 연구 대상자 현황 ····· 11
<표 4> 연구 대상자의 장애 정도 분포 ····· 13
<표 5> 연구 대상자의 대학 이전의 교육형태 분포 ····· 13
<표 6> 연구 대상자의 연령 분포 ····· 13
<표 7> H 장애인 기관에 재직중인 장애인 직원의 성별 분포 ····· 80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범위 모형 ····· 3

연구 요약

본 연구는 고등교육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이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주변적 위치에 처해있음으로 인해 겪는 차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사례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장애인을 심층 면접하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가 제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장애인은 대학입시준비 및 입시전형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가? 둘째, 여성장애인은 대학교육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가? 셋째, 여성장애인은 대학 졸업 전후의 취업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가? 넷째 이러한 차별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이며, 이는 남성장애인 및 비장애여성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가? 다섯째, 여성장애인이 경험한 차별경험은 이들의 차별감수성 및 차별에 대한 대응양식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가?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 및 비장애여성과는 다르게 차별을 경험할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차별문제에 접근한다. 여성장애인은 여성차별과 장애인차별이 중첩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과, 장애인문제에서 배제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 여성문제에서 배제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 이 세 가지 형태의 차별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발생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경험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이 겪는 차별경험은 때때로 비장애여성의 경험과 같을 수도 있고 남성장애인의 경험과 같을 수도 있지만, 결코 어느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의 사회적 위치에서 겪는 차별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장애인이 대학을 진학하는 데에는 가족과 고등학교 교사의 영향이 매우 크며, 이들이 여성장애인에 대해 갖는 낮은 기대치나 과보호 태도는 여성장애인의 대학진학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 교육 과정에서 교수가 여성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낮은 기대치나 성 차별적 · 장애 차별적 태도는 여성장애인의 학업의욕을 저하시키고, 여성장애인에게 취업 기회에서 박탈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대학생활 유지를 어렵게 하

고 사회로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활에서 교수와 동료, 교직원, 기타 교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성장애인에게 가하는 폭언 및 성폭력은 여성장애인의 대학생활 유지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 내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의 부재 및 적절하지 않게 설치된 편의시설은 여성장애인의 신체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대학 내에서의 이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원활한 대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여성장애인이 지니고 있는 차별감수성은 여성장애인이 대학 교육 과정에서 겪은 차별을 인식하고 언어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대학당국은 각 대학에 재학 중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 해소를 위해서 학교의 장애학생 지원체계를 성 인지적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대학 교육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이 전체 여성장애인 중 극소수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전체 여성장애인이 겪는 차별의 특수성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고학력 여성장애인차별에 대한 최초의 연구이며 이는 그동안 비가시화되어 왔던 집단으로써 고학력 여성장애인이 겪는 차별경험을 드러냄과 동시에 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여성장애인에게 새로운 역할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여성장애인은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주변적 위치로 인해 교육, 고용, 기타 사회생활 등에서 심각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에 게 가해지는 성희롱·성폭력은 여성장애인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의 지위를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성장애인차별을 구성하는 차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여성차별과 장애인차별이 중첩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이고, 둘째는 장애인문제에서 배제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이며, 셋째는 여성문제에서 배제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차별은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주변적 위치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여성장애인차별이 어떤 내용인지를 고등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대학은 우리 사회에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1980년 중반 이후 대학의 양적 증가[1]는 엘리트 단계의 교육으로 시작된 한국고등교육을 대중화시켰고, 이는 대학교육을 이수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권리와 힘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자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가정과 사회에서의 차별로 인해 대학에의 접근이 차단되어왔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의 교육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1995년부터 실시된 [특수교육대상자대학입학특별전형제도][2](이하 특별전형제

---

1) 1985년부터 1995년까지의 10년 간에 무려 72개의 대학이 새로 설립되었고, 그 중에도 4년제 대학이 가장 많은 31개교의 증가를 보여 한국고등교육사상 최대의 성장을 보였다. (송미섭, 한국고등교육의 변천: 1945-1995, 34쪽,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Vol.12. July 1996, pp. 31-52)

2) 이 제도는 장애인 복지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해 장애 등록을 필한 자로서 특수교육진흥

도)는 국가가 장애인의 대학입학을 제도화하면서 그 동안 요구되어오던 소수자로써의 장애인의 교육권을 수용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서 장애인의 대학 진학률은 증가했고, 이제 '장애대학생'이라는 새로운 범주가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등의 학문영역에서 연구 대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대학입학이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은 성 차별적인 교육환경에 의해 여전히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2000년도 전국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학을 졸업한 남성장애인은 전체 남성장애인의 약 11%에 이르는 반면, 같은 경우 여성장애인은 전체 여성장애인의 약 4%에 머무르고 있다.[3] 이러한 통계적 불균형은 대학진학이전 및 진학 이후의 대학생활유지에서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과는 다른 내용의 차별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차별적인 교육환경이 여성장애인에게 가시적, 비가시적인 배제의 원리를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학 입시준비에서 대학 졸업 전후의 취업준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이 어떤 유형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지 밝히고, 차별 해소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범위

법 제 10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거하여 입학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3) <표 1> 여성장애인 교육이수정도 비교 (단위: %)

	재가장애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전국민 (통계청, 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초등학교 이하	69.4	43.1	53.3	30.6	20.6	25.6
중등학교	11.1	16.1	14.2	14.4	12.8	13.6
고등학교	15.3	29.5	24.1	34.4	34.9	34.7
대학 이상	4.2	11.2	8.5	20.6	31.7	26.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출처: 서울시・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대학교육과정이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여성장애인이 겪는 차별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즉 여성장애인이 4년제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겪는 차별경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 차별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를 모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범위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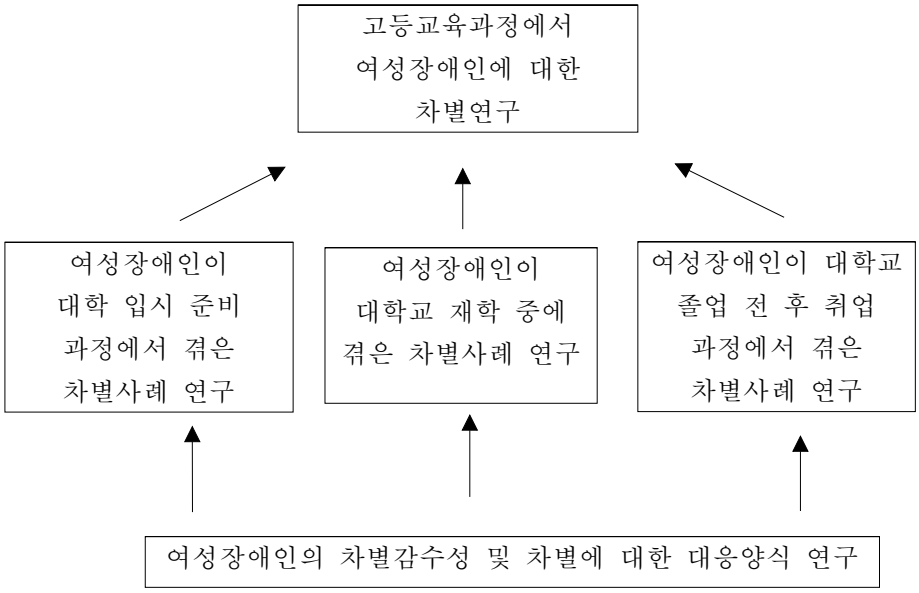

Ⅱ. 선행연구

1. 여성장애인차별에 대한 기존 연구

국내에서 여성장애인이 장애인 집단과 분리되어 하나의 범주로 연구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성별 분리통계의 의무가 제시[4]되면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성별 분리통계가 이루어졌는데, 여성장애

4)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제14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2항에서는 5년마다 시행하는 장

인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러한 통계자료를 이용한 실태조사는 대부분의 여성장애인 연구에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권선진(1996)은 성별 분리통계를 이용해 여성장애인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성을 설명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복지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 및 각 지역의 여성장애인단체에서도 다양한 주제로 설문조사를 이용해 새롭게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서 여성장애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5] 하지만 통계를 이용한 실태조사는 여성장애인이 주변적 위치에서 겪는 복합적인 차별 경험을 단순화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이수정도에 있어서 남녀 장애인의 차이, 여성장애인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가족 내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을 드러내는데 한정되어 있을 뿐, 학교라는 성별화된 제도 내에서 교육받는 당사자로서 여성장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양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이용한 연구가 실시되기도 했다. 김정애·오혜경(2000)의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해 생활전반에서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이 교육기회에 접근하고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겪는 차별실태가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을 '이중차별'로 명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차별'을 어떻게 개념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다. 김은정(1999)은 심층면접을 통해 장애와 성별이 구체적인 삶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사의 차별적인 태도가 어떻게 여성장애인을 교육과정에서 배제하는지 부분적으로 볼 수 있다. 즉 대학교육 이전의 교육과정에서 교사는 여성장애인에게 질문하지 않기, 특정활동 면제하기, 취업관련해서 추천하지 않기, 무성적 혹은 중성적 존재로 대하기 등 여성장애인을 비장애인 및 남성장애인과 질적으로 다른 기대수준을 갖고 대하는 것으

애인실태조사에서 성별, 연령, 학력, 가족상황,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장애발생원인 등을 세분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자료: http://www.idhome.net/welfare_low.htm)

5) 최근에 실시된 여성장애인 관련해 양적 방법으로 실시된 실태조사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2002), 대구여성장애인연대의 [여성장애인자립생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2002), 제주DPI 장애여성특별위원회의 [제주도 장애여성실태 및 차별에 관한 연구](2001), 성남여성의전화의 [여성장애인의 일상을 통해 본 실태조사](2001)를 들 수 있다.

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내의 여성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성별성이 어떻게 나타나며, 그 결과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과 어떻게 다른 차별을 경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대학진학 및 대학생활 유지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이 성별화된 경험을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외국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연구 중 Morris(1991)와 Wendell(1996, 2001)의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성장애인 연구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 연구들은 장애의 문제를 환경과 사회적 태도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사회에서 장애인의 지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유용하지만, 이런 태도가 장애의 개인적 경험을 직시하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장애의 개인적 경험을 외면할 때, 장애문제는 하나의 범주로 통일되고, 장애인 집단 내부의 차이는 무시되며, 결국 장애인 집단 내의 소수자로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비가시화 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외국의 여성장애인 차별사례나 차별 현황에 대한 조사물을 통해서 외국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떤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선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1992년에 조사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16세에서 64세까지의 노동을 하지 못하는 장애(이하 노동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의 빈곤 비율은 전체 여성장애인의 33.8%로써 갖은 조건의 남성장애인의 빈곤 비율 24.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증 노동장애인의 경우 남성은 31.2%가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데 반해 여성은 40.5%가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6] 또한 미국에서 고등교육 이수에 대한 비율을 비교해보면, 비장애여성의 고등교육 이수비율은 31%, 남성장애인은 28%인데 반해 여성장애인은 16%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캐나다의 여성장애인 25명을 대상으로 한 프랜 오데트의 연구에는 여성장애인

---

6) 장애여성공감의「공감」3호(2000)내에 실린 '미국여성과 장애 통계조사'(49쪽)에서 재인용.

7) Rannveig Traustadottir, Center on Human Policy(1990). *OBSTACLES TO EQUALITY: The Double Discrimina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Overview Article.* (자료출처 http://dawn.thot.net /disability.html)

운동이 여성운동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여성운동계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 그 회의장소가 접근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접근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경우 회의에 참석한 여성장애인은 프라이버시가 거의 보장되지 않거나 전혀 주어지지 않는 화장실을 사용해야만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찾기 위해 몇 마일씩 이동해야 했다. 또한 회의장소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위층이나 아래층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2.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기존 연구

(1) 장애인의 고등교육의 개관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특수교육 정책연구인 “특수교육 발전 5개년(2003-2007) 종합대책”(박승희 외, 2001. 11)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안(‘03-’07)”(교육인적자원부, 2002. 3. 28)에서는 특수교육 요구 학생이 변화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수교육 요구 학생의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를 정책의 한 방향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 동안 장애 학생의 초·중등 특수교육에 중점을 두었던 정부가 그들의 고등교육에까지 관심을 갖고 교육의 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장애인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1995년부터 교육부(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7년 교육부의 특수교육 발전방안 가운데는 원격 학사제도 도입과 재활전문대학 설립, 장애인 교육 시범대학 지정 운영 등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다(김동연, 김동환, 1998).

김동연과 김영환(1998)은 그들의 연구에서 이 제도는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을 정원 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로 경쟁 입학제도에 비해 정원 외라는 특별 대우를 부여하며 장애인의 진정한 평등에 어느 정도 괴리되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 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

8) 장애여성공감의「공감」2호(1999), 캐나다 장애여성운동 1983-1993(54쪽)에서 재인용

에 비해 여러 학습의 기회와 활동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실정을 생각해 볼 때 이 제도는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고등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들도 있다. 조남순(2001)은 특별전형 제도의 특성을 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사람들의 선발과 양성, 사회 보상적 차원의 노력, 교육이념의 본질에서 정당한 것, 사회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적 자세, 장애인들의 풍부한 잠재 능력 개발의 바탕을 마련하는 가치를 지닌다고 하였다.

국내의 경우 1995년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한 이후 장애 학생의 고등교육의 기회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이 제도를 중심으로 장애학생의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원종례(2001)의 연구에서는 장애 대학생들이 학교생활, 학업 수행, 대인관계, 진로 및 취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고, 박계순(2000)은 각 대학의 교육 환경 뿐 아니라 각 대학의 모집요강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 선발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고, 또한 입학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실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들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계열별, 학과별로 학생들의 적성이나 수학능력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무조건 입학을 허락하여 모든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능력에 관계없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도록 유도하고, 입학 이후 수학의 어려움으로 중도 탈락을 유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들이 장애인편의시설이나 보장구 등을 구비하지 않고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등 조건부로 입학을 허락하여 이 제도를 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 없이 대학의 재정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정동영, 김용득, 김종인, 김주영, 2000).

한편, 박경숙(2000)은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학교의 경우 고등부 재학생의 1/3 내지 1/2이 대학 입학을 희망하여 직업교육을 강조하는 특수학교 고등부의 교육과정의 일부를 대학 입시위주로 전환하게 되어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의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대학 입학 이후의 장애학생들의 학교 생활 실태 조사와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김동연, 1997; 김동연·김동환, 1998; 김천우, 2000; 박계순, 2000; 양재신, 2000; 원종례, 2001 등)와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연구(박경숙, 2000; 박계순, 2000; 정동영·김용득·김종인·김주영, 2000 등)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장

애 학생의 고등교육 이전의 교육환경 및 제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고, 여성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2) 특별전형제도에 대한 실태 조사

1) 선발 방법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특수교육 진흥법 제 10조[9]에 의거, 전문대학 이상 각급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장관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선정 기준은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 9조 2항, 별표의 진단, 평가, 심사 및 선정의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실제 업무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관장하고 있다(김동연·김영환, 1998).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대통령령 제 15,665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29조 2항과 제 31조 3항[10]에 있다. 선

9) 제 10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
5.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6. 언어장애
7. 학습장애
8.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

10)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 28조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 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를, 제 3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 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5(방송·통신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를, 제 5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 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제 8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 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제 2호, 제 3호 및 제 5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 학생수는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발 방법은 특차모집, 정시모집, 수시모집 등으로 나누어서 실시되며, 이는 각 대학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입학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장이 원서를 작성하여 시·도 교육감과 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 또는 총·학장에게 장애인 수첩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지원하고, 해당 총·학장은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 및 대학 면접 등을 통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한다.

2) 현황

특별전형제도를 처음 실시한 1995년에는 전국의 6개 대학이 이 제도를 통해 총 107명의 학생을 선발했으며, '96학년도에 16개 대학에서 201명, '97학년도에 30개 대학에서 234명, '98학년도에 39개 대학에서 298명, '99학년도에 40개 대학에서 349명, 2000학년도에 48개 대학에서 313명, 2001학년도에 43개 대학에서 360명을 선발하였다(<표 2> 참고).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03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정시모집요강에 의하면,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대학은 국공립대 2곳, 사립대 24곳, 산업대 2곳 등 총 28개 대학으로 선발 인원은 594명이다.(장애인 복지 신문, 02. 11. 15일자)

---

2. 재외국인 및 외국인(제 6호 및 제 7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3.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제 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전문대학의 경우를 제외한다)
4. 특수교육진흥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5.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
6. 북한 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 나라의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인 및 외국인
8.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31조(학생의 선발)
③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 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표 2> 연도별 특별전형제도 실시 대학 및 입학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 학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대 학	실시대학수	6	16	30	39	40	48	43	222
	입학생수	107	201	234	298	349	313	360	1,977
전 문 대 학	실시대학수	2	2	6	6	6	9	11	42
	입학생수	6	16	42	57	47	55	61	320
계	실시대학수	8	18	36	45	46	57	54	264
	입학생수	113	217	276	355	396	368	421	2,297

자료출처: 교육인적자원부, 2001, p. 27

한편, 지난 2000년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국정 감사 자료로 제출한 '각종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 학사경고와 자퇴, 휴학 등의 학과부적응자 현황'에 의하면 대학에 입학한 장애 학생 10명 중 3명 꼴은 학사 경고를 받은 적이 있거나 휴학, 또는 자퇴하는 등 학과 적응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97년부터 2000년까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한 전국 4년제 대학 30개교에 등록한 장애 학생 수는 974명이며 이 중 18.2%에 달하는 177명이 학사경고를 받았고, 114명(11.7%)은 휴학을 한 경험이 있으며 52명(5.3%)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양재신, 2000).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대상자 발굴을 위해 먼저 통계자료에서 장애대학생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대학을 선정한 후, 각 대학의 입학처 및 관련 행정 부서들을 통해 공식적인 연락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많은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특별전형제도로 입학한 학생의 숫자만 파악하고 있을 뿐 이들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이들을 관리하는 행정부서도 부재하였고, 나아가 일반전형이나 편입을 통해 재학중인 장애대학생에 대한 정보나 졸업한 장애대학생에 대한 정보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여기서 연구자들은 일차적으로 장애대학생에 대한 학교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대학을 통해 소개받은 몇몇 학생들의 경우, 자신들의 개인 정보가 이미 학교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후의 불이익을 걱정하고 있었으며, 결국 이들에 대한 사실적이고, 심층적인 면접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대학을 통한 공식적 통로를 통한 면접 대상자 발굴이 사실상 어렵고, 또한 학교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했을 경우, 원하는 정보 및 차별 사례를 얻어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대상자 발굴은 몇몇 대학에 있는 장애 학생 관련 동아리 및 자치기구와 여성장애인 단체, 장애단체의 여성위원회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지난 10월에 시작한 심층면접은 11월 중순에 마무리되었고, 총 28명의 여성장애인을 심층 면접하게 되었으며 연구 대상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3> 연구 대상자 현황

재학/졸업	일련번호	전공계열	입학형태	장애유형 및 정도
재학생	사례1	정치행정학부	특별	뇌병변장애 1급
	사례2	공학부	특별	지체장애 1급
	사례3	사회과학부	특별	시각장애 1급
	사례4	인문학부	특별	시각장애 1급
	사례5	공과대학	특별	지체장애 2급 (근디스트로피)
	사례6	미술대학	특별	청각장애 2급
	사례 7	사범대학	특별	청각장애 2급
	사례 8	사범대학	특별	뇌병변장애 2급
	사례 9	인문사회과학대학	특별	시각장애 1급
	사례 10	예체능계열	일반 (특차)	시각장애 1급
	사례 11	사회복지학	일반	시각장애 1급
	사례 12	재활학부	일반	지체장애 1급

재학/졸업	일련번호	전공계열	입학형태	장애유형 및 정도
재학생	사례 13	사회과학대학	특별	지체장애 1급
	사례 14	인문대학	특별	뇌병변장애 2급
	사례 15	법정대학	일반	지체장애 3급
졸업생	사례 16	디자인대학	특별	뇌병변장애 2급
	사례 17	정치행정학부	특별	뇌병변장애 3급
	사례 18	사회과학부	특별	지체장애 1급 (근디스트로피)
	사례 19	인문학부	일반	시각장애 1급
	사례 20	사회과학부	특별	뇌병변장애 1급
	사례 21	재활학부	특별	뇌병변장애 2급
	사례 22	인문학부	특별	시각장애 1급
	사례 23	사범대학	특별	뇌병변장애 6급
	사례 24	행정대학	특별	지체장애 1급
	사례 25	사범대학	일반	시각장애 1급
	사례 26	법정대학	일반	지체장애 2급
재학생	사례 27	사회복지학부	특별	뇌병변장애 1급
	사례 28	재활과학대학	특별	뇌병변장애 3급

* 위의 장애 유형 분류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한 것임.

면접 대상자는 총 28명이고, 그 중 대학 재학생은 17명, 졸업생은 11명이고, 이들의 최소 연령은 20세, 최고 연령은 32세이다.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20명,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8명이고,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에는 편입을 한 학생이 2명 포함되어 있다.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 8명, 뇌병변 장애인 10명, 시각장애인 8명, 청각장애인이 2명이고, 장애 정도를 살펴보면, 1급이 16명, 2급이 8명으로 대부분 1, 2급의 중증 여성장애인이 많다. 연구대상자 대부분은 선천성 혹은 취학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이들 중 2명은 대학 진학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중도 장애인이다. 한편 이들이 대학 진학 직전에 다닌 교육형태의 현황을 살펴보면, 특수학교 13명, 실업계 고등학교를 포함한 일반학교 11

명, 예술고등학교 1명, 검정고시 3명이다. 이들 중에는 일반학교를 다니다가 특수학교로 전학을 갔거나 일반학교를 다니다 중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본 경우도 있다. 면접에 응한 학생들이 재학 중인 대학의 지역 분포는 서울 12명, 경기 1명, 충청권 5명, 전라권 3명, 경상권 5명, 제주도 2명이었고, 총 대학의 수는 15개 대학이다.

<표 4> 연구 대상자의 장애 정도 분포 (단위 : 명)

구분		장애정도				계
		1급	2급	3급	4급이상	
장애유형	지체장애	5	2	1	0	8
	뇌병변장애	3	4	2	1	10
	시각장애	8	0	0	0	8
	청각장애	0	2	0	0	2
계		16	8	3	1	28

<표 5> 연구 대상자의 대학 이전의 교육형태 분포 (단위 : 명)

학교유형	특수학교			일반학교			독학(검정고시)	계
	지체	시각	청각	인문계	실업계	예술고		
대상자 수	7	6	0	10	1	1	3	28

<표 6> 연구 대상자의 연령 분포 (단위 : 명)

연 령	20-25세	25-30세	30세 이상	계
대상자 수	16	8	4	28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존 여성장애인 관련 많은 연구들이 통계 중심의 양적 연구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치고 있어 통계적인 수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거나 여성장애인의 복잡한 경험을 그대로 살려내는데 많은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여성장애인이 일대일로 평균 2시간 정도에 걸쳐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방법은 대체로 미리 준비해 간 질문지에 맞추어 연구자가 질문을 하고 연구대상자인 여성장애인이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면접내용은 대체로 녹음기를 이용하였

고, 청각장애인의 경우 노트북을 이용해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모든 녹음은 다른 사람에게 녹음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후 시작되었고, 녹음에 대해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갖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설득을 통해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최대한 줄인 후 녹음을 시작하였다. 면접장소는 대체로 면접에 응한 여성장애인의 집이나 재학중인 학교의 빈 강의실 또는 기숙사에서 이루어졌고, 때때로 커피숍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녹음한 자료는 면접이후 연구자가 다시 들으며 컴퓨터로 내용을 입력하면서 음성자료를 문서자료로 변환시켰다. 음성자료를 문서자료화 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면접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행동과 말투를 괄호 '( )'나 점 '…'등을 이용해서 표시하였고, 사투리나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도 그대로 글로 옮겼다. 이렇게 면접자료를 문서화한 후, 차별사례 분석시 각 차별 유형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발췌해서 인용하였다. 특히 면접자료 인용시 면접에 응한 여성장애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였다.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대학교를 졸업한 여성장애인이 극소수인 상황에서, 면접자료 인용시 짧은 내용만으로도 신분이 밝혀질 위험성이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대상자 현황을 제시할 때, 전공을 표기하는 대신 각 학교에서 전공이 소속되어 있는 단과대학명을 표기했다. 예를 들어 A 대학 영문학과 재학 중인 여성장애인의 경우, A 대학에서 영문학과 인문학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공계열을 인문학부로 표기했다. 또한 '사례 1', '사례 2'와 같이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면접에 응한 여성장애인 각각을 구분하였다.

면접자료에 대한 분석을 돕기 위해 여성장애인 차별 및 장애인 차별, 장애대학생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및 신문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진전되어있는 외국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는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였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대학입학현황 및 대졸 여성장애인의 취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면접에 응한 여성장애인이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15개의 대학과 1개의 장애인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다. 이렇게 해서 수집된 자료 중에서 성별과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추려서 면접자료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연구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위원단은 여성장애인 관련단체(한국여성장

애인연합, 장애여성공감) 및 장애관련 시민단체(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었다. 자문위원단은 3명의 신체장애인과, 1명의 시각장애인, 2명의 비장애인으로 이루어졌고, 이 중 남성은 1명이고 나머지 5명이 여성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대학교육 경험을 갖고 있었다. 자문으로 선정된 위원들에게는 원고를 미리 발송하여 자문회의를 하기 전에 각자 원고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문회의는 책임연구원의 진행에 따라 연구자들의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이후에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차례로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자문회의 내용은 회의석상에서 한 명의 연구자가 노트북을 이용해서 기록함으로써 자료화하였다. 자문회의 후 다시 이루어진 연구자 회의에서는 자문회의에서 제안된 의견 중 연구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자문내용을 선별하여 이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Ⅳ. 여성장애인차별에 관한 사례연구 결과: 대학 진학준비에서 졸업 전후 취업준비까지

1. 여성장애인의 차별감수성 및 차별에 대한 대응양식

면접에 응한 여성장애인들은 각각 다양한 수위에서 차별을 인지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면접과정에서 여성장애인들은 대답의 중간 중간에 '있긴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라거나 '뭔지 모르지만 기분은 아주 불쾌했다',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불쾌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차별경험을 언어화 할 수 있는 개념의 부재가 여성장애인의 차별감수성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개념이 부재한 상태에서 여성장애인은 자신의 경험을 차별로 인식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여성장애인이 차별을 얼마나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차별을 이해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여성장애인의 차별감수성

차별에 대한 감수성 정도는 차별 받는 당사자 자신이 스스로 얼마나 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통해서 드러난다. 질문지에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얼마나 많이 겪는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직접적으로 묻는 항목 없었지만, 면접에 응한 여성장애인들은 면접과정 중간중간에 “나는 차별 받지 않는다” 또는 “차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내 문제는 아닌 것 같다”에서부터 “삼중억압을 받고 있다”까지 다양하게 차별감수성을 드러냈다. 특히 면접에 응한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 혹은 비장애여성과 여성장애인을 비교하는 내용이 포함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서로 상이한 차별감수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1) 차별경험을 거부하거나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유형

면접에 응한 여성장애인들은 대체로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차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차별 받고 있다는 것을 거부하거나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 아래는 1급의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의 진술내용이다. 이 여성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고충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은 차별 받고 있지 않다는 모순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장애로 인한 제한성을 사회 구조 속에서 파악하기보다 질병으로, 신체의 문제로 본질화시키는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직접 겪은 불이익에 대해서는 바로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반면,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는 ‘정상성’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기보다 비장애인과 자신이 구분되지 않도록 자신의 몸과 마음을 최대한 적응시키는 노력을 하게 한다.

(이 학교에서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은 없는 거네요?) 없는 거 같아요... 근데요... 저요, 실명하면서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안 보인다는 자체가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외에는 나한테 아무 것도 힘든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명하고 나서 힘들다고 생각을 안하고 살아요 아예. 원래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잖아요 장애인들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제가 친구한테 "여성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온다는데 어떡하지?"하고 물어봤

어요.. 그 친구가 말하길 "너한테 질문을 하면 넌 당연히 없다고 할텐데..." 그러더라구요. (그 친구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전 차별 안 받고 살거든요. 근데 차별 받고 그러면 그게 가정에서부터 차별을 받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받는걸 느끼는 거 같아요. 집에서 내가 안보이기 때문에 엄마아빠가 나한테 이만큼은 더 해줘야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부모님은 저한테 전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가정에서 해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정에서 그만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사회 생활할 때도 부적당할 때 그걸 말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거 같은데요. (사례11)

아래 사례는 여성장애인은 차별의 문제가 자신에게는 무관함을 강하게 주장했고, 차별은 단지 '그들의 문제', 또는 자신과는 '다른 흐름'에 있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지금까지 말하신 것 중 여성이어서 불리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성차별 받은 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차별 받은 적이 없어요. (중략)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진로 세울 때 얼마나 고려하세요?) 전혀 고려 안해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웃음)* 진짜로 안해요. (중략) (맹학교에서 직업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취업이 보장되는 건데, 그 안에서 대학을 오겠다고 마음먹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건 개인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이 있긴 한데, 제가 할 일은 다른 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야 나랑 상관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례 10)

위와 같이 다른 여성장애인이 겪는 차별을 자신과는 무관한 '보통 장애인'의 문제로 간주하는 태도는 아래의 진술에서처럼 자신이 '보통 장애인'의 범주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때 정신적으로 혼란을 느끼게 된다. 아래 사례의 여성장애인은 과거에 장애인이 한 명도 없었던 학교에 다닐 때는 장애인으로써 자신이 고려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며 장애인이 많은 학교로 편입을 했지만, 장애인이 많은 학교에서는 자신이 장애인임을 확인하며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처음에 원서 여러 군데 냈었는데... 여기 오게된 것도, 전에 학교*(편입 전의 학교)*에서 장애인이 저 혼자 뿐이니까... 그게 힘들었거든요. 편해 볼려고 왔는데 솔직히... 아무래도 장애인 없는 곳이 더 나을 거 같아요. 많은 것보다. (왜요?) 전에 학교에서는 내

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편견을 갖고 있구나... 그런 거 별로 못 느꼈거든요. 근데 여기는 장애인이 많잖아요. '아 나도 장애인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사례 11)

면접에 응한 여성장애인 중 자신이 겪은 차별이 성차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여성장애인은 '나를 여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방식으로 대답함으로써 자신이 겪는 차별이 성차별과 무관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학교에서 여성학 수업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전 안 들었어요. 별로 흥미가 없어서. 전 제가 여자라는 생각도 안 드는데요. *(웃음)* 농담이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여자가 왜 이래~'라는 말을 듣거나, 어떤 문제적인 태도를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문제될 것으로 안 받아들인 건지 모르겠지만, 기억에 없어요.(사례 25)

이렇게 여성장애인이 성차별 문제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은 학교라는 공간이 사회의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차별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고, 장애인에게 열악한 사회환경에 의해 성차별적 경험이 축소해석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장애인을 내부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획일화된 집단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태도의 영향 때문으로 이해된다. 아래 사례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장애인의 문제가 해결 된 다음에 해결해야 할 부분적이고 하위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

질문을 하실 때 자꾸 여성 장애인, 남성 장애인을 구분하여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중략) 엄밀히 말하면 장애인 차별이죠. 사실 장애인이어서 어렵거나 차별 받는 사례가 많은데, 그것을 또다시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시키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분리해서 세분화해서 나누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인간으로 생각해 주세요. (중략) 그건 여성 장애인 문제라기보다 기본적으로는 장애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데에서 여성장애인 문제, 장애인 문제를 구분해서 생각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사례 8)

이번 면접에서는 특히 면접에 응한 여성장애인 중 상당수가 가정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부모는 장애를 가진 딸이 사회에서

차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을 만들어주기 위해 경제적 지원과 보살핌을 아끼지 않았다. 부모의 이러한 지원은 여성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제한성의 문제를 상당히 해결해주었다. 면접결과, 가정에서의 이런 경험은 여성장애인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에서 다른 여성장애인이 겪는 차별문제를 자신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해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아래의 사례들은 가정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가정에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키워진 거네요?) 그랬던 거 같아요. 부모님한테 많이 고맙고 그런 부분은. 처음에는 야속했어요. 안보여서 힘든데... 내가 안보여진건데... 그런 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부모 맞나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 얘기 부모님한테 했어요?) 많이 따졌죠. (그럼 뭐라고 하세요?) 그냥 아무 말 안 하죠. 엄마가 너는 안 보이는 애야. 넌 할 줄 알아야 돼. 언니는 설거지 안 시키는데 나는 설거지 시켰어요. 배워야되니까. 언니는 보니까 할 수 있는데 너는 안보이니까 봐서 하기 힘드니까. 우리는 만져줘야지 할 수 있잖아요. 엄마 생각은 그건가 봐요. 직접 경험해봐야지. 그리고 학교 갈려면 혼자 하고 살아야되니까. (자취시키는 것도 불안했을 텐데...) 처음에는 되게 불안해했어요. (혼자 살겠다는 건 본인의 의지였어요?) 처음에는 친척집에서 좀 살았는데 내가 싫어서 나왔어요. 제가 고집이 좀 세요.*(웃음)* (사례 11)

언니, 오빠들이 저 때문에 차별 받았어요. 항상 엄마는 저한테 있었고. 언니, 오빠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엄마하고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생각에 언니, 오빠가 불만이었죠.*(웃음) (초등학교 들어갈 때)* 아빠는 학교 갈 필요 없다고,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했고, 엄마는 무슨 소리냐고 더 당당하게 커야 한다고. 항상 엄마, 아빠는 그걸로 싸웠어요. 항상 엄마는 공부시키려고 하고, 아빠는 공부시키지 마라고 하고. 아빠는 어렸을 때도 제가 따돌림당할까봐 항상 500원씩 주셨어요. 애들하고 뭐 사먹으라고. 그때는 그게 큰돈이잖아요. (사례 24)

(부모님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나봐요?) 예. 저는 그냥 흘려서 말한 것을 부모님은 다 기억해서 해주셨어요. 사소하게 먹고 싶다고 한 것까지 부모님은 기억하셔서 그 다음날 “너 이거 먹고싶다고 했지?” 하면서 주세요. 가정형편상 힘들어도 저한테만 더 투자하셨구요. 더 부족한 자식한테 더 투자해서 똑같이 만들어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옷을 못 입어도 장애가 없으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는데, 장애가 있으면 장애가 있

어서 옷을 저렇게 입나보다... 장애와 결부시키기 때문에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고구마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걸 저한테 줘요. 눈이 보이는 사람은 가서 사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언니, 동생도 거기에 서운하다는 표현을 안해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보호해서 답답한 것은 없었나요?) 없어요. 절대 과잉보호는 안해요. 제가 못하는 것은 챙기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터치를 안해요. 너를 편하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니 도우미가 편하라고 해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육적으로 그렇게. 니가 알아서 하라고. 정신적으로 엄하셨어요. 해줄건 해주지만, 밥을 떠 먹여 주는 게 아니라 먹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답답해서 그냥 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저희 부모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도록 기다려요. (사례 25)

아래의 지체장애 1급 여성은 위의 사례와 똑같이 가족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차별을 못 느끼고 성장했지만, 특수학교에 재학 당시 특정 사건을 계기로 자신이 특별한 환경에서 자랐음을 깨닫고, 자신과는 달리 여성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는 사람들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차별에 대한 간접경험은 여성장애인이 한 개인의 문제를 여성장애인 집단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차별의 문제로 이해하고 의식을 형성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 다니는 장애여학생이 적은 이유는 뭘까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걸 다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걸 별로 못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걸 딱 느꼈던 게, 어느 날 여학생 둘이서 *(특수학교에 전학을)* 왔어요. 근데 애들이 좀 틀렸어요. 전학을 오면 애들이 신체검사를 받아요. 어디 상처가 없나, 욕창이 없나... 이런걸 하는데 게네들이 욕창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게네들이 어느 장애인 시설 쪽에서 온거에요. 우리는 다른 특수학교보다 들어오기 참 힘든 학교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왔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시설하고 연계가 되어서 온 것 같더라구요. 게네들이 욕창이 아주 심했어요. 뼈가 보일 정도로. 시설에 전화를 했더니 '그래요?' 그러고 끊었대요. 부모를 불렀어요. 학교에서 감당을 못해서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야되는데 그러려면 부모가 포기동의서를 써야 되요. 근데 그 부모가 너무 쉽게 아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학교에서 큰 사건이었어요. '나는 정말 행복하게 자랐구나.' 나는 내가 장애인이 된 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나는 내 몫을 당당하게 받아야 하고, 내가 장애인이 됨으로써 더 많이 나에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사례 24)

면접에 응한 일부의 여성장애인들은 어떤 상황에서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아래 사례는 비장애인과 같은 속도로 필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뇌병변장애여성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맞추어져 있는 학습환경이 학점에 나쁜 영향을 미쳤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학습환경을 차별로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이 노력해서 맞추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과제작성이나 시험 볼 때 불편한 점은 어떤 거였어요?) 글을 좀 빨리 못 쓰는 편이고 급할 때는 많이 좀 엉망이에요. 그게 좀... 교수님도 시험지를 보실 때 글자가 이쁘고 깨끗하면 좋잖아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글자가 예쁘고 깨끗하면 더 읽기가 좋으니까 교수님이 점수를 더 주고 글자가 못나면 읽기도 좀 그래서 점수도 안 주시고 하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시간 안에 다 못쓰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시간을 더 주지는 않았어요?) 예. (대필자를 도우미로 쓰지 그랬어요.) 워낙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내가 좀 빨리 쓰면 되고 깨끗이 쓰면 되는데...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학교 다닐 때 장애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똑같이 해야 하는 분위기였어요?) 예 그랬었어요. (그런 게 학점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예. (학점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예요?) 70% 정도. (사례 23)

한편 차별적이라는 것을 느낌으로는 알지만, 차별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언어가 부재한 상태에서 차별을 제한적으로 인지하는 사례도 있었다. 아래 사례는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이 성적 존재로서 자신을 표현할 때 친구들이 자신을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부재한 상태에서 느낌으로만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누굴 좋아하면 친구들이 '밝힌다'... 그런 게 들어있던 것 같아요. 제가 누굴 좋아한다는 게 굉장히 잘못인 것처럼 다가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는 왜 그렇게 밝히냐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는 내가 잘못했나.... 내가 밝히고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사례 21)

2) 차별경험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유형

이번 심층 면접에서는 차별경험을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지하는 위의 사례들과 달리 자신의 차별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비판하는 여성장애인이 다수 있었다. 장애로 인해 전혀 필기를 하지 못하는 아래의 여성장애인은 학교 수업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신이 대학교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특별전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학점에 대해서 만족을 많이 못하시나봐요?) 학점이요? 저 학점 많이 떨어져요. 어차피 장애인들 특별전형으로 넣은 거잖아요. 넣어 놓기만 하고 평가를 똑같이 해 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넣어놓기만 하고 성적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런 식... 차라리 그렇게 되면 그게 특별전형이 아예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요. 차라리 장애인도 일반학생과 똑같이 경쟁해서 똑같은 수준에서 들어왔다면 그런 게 없을 텐데... 특별전형으로 넣어 놓고는 평가는 똑같이 하면 당연히 우리는 떨어지죠. 그냥 이건 내 생각이에요. 다른 애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는 필기를 아예 못하니까 그냥 듣고만 있어요 책보고. 솔직히 대학 공부에 거의 필기해 가지고 시험 치고... 교수님들이 설명을 많이 해주잖아요. 책의 것을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설명한 것을 다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많이 힘들겠지만 그날 강의 할 것을 조금은 어느 정도 대충 요약해서 준다던가... 우리는 똑같이 등록금 내고 똑같이 대학 생활을 하는데 장애인이라서 필기를 못하니까 성적도 그만큼 안나오고...(사례 27)

아래의 사례들은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이 진로문제에 부딪히면서 자신의 이중의 주변적 위치를 인식하고 이후의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면서 여성장애인에게 막혀있는 취업의 문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절망과 좌절을 느끼는 동시에 장애로 인한 제한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진로의 방향을 수정해 나가고 있다.

- 뇌병변장애여성의 경우(휠체어 사용, 저시력 중복장애)

(입시 준비할 때 어려웠던 점은 없었어요?) 그게 3중 억압이죠. 아들 딸 중에서도 딸이잖아요. 딸이고, 장애인이고, 막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공부를 할 때도 방해가 되었어요?) 저는 공부하고 싶은데 엄마는 불끄고 자래요. 오빠들 같으면 안 그랬을텐데 저니까 그렇게 막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었죠. (중략) (법학과를 선택한 동기는?) 원래 꿈은 수의사였어요. 막연하게 너무 제 신체적인 조건에도 안 맞는걸 꿈으로 잡았었는데.... 그건 이제 접어뒀구요. 이과보다 문과 쪽으로 왔는데... 사회적인 억압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약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에서요?) 지금 말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약자로 살아가겠구나... 라는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소위 밥그릇 챙기려면, 만약에 누가 날 받거나 하면 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 공부를 하는게 낫겠다...생각했어요.(사례 20)

- 저시력 시각장애여성의 경우(학부때 영문학을 전공 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선택)
(진로에 대해서 사회복지 쪽으로 공부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저도 막연하게 사회복지 쪽으로 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살아오면서 남자보다는 여성 시각장애인이 더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더라구요. 제 후배들도 보면 하나도 안 보이는 친구들이 얼굴도 예쁘고, 근데 팬시점 하나도 혼자 못나가고, 한 번 데리고 가주면 너무 좋아하고, 그렇지만 혼자 절대로 나갈 수 없는 면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제 후배들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성시각장애인의 이중고에 대해 논문을 써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대학원 갔을 때도 면접 때에도 그런 걸 물어보셔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이 보자고 하실 때도 그런 부분하고 약간이라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어요. (중략) (진로를 세울 때, 여자라는 것을 얼마나 고려를 하세요?) 제가 여자니까...여자라서....대학 강의 자리도 남자에게 먼저 주는 사회에서, 장애인으로서 여자로 살아가야 되니깐 부담이 많이 컸던 것은 사실인데.... *(중략)*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상황을 잘 아니깐, 친구하고 같이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커야 되냐... 공부 쪽 밖에 없다고. 우리가 외모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 통합되어 바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가 제일 큰 몫을 한다고...(사례 22)

(장애 대학생 중 남녀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여성이기 때문에, '몸도 불편한데 공부는 해서 뭐 하느냐?'해서 공부 안 시키고. 남자는 '몸이 불편한데 공부라도 해야되지 않겠냐?' 이러고. 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졸업이후 진로 때문에. 원래 진로선택 폭이 좁은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더 좁은데, 여성이기 때문에 더 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있어서 여성이 지원하는 것도 낮겠죠. 차라리 직업교육을 받겠다 이거지. (일상생활에서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보다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건 어떤 거예요?) 우선 체력이 약하니까 활동량이 적겠죠. 또 여성에게 가해지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하지 못함으로써, 아니면 다 하도록 강요하는 거에 힘이 벅차서 많은 부분 제한적이고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누가 어떤 역할을 강요하는데요?) 자라면서 계속 요구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성이 수동적이 되어야되고 순응적이 되어야 되는 구조 안에서 이미 한계를 갖고 있는데 여성장애인은 더.... 여성장애인이 고용시장에 참여한다고 해도 텔레마케팅 정도...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역할들을 여성장애인이 못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진입 못하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사무원을 한다고 하면 커피 배달해야되고 복사 해야되고... 이런 건 장애여성은 못하잖아요. 그런데서 선택되지 않는 부분들.(사례 13)

(진로준비에서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얼마나 고려하세요?) 여성학을 들으면서 '여성장애인은 이중고구나'를 느꼈거든요. 진로계획에 있어서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안된다기 보다는 훨씬 뛰어나야 한다고 느꼈고, 어디 강사로 나가려 해도 인맥이 있어야 하는데, 여성은 인맥을 쌓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장애인이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딱 둘이에요. '장애인이니까 넌 바보야'라든가 '장애인이니까 머리라도 좋아야 한다.' 어려서부터 듣고 사니까... 친구들도 제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별로 안 친하다가도 전교 몇 등하면 친해지구 그러니까...(사례 18)

TV에서도 '장애인이 그 장애를 극복하고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도 한 마디 써 놓고, 그런 사람 소개하는 거 보면 거의 대부분 남자예요. 남성 장애인이 많이 비춰지는 거 같아요. 내 느낌인가? 여성장애인은 거의 못 봤던 거 같아요. (장애대학생의 남녀 비율 중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높은 이유는 뭘까요?) 그냥 평범해도 여자이기 때문에 덜 그런게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장애인이라니까 더 그렇게 하는 거... 아무래도 남성중심인데다가 여성이고, 거기다가 장애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사례 15)

(최소한 여자만 아니었다면 이런 경험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든 적이 있어요?) 집에서 안 맞았을 것 같아요. 워낙 손이 귀해서 남자 같은 경우는 '오냐 오냐' 그렇게 하거든요 (집안에 남자가 귀해요?) 네. 사촌 동생이 다섯 살짜리 있는데, 그 위로 여섯 살인가 많은 사촌오빠 빼고, 집안에 저까지 포함해서 여자만 여섯이에요. 그래서 얼마

나 '오냐 오냐' 하셨다구요. (여자여서 맞은 이유가 커요?) 네. 잘못한 것도 많지만, 남자라면 때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성차별에 상당한 민감성을 갖고 있으시겠네요?) 상당히 가지고 있죠. 맨날 할머니가 어떻게까지 비교를 하셨냐면요, 사촌오빠 똥도 못 따라간다고... 그런 식의 얘기까지 하셨어요. 발톱 밑에 때도 못 따라간다고도 하셨어요. 오빠 머리 위로 지나갈 수도 없고, 다리를 이렇게 건너 지나갔다고 혼났고요. 자기도 여자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사례 14)

(진로를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진로 얘기만 나오면 암담해요. 내가 생각해도 한심하고... (왜요?) 그 동안 그렇게 교육받고 집에서도 그렇게 자라오다가 사회, 대학에 오면서... 그 동안은 부딪히는 문제없이 아무튼 생각할 겨를 없이 지나왔는데...(중략) 워낙 어려서부터 부모가 다 해주시고, 나 혼자 한 것,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중략) 가정에서부터 남성은 "밥벌이해야지"하며 사회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데, 여자는 무조건 감싸안으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평생 책임질 수도 없는데... 여기서 여성장애인의 사회성도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도움 청하기를 여성이 더 꺼리죠. 사회성도 부족한 면이 있고, 외출 빈도도 남성장애인이 훨씬 많으니까...(사례 1)

면접자 중에는 장애인집단 내부의 차이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아래의 사례는 우리나라 대학교 중 장애학생 인구가 비교적 많은 대학교를 졸업한 지체장애 여성이 장애인집단 내부의 차이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있는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

(학교에 장애학생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장애인이 학과에 1명 정도면 어떻게 하든 흡수가 되어서 같이 살아가요. 사회복지학과 쪽은 20%정도 장애인이 있어요. 비장애인들이 감당하지를 못해요. 한 명만 도와주면 안되고 여러 명을 도와줘야 되니까. 또 장애인이 많으니까 장애인끼리 모여 다녀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우리 학교에서의 제일 문제가 그거에요. 자기네들끼리 모여 다녀요. *(중략)* (장애인이 많은 학교가 장애인을 더 안 배려해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만 장애있냐?' 이런 식으로..) 학교 내에서도 장애가 심한 장애인은 거의 배려가 안돼요. 서로가 배려를 안해요. '나는 너네보다 좀 특별나...'라는 생각을 해요. 나도 장애가 있지만 너의 장애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의 형성인지 모르겠어요. 특수학교부터의 세뇌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 스스로 장애인을 더 배려를 안해요. 장애인이

자기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들거든요. 다른 장애인까지 보기가 힘들죠. 내 환경이 복잡하고 힘들면, 다른 사람 환경 보기가 힘들잖아요.(사례 24)

특히 이번 면접에서는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인식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이 다수 있었다. 이들은 장애인집단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성별분업과 남성 지배적 질서 등 성차별적 환경에 의해 자신이 여성장애인으로써 차별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인계의 성차별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우선 대표는 남자가 당연히 되는 구조고, 또 일의 주도권이라든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성이 항상 주도적이고 또 문화 자체, 예를 들면 '선배가 하라면 해' 이런 분위기, 관료적인 분위기, 중증의 입장에서 하는게 아니라 경증, 경증 중에서도 움직이기 편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다든지, 또 단계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게 아니라, '공짜로 가르쳐줄 수 없지' 하면서 시다 생활 비슷한 분위기,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면 수용을 못하고, 그런 분위기들, 그 자체가 저는 되게 싫었어요. 간사는 다 여자. 보조 역할, 복사나 커피 나르는 거. (오래 일을 해도?) 그런 데서는 오래 일을 못해요. (맨 처음 들어오는 남자는 뭘 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간사로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놀랐던 게 뭐냐면, 어떤 남자가 나한테 '나 지금 기분 별로 안 좋으니까 거기서 나한테 재롱 떨어봐' 이러는 거예요. 물론 농담반 진담반이지만 굉장히 화가 났어요.(사례 13)

(차별을 많이 느끼는 편이세요?) 차별을 느끼죠. (여자이기 때문에 느낀 차별은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제가 속해있는 단체에서도 케비넷 정리라든가 이런 거는, 경증인 걸 어다니는 언니가 하나 있는데, 남자장애인들이 여자장애인들한테 막 시켜요. 그리고 무슨 말만하면 "여자가 모야!" 이래요. (장애인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다던데...) 많아요. 직업전문학교 있을 때두요 남자들이 더 많이 들어왔고요. 여자들이 좀 어디서 쉬고 싶어도 남자들이 와 가지고 담배 피고있고 하니까... (건의는 하지 않아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런 사람... 깨닫는 사람이 있고... 옛날에 점호하러 온 선생님들이 다 남자예요. 여자는 없어요. (여자 방에서?) 예. 다 남자예요. '여긴 왜 여자가 한 명도 없지'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희롱적인 말, 또는 "여자가 왜이래?"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말은 많이 듣죠. 툭하면 "여자가 뭐..." 그런 다거나.... 자리배치를 하는데 "같은 값이면 여자 옆에 앉지.." 한다거나, "여자도 여자 나름이지..." 이러고. (사례 20)

복지관에서도 같은 장애인이라고 해도 여자를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복지관 내에서 시각장애인 컴퓨터 강사를 한 명 뽑더라도 여자보다는 남자를 원하거든요. 장애인계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 많아요. 심지어는 너무 기분 나쁜 게... 시각장애인 내에서도 동창회를 해도, 부회장까지도 남자들이 다 해요. 여자들은 간부를 맡은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남자들 말로는, 여자들이 안 참여한다고... 말은 그래도 충분히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남잔데, 애초부터 그랬기 때문에.... 장애인 계에서도 복지관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여자보다 남자를 먼저 뽑고, 같은 특수교육을 나온 시각장애 선생을 뽑더라도 능력은 같은데 학연 다음으로 뽑는 게 남자거든요. 특수교육 선생이 되어서 침, 안마 같은 이료교사들도 뽑는데, 이료교사들은 시술자가 돼서 학생들이 잘 하는지 못하는 지압, 안마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자들은 쉽게 쓰기가 그렇잖아요.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위엄 있어 보이고... 이게 장애인계의 폐단인데, 여자들이 취업이 잘 안돼요. ○○대 출신이면, 그냥 공부하고 인물 있고, 말 잘하고 적극적인 사람은 취업은 되요. (장애인 중에서 ○○대 학연은 취업이 잘돼요?) 학연도 그렇지만 남자이기 때문에... 제일 큰 게 복지관이나 특수교육 안에서는 남자, 여자 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사례 22)

(2) 여성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대응양식

면접에 응한 여성장애인들은 교수, 동료, 가족이나 친지 등 생활전반에서 부딪치는 사람들에 의해 직접적인 차별을 받고 있었고, 차별을 인지했을 때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도 하고 무기력하게 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직접적·간접적 차별은 때때로 여성장애인을 압도하고 좌절시켜서 차별적인 상황에 대한 저항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여성장애인이 차별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미해결 유형

면접에 응한 여성장애인들은 자신이 겪는 직접적·간접적 차별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위계적인 환경에 의해, 또는 장애로 인한 제한성에 의해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아래의 사례는 수업 중 교수가

시각장애 남학생에게 장애인을 멸시하는 욕설을 했지만 수업을 듣던 뇌병변장애여을 비롯한 다른 학생들도 전혀 대응하지 못했던 상황이 묘사되어있다. 대학 내에서 교수에 의한 위계적인 분위기는 차별적인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제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남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가 많은 교수였는데, 병신 같은 새끼... 이러고 그랬어요. (○○씨도 거기 있었어요?) 예. (굉장히 불쾌했겠네요?)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이 어떻게 했는데요?) 책상 위에 아무 것도 없고 녹음기만 있었나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까만 안경을 썼어요. 그랬더니 병신인 거 부각시키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 남학생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조금 벙쪘나봐요. 가만있더니, 뒤에서 다른 학생들이 웅성웅성 거리고, 수업 끝나고 나서 "야 △△아, 괜찮아?" 이랬어요.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예. (중략) (인터뷰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어떻게 대처하고 싶으냐고. 여성이나 장애인들한테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싶냐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 (○○씨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극성맞다라고 인식이 되도 사회적인 차별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못했죠. (근데 그게 못하게 한 상황이 많았죠?) 상황이 그렇더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그렇게 했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후회되세요?) 예. 그냥 겁나는 거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사례 20)

아래의 사례는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이 언어장애로 인해 차별적 상황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외삼촌이 있는데, 언제 집에 왔었는데, 엄마, 아빠는 없는데, 저한테 결혼하지 말래요. 왜 결혼하지 마냐고 했더니 너 결혼하면 어떻게 할거냐... 저보고... 그래서 제가 *(결혼)* 할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삼촌이 자기 같으면 안 할거래요. 깨끗하게 혼자 살 거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화나면 말도 안나오거든요. 제 동생이 대신 얘기해줬어요. (동생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언제였어요?) 졸업하고요. 1년 됐나... 명절 때 왔었거든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구요.(사례 21)

아래의 사례는 성폭력을 당한 여성장애인이 당시에 가해자에게 대응하기보다 '부담'스러운 느낌으로 차별경험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성폭력을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차별로 이해하기보다는 '부끄러운' 경험으로 이해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 내에서 일어난 건 아닌데, ○○○라고 장애우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지체 장애인 남자가 저한테 꽉 붙어서 이런 부분들(허벅지) 막 건들고 술 먹고 자연스럽게 그래가지고, 그 장애인은 일반인한테는 못하고 저니까 그런거 같아요. △△대학교하고 □□대... ◇◇*(특정 지역)*에 있는 대학의 장애우들 모임이요. 장애인 남자가 저한테 그래가지고 좀 부담스러웠어요. (중략) 맹학교에는 특히 어리고, 지능 낮고, 학생들이 안보이니까, 음악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일반 선생님이였거든요. 학생들 가슴 만지고, 옷 속에 손 넣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보이는 여학생들은 조금 보이니까 "조심해야겠다..." 그러고 (당한 학생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바로 고발하고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수그려서 미친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는 해도 (학생들끼리는 이야기해요?) 네. 인식은 하고 이야기는 해도, 크게 만들지 않고,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 정신도 이상하고 정신 지체인 그런 얘들한테...(사례 22)

아래의 사례는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이 상대방의 차별적인 태도에 직접 대응하기보다 간접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폭력적인 아버지와 아버지의 폭력에 무기력한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이 여성장애인에게 있어 가정은 차별에 대응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협적인 공간이 된다.

(아버지가 본인한테도 폭력을 썼어요?) 가끔씩요. (언니들한테도 그랬어요? 아니면 ○○씨가 장애인이라서 더 그랬나요?) 어떤 날은 술 드시고 와가지고 날 붙잡고 막 우신 적도 있고요. 어떤 날은 그냥 아빠 술 드시고 와가지고 조용히 앉아있는데, 와서 뺨을 이렇게 때리고, 이러고*(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있는데 *(아빠가)* 발로 찼는데 나를 탁 쳤는데 여기를*(무릎을)* 맞았어요. (그때는 엄마가 막아줬어요?) 우리 엄마도 아빠 술 드시고 오면 조용~해요 (무서워서요?) 예. 대꾸 한마디라도 하면 그날은 가는 날이에요. (중략) 고3 초에 집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아빠 손님이 오셔서 내가 책 읽는 것을 보시더니 "얘가 누구냐?"고 그러신거에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내 딸이라고 하니까 "너한테도 이런 딸이 있었나?" 그러셨거든요. 내가 고등학교까지도 주위사람

들은 정말 친한 친분관계가 아니고는 내가 집에 있는 줄 모르고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내가 책을 보는 걸보고 “그래도 책은 읽을 줄 아는가보네?” 이 말을 딱 하시는 거예요. 고3 어린 나이에 그 말이 너무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다고 마음까지도 불편한 게 아니고 머리도 정상인데, 단지 내 겉모습만 보고 그걸 판단을 한 거잖아요. 내 겉모습만 보고 ‘바보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딱 굳힌 게, ‘그래 나도 대학가서 공부해 보겠다’ 이런 오기가 생기대요. 그래가지고 “나 공부해 볼 랍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루에 많이 자면 4시간 자고 조금 자면 2시간 자고 그렇게 공부해 가지고 대학에 왔거든요. (사례 27)

2) 개인적인 차원에서 차별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차별적인 상황을 해결해나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차별을 겪은 그 당시에 직접 상대방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면접결과, 많은 사례에서 여성장애인들이 크고 작은 차별적인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교수님이 하나 계시는데, 작년에 수업을 할 때 출석을 부르는데 장애인은 빼놓고 불러요. 그 교수님 생각에는 그게 편의를 봐 준다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어떤 편의요?)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 반에 시각장애인이 5명 있는데, 시각장애인 부를 때 그냥 넘어가요. 처음에는 ‘왜 저분이 안 부르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 안부르더라구요. 너무 기분 나빴어요 그때. 그래서 말했죠. 나도 등록금 내고 다니는 학생인데 이름 좀 불러달라고. 이번에 또 듣는데 이번에는 부르시더라구요.(사례 11)

(여성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네. (어떤 거요?) 여자들은 꽨히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나선다던가 하는 거... (누가 그래요?) 주위의 친구들도 그렇고요...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골치 아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과 친구들이요?) 네. 최근에 과 선배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똑똑하면 건방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막 화냈던 거 같아요. 저한테 한 말을 아니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깐 결혼 상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얘기를 하다가. “아, 난 너무 똑똑한 여자가 싫어. 여자가 똑똑하면 건방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남자는 모모모 이러잖아” 그렇게 따진거 같아요. 그 선배는 제가 어리니까 웃고 말더라구요.(사례 15)

사회복지 가족치료가 전공이고 성(性)쪽으로 자격이 있는 것 같은 교수가 있었는데, 수업시간에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거야... 별의별 은어 다 사용하고... 정말 노골적인 성의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싫었던 건, 성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건 좋은데, 음담패설로 막 시중에 떠돌고 있는 음담패설을 유모랍시고 막 해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하지 말라고, 수업시간에 음담패설 하면 학교신문에 기고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안해요.(사례 13)

아래의 사례들은 위의 사례들처럼 직접적인 가해자가 있는 상황이 아닌,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가해자가 가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일단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하는 등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하여 상황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임용고시를 봐서 선생님을 하고 싶었는데 교생실습 할 때 말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애들 가리키는데, 가리키긴 가리키는데, 수업을 하긴 하는데... 수업에는 관심이 없고 애들도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것 때문에 참 그랬거든요. 그때 임용고사 쳐서 합격한다해도 일반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장애 때문에 공무원 시험 쳐야겠다 해서 학원에 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괜히 막 숨이 막히고... 공무원을 하려고 했으면 차라리 대학 안나오고 시험을 쳤으면 더 빨리 공무원이 되어서 지금 공무원하고 있을 텐데, 내가 공무원을 하려고 대학을 나왔나 싶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중간에 그만두고, 고민하다가.... 대학원을 가기엔 경제적으로 안되고 빨리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되는데.... 답이 안나오더라구요. 고민하다가 학교 졸업하고 다른 친구들은 학원 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청와대에 글 올린 것보고. 한번 와줄 수 있느냐고... (사례 23)

졸업여행을 가게됐는데, 저는 안간다고 했어요. 당장 배를 타고 간다고 했는데, 그 배에 좌변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좌변기가 없으면 나는 용변처리를 못하는 거야. 얘들한테 물었어요. '배를 타고 간다고 하는데, 좌변기가 있을까?' 그러니까 '없을 꺼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있을 꺼야,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대답하길 바랬는데 한 명도 그러는 얘가 없더라구요. 한 명도 날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더라구요.

그걸 느끼겠더라구요. 그래서 '더 이상 뭘 바라지는 말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어쩌다 졸업여행을 갔는데, 특전사 나온 힘 센 선배가 계속 들어주고... 그렇게 2박3일을 보내고 왔는데 엄청나게 상황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아무 것도 못했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됐어요.(사례 24)

3) 법적 절차를 이용한 유형

면접에 응한 여성장애인 중 3명이 성폭력[11]과 학교측의 편입학 거부, 교내 편의시설 부재에 따른 교육권 쟁취 문제로 법적 소송을 벌였다. 아래 사례는 법적 절차를 이용해서 차별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여성장애인이 갖고 있는 여성장애인으로써의 사명감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요?) 많을걸요. 학교 자체에 성폭력 상담소가 있어요. *(성희롱이)* 많은데 대부분 얘기를 못하죠. 저희 나라 같은 경우 여자가 이야기를 하면 '여자가 창피한걸 모르고 어떻게 그런걸 이야기하나...' 그러잖아요. 저희 집에서 조차도 *그걸(고소를)* 취하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제가 힘들어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 자체도 섭섭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과정에서 당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안하면 또 다른 사람이 당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장애 정도가 경미한데도 이렇게 당했는데, 저보다 더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더 우습게 볼 거니까...(사례 14)

여성장애인의 차별감수성 및 차별에 대한 대응방식 연구의 결과, 면접에 응한 여성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직접 겪은 불이익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식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지만, 차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대체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

11) 2001년 4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사례 14>의 뇌병변장애여성(보행가능)인 □□□는 친구 아버지인 가해자 ○○○에게 성폭력을 당하기 시작했다. 가해자 ○○○는 피해자 □□□에게 "애인이 있냐?", "있는 거 다 아는데 왜 거짓말 해?" , "남자하고 같이 잠은 자 봤냐?"라고 묻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앉아 있을 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으며, 팔 위쪽 겨드랑이 부근에 손을 넣어 수 차례 주무르면서 손을 가슴에 밀착시켰다. 2001년 7월 20일 피해자 □□□는 가해자 ○○○를 고소했고, 2002년 5차례 심의 재판이 열린 후 가해자 ○○○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유형으로 나타나는 여성장애인의 차별감수성 및 차별에 대한 대응양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차별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즉 면접을 통해서 여성장애인이 자신의 입장에서 '차별'이라고 문제 제기한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그러한 차별 사례들을 유형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여성장애인이 지각한 차별

(1) 대학 진학 이전의 교육과정에서의 차별

1) 특수학교 내 대학진학에 필요한 교과교육과정(curriculum)의 부재

특별전형제도를 처음 실시한 1995년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특수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수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특수학교 커리큘럼은 직업교육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 중 특수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대부분은 특수학교의 커리큘럼이 대학 진학을 어렵게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입시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졸업한 특수학교에)* 정신장애도 있고, 정신장애하고 지체장애하고 중복장애가 많거든요. 학습이 가능한 반이 따로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년 만에 처음으로 대학을 간 경우거든요. 다른 일반학교로 전학을 가서 대학을 간 경우는 많은데 계속 그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을 간 경우는 제가 처음이고... 입시제도가 전혀 안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나 혼자 입시를 따로 공부시킬 수가 없으니까, 수업에 맞춰서 하는데, 아침 9시 20분부터 수업이 진행돼요. 1교시가 40분 수업이에요. 6시간 수업을 하는데도, 지체장애니까 다른 쪽, 물리치료실에 간다던가, 수업하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 3시에 전교생이 수업이 다 마쳐요. 그러면 나 혼자 교실에 남아서 텔레비전으로 교육방송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다른 비장애인들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떨어져요. (과목 교육은 어떻게 진행돼요?) 다 있는데 주로 국어, 수학 위주고요. 예체능이 가끔씩 있고. (수

업시간이 별로 도움이 안돼요?) 수업시간에 다른 얘들에 맞춰야 되니까... 학습이 가능하다 그래도, 수학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한 애도 있는 반면 2수학을 한 애도 있고, 같은 반인데도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그룹 따로 모아서 이쪽에서 막 설명해주다가 너희는 이거 풀어라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 가서 막 가르쳐 주고 이런 방식이구요.... 국어 같은 경우는 수준이 거의 똑같이 딱 맞춰 가지고요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이거 없이 딱 맞춰 가지고 수업이 진행되구요. (어떤 수준으로 맞춰져요?) 우리 반은 그냥 일반학교 애들 과목으로 했거든요. 다른 애들은... 특수 교육에 맞춰서 나오는 책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보면은 앞에 글은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중 1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공부할 때도 있고. 나는 과목 다 못 배우고 대학을 들어왔거든요.(사례 27)

맹학교에서는 실업교육을 해요. 진학을 위한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료도 부족하고. 안마 시간이 일주일에 8시간씩 있고 (중략) 한번은 학교에 건의를 했어요. 진학할 애들은 보충 수업을 좀 늘려 달라고. 그런데 안 들어주셨어요. (사례 9)

학교에서 시각장애인 직업 교육이라고 해서 안마, 침술 이런 거를 배웠어요. 고1때부터 해부생리, 병리, 한방, 침, 안마, 지압 등을 배우고, 나중에 진로 결정할 때 대부분 안마사로 많이 일하거든요. (중략) 영어, 수학, 국어 같은 과목은 시간이 적죠. 자신이 진학을 할건지는 선택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해야 되요. (사례 10)

현재 우리나라 특수학교 고등부의 교과교육과정은 전문 교과(직업 교과, 학교 특설교과 등)가 이수 단위의 절반인 104-126단위를 차지하고 있고, 보통교과(국어, 영어, 수학 등)는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과교육과정으로 인해 학생들의 대학 진학 욕구가 좌절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학 진학에 필요한 교과 공부를 전적으로 사교육에 의지하고 있었고, 이는 곧 부모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내신을 위해서 직업 위주의 특수학교 교육과정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학 진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여성장애인 대학 진학 지원의 부재

가. 특수학교 내 여성장애인 대학 진학 지원 체계의 부재

특수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문제 이외에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진학 상담이나 정보의 제공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수학교 자체에서 필요한 정보와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담임교사의 의지에 따라 비공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래의 사례들은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부족과 태도의 불성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 담임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방과후에 남아서 대학 진학반을 만들어 보충수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특수학교에서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대학을 갈 학생이 몇 명 없고, 대부분 대학 갈 생각을 안 하는데 저희만 그렇게 한다는 게. 그런데 하다가 선생님이 형식적이고 의지가 없어지니까 수업분위기도 어수선하구...(사례 17)

> *(선생님들도)* 너네가 가고 싶으면 너네가 열심히 해서 가라는 식이에요. 제가 제일 불만이었던 것도 그거고. 선생님들이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분도 있지만, 일반교사가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면 가산점이 있어서 승진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10명 있다면 그 중에 학생들에게 마음으로 대해 주시는 분들은 2명 정도밖에 안 되요. (사례 10)

나. 일반학교 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진학 지원 체계의 부재

일반학교를 다닌 여성장애인들은 수업 중에 관심에서 배제되거나 수업을 받기 위한 편의제공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여성의 경우 교사의 수업 대부분을 알아들을 수 없었고, 시각장애여성의 경우도 칠판을 볼 수 없거나 점자자료가 없어서 일반학교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다. 이렇게 장애를 배려한 편의시설 및 학습 지원체계가 부재한 일반학교의 현실을 볼 때, 장애인의 통합교육은 너무도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 이들은 일반학교 내에서 학습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크다.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일반학교)*를 자퇴하고 혼자 공부했어요. 사실 학교에 다닐 때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했어요. 수업을 들을 수 없었으니까 그저 학교에서 앉아만 있었지요. 차라리 혼자 공부하는 게 나았어요.(사례 7)

학교*(일반학교)*에서는 주로 수업시간에 칠판에 쓰여진 내용을 보거나 친구 노트 필기를 베끼고, 집에 와서 혼자 공부했어요. 선생님 말씀을 거의 알아듣지 못했어요.(중략) 학교서 수업을 듣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되었기 때문에 학교 수업 때는 수능 공부 복습한다치고 수업을 받았구요. 전 주로 과외를 받았어요.(사례 6)

포도막염을 앓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잘 안보이기 시작했어요. (중략) 맨 앞에 앉아도 *(칠판)*양 사이드는 안보이고 그러다 보니 공부를 등한시하게 되었어요.(중략) 일반학교에 다닐 때는 집에서도 그렇고 장애에 대한 인식이 없고, 장애인이라는 거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암울하잖아요. 학교에서는 배려 없고, 뒤쳐지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배려 없고 선생님들은 신경도 안 쓰시고. 저는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사례 3)

다. 사설학원 편의시설의 부재 및 학원입학 거부

위에서와 드러난 바와 같이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지원이 전무하기 때문에 면접에 응한 여성장애인들은 사설 학원이나 과외 등의 사교육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많은 입시 학원들의 경우 편의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검정고시학원이나 입시학원 등은 학교보다 물리적 환경이 더욱 열악하여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결국 이들은 교육방송을 들으며 집에서 독학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입시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학원을 갔는데, 학원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거야. 내각 생각한 것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학원 시설이 너무 안 좋아요. 학원들보면 다 2, 3층… 화장실도 안되어 있고, 처음 3개월 다닐 때는 어떻게 다녔냐면, 화장실 같은 층에 여자화장실이 없으니까 남자화

장실 나 혼자 들어가서 다 잠궈버려. 그럼 다른 애들이 못 들어오잖아. 그래도 “난 어쩔 수 없다,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된다” 내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리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밖에서 일을 보고 물을 뿌려버리는 식으로... 애들 막 불만있었죠. 그래도 어떻게 할거야? 같이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다녔나면 교무실에 막 전화해요. 전화해서 여기 수강생인데 여기 못 올라가서... 그쪽에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럼 선생님들이 애들 불러서... 애들 오면 올라가...(사례 13)

○○학원이라고 꽤 유명한 학원이잖아요. 동네마다 다 있고. 그런 데를 다녔는데, 실상은 장애인들에게는 버거운 학원이죠 다니기가.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 안 돼 있고, 자리도 마찬가지고, 책상이나 이런 것도 전혀. (사례 27)

미대 가려고 학원에서 과외하고... 저는 장애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림을 그리니까. 다른 애들이 2시간 그리면 저는 3시간 해야 하구, 4시간 하면 저는 8시간 해야 하구. 그런데 처음에 학원 원장이 안 받아주더라구요 고2때. 글씨는 쓸 수 있겠느냐 하면서... 가능성보다는 장애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산업디자인은 선을 세밀하게 그려야 하는데 안 된다고... 하지만 자꾸 하니까 되요. 반복적인 연습을 하니까. 처음에는 선이 삐죽였는데...(사례 16)

라. 가족 내 차별

여성 장애인들이 대학을 진학하는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가족들이었다. 대학진학 결정과정에서 가족들이 보이는 차별적인 태도는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여성이고 장애인임을 이유로 진학포기를 강요한다거나, 여성장애인이 원하는 전공에 대한 선택을 부정하고 특정 전공선택을 강요하거나, 여성장애인의 능력을 비하하고 의욕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으로 요약된다.

나이가 많아서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니 주위에서 반대가 많지. 시집이나 가야한다느니... 농담반 진담 반으로... ‘학교가야 되는데 학비 좀 보태주세요’하면 ‘시집을 가면 부주는 하겠는데’ 이런 얘기들... (중략) 나이들어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니가 공부해서 뭐하겠냐... 그런 사고를 하는 거에요. 나같은 경우는 배우는 것에 대한 갈증이 심하고, 배운다는 것 그 자체를 통해서 욕구를 실현하는거야... ‘난

이거 아니면 할거 없다'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 내가 그럼 막노동을 할거냐. 육체적 노동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정신적인 노동이라도 할려면 일정정도 수준을 갖춰야 된다. 그러려면 해야된다. 그런 식의 거의 뭐 지원 안하려면 맘대로 해라. 그런 분위기... (사례 13)

저희 아버지하고 좀... 저보고 대학교 가면 모하냐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아빠한테 대들고... 그랬어요. (아빠가 왜 대학에 가면 모하냐고 했을까요?) 저희 아빠는 걱정이 되셨나봐요. 제가 대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있고, 대학교 가는 거 대신 물리치료라도 집중적으로 받아서 몸 더 나아지게 하고... 그 돈으로 (대학교 들어갈 돈으로?) 예 (사례 21)

(집에서는 대학 오는거 아버지께서 반대하셨어요?) 집안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여서, 어릴때부터 그냥 '여자가 고등학교만 나오면 되지...' 그래서 솔직히 그럴 마음도 없었고 너무 억압되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원서 쓰는거 보니까... 원서는, 할머니가 그렇게*(강조어투)* 반대를 하셨어요 (할머니와 같이 사셨어요?) 엄마, 아빠 헤어지고 ○○*(특정지역)*에서 할머니 밑에서 컸는데, 그래서 '사촌 오빠는 대학에 가는데 나는 왜 못가나...' 오기라 그래야 하나? (할머니는 왜 반대했어요?) 집안 환경도 안좋고,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애가 정상이건 비정상이건 '여자가 고등학교만 나오면 되지...' 하는 생각 때문에... 아직까진 그런 거 같아요. (사례 14)

(법학과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의 특별한 반응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비웃고 그랬어요. 그냥 굳이 대학을 가려면 방통대 가라. 그렇게 얘기했고 방통대 중에서도 국문과 가라. (왜 그랬죠?) 그냥. 방통대는 맨날 학교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나는 학교생활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방통대 다니기 싫었어요. 4년제 일반대학가고 싶었고, 친구들이랑 북적거리면서 그래야지 좋겠다 생각했어요. 힘들어도... (중략) (시험공부를 할 때도 방해가 되었어요?) 저는 공부하고 싶은데 엄마는 불끄고 자래요. 오빠들 같으면 안그랬을텐데 저니까 그렇게 막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었죠.(사례 20)

제가 고 3때 점수 따지면 서울에서도 중위권 대학정도는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래서*(장애가 있어서)*, 집에서는 제가 수도권에 살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집도 ○○*(특정지역)*고 하니까, 혼자 보내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부모님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했어요. 부모님은 ○○*(특*

*정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라. 부모님 곁에서 대학까지는 마쳐라 이런 식이였고 저는 이왕 능력이 이 정도 이상이 되니까 능력에 맞춰서 가고 싶었는데, 또 그 때는 한참 민감할 나이였으니깐 그런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마찰이 많았고, 원서도 부모님한테 반항한다 그런 식으로... 원서도 □□대 *(특정대학)* 하나만 써서, '되든 말든 알아서 해라, 들어가든 말든...' 어떻게 하다가 거기 하나만 썼으니까 합격은 되고... 입학식 날까지도 학교 가기 싫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4학년까지 학교 다니긴 다녔지만... 중간 중간에도 학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님하고 마찰이 많았어요 작년까지. (부모님이 ○○*(특정지역)*를 떠나지 못하게 한 것에 여자라는 이유도 컸어요?) 남자였으면 다른 면도 있었을거 같아요. 주위에서 보면 꼭 장애인이 아니라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도 부모님이 외지에 보내려고 하지 않으려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여성이라는 것이 더 플러스가 됐으면 됐지 그게 작용하지 않지 않았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여자니까' 이런 말은 안하셨지만 "위험하지 않겠느냐, 멀쩡한 사람도 가면 위험 할텐데... 너 같은 경우는 더 그렇지 않겠냐?" 하셨어요 (어떤 게 위험하다는 거죠?) 혼자 사는 거,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면 속에서 약간 힘들다고 표현해야 하나? 마이너스 요인이 많으니깐 그런 우려를 하셨어요. (사례 15)

(대학을) 가면 좋겠지만 시각장애 가지고 못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름대로 제가 원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편이었는데, 큰 기대치를 갖고 저를 쪼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되면 좋지만 부담은 안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 들어가고 난 뒤에 남동생이 대학 들어갈 때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거에요. (중략) 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다 과외 받았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다고 하면 도와주셨거든요. (사례 22)

(2) 대학 입학 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1) 수학능력시험 과정에서의 문제

가. 물리적 환경의 문제

면접결과, 여성장애인은 장애특성을 고려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을 치룸으로써 실력발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장애유형과 장애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의사와 필요조건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분리하여 시험을 치르게 함으로써 오히려 시험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① 장애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편의시설의 부재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험장소의 편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여성장애인은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를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여성장애인이 팔걸이가 없고 딱딱한 일반의자에 앉을 경우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조건에 맞도록 조절된 휠체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의가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여성장애인은 시험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게된다. 면접결과 오래 앉아있을 수 없는 한 여성장애인은 시험에 필요한 지원이 제공받지 못해서 임시방편으로 찬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시험을 치룬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의 신체조정이 자유롭지 못한 뇌병변장애여성의 자리를 난로와 같은 위험물체 가까이에 배치하는 것은 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대학당국의 태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일반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에 여성장애인들은 여성장애인 화장실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마련되어있지 않아서 곤혹스러움을 겪는다. 게다가 이동보조자와의 동행을 금지할 경우에 중증 여성장애인은 수능시험이 끝나는 저녁까지 화장실 가는 것을 참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게 된다.

(시험볼 때) 앉아서 못해서 엎드려서 했거든요.(엎드릴 수 있는 공간은 줬어요?)깔아줬어요.(엎드려서 시험보는 거에 대해서 배려를 해줬어요?) 제가 먼저 얘기를 했죠.(시험볼 당시에 교실 구조가 불편한 건 없었어요?) 난로가 있었는데 조금 위험한 것 같더라구요. 난로 옆에 바로 책상이 있어서.(시험을 더 잘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거 있어요?)저같은 경우는 엎드려서 하기 때문에 시험볼 때 방석 같은 거 좀 깔고 시험 볼 수 있었으면 좋은데.(그때는 시멘트 바닥에서 했어요?) 신문지..(너무 추었겠다, 바닥이.)네. (사례 21)

화장실이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일반 남자학교였는데, 그 안에서 여자, 남자 구분지어줄 수 있잖아요.(중략) 남녀 학생이 다 섞여 있었어요. (화장실을 찾아서)맨 처음에 1층에서만 왔다갔다 했잖아요. 딱 갔는데,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장애인 화장실은 아예 없었어요.(사례 28)

(시험 보는 당일날은 어땠어요?) 우선은 화장실에 좌변기가 없었기 때문에, 하루종일 참아야 한다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말해서, 딱 한 번 엄마가 들어올 수 있었어요. 딱 한 번 밖에 안된데요. 점심 먹고 엄마가 들어오셔서 그때 한번 갔어요.(사례 24)

② 합리적 이유 없이 시험장소를 분리

면접결과 특별전형대상자라고 하여 획일적으로 별도의 장소에 분리하여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시험을 보는 당사자에게 불리함을 초래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지체장애여성의 경우 다른 유형의 여성장애인과 달리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간 조건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필요와 상관없이 분리를 당하여 혼자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우, 여성장애인은 심신의 긴장감이 가중되거나 반대로 긴장이 풀어져서 결국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 혼자 시험봤잖아요. 장애인 특별전형이니까 나 혼자 이 넓은 교실에서 혼자 본 거야. 그게 얼마만큼 시험볼 때 나쁜지 아세요? 서로 서로 시험지 넘기면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시험보니까 긴장이 안되는거야. 감독관이 다 조는 거야.(장애인이 1명밖에 없었어요?) 내가 시험 보는 그 학교에서는 나 혼자밖에 없었어요. (따로 시험을 봐야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그런 거야. 장애인이라고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무튼 그거 되게 나빴어. 감독관이 옆에서 졸고 있으니까 긴장이 덜 되는 거예요. 물리적 공간 자체가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게 난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사례 13)

한 교실에서 혼자 시험 쳤어요.(혼자 본 이유는 뭐에요?) 장애인이라서. 장애인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따로 봐야될 필요성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눈이 안 보인다면 따로 볼 수는 있는데 뭐 다 보이고... (쓰는 데 어려움은 없고요?) 예. 늦지만 시험 볼 때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어요. 일반학교에 계속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되었고 굳이 그

렇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고. (혼자 시험 볼 때 느낌은 어땠어요?)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훨씬 더 긴장이 많이 되고. (같이 시험을 보게 한다면 시간을 더 줄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고등학교때)* 다른 모의고사 칠 때도 시간을 더 줬으면 모르는데 계속 똑같이 치르다가 갑자기 하루만 시간을 더 주니까 필요가 없고... 눈이 안보이거나 귀가 안 들리는 친구는 모르는데, 저 자신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따로 본 게 더 나빴어요?) 예. 더 안 좋았어요. (시험 보는 데 영향을 미쳤어요?) 예. 더 많이 긴장이 되어서. (중략) 어떻게 보면 감독이 더 치열하다고 할 수 있죠. 감독이 3사람한테 편중되는 거잖아요. 30,40명 감독하는 것보다 3사람밖에 지켜 볼 게 없으니까 계속 시선이... (그런게 부담스러웠어요?) 네. 컨닝할 것도 아닌데... (왜 따로 봤을까요?) 그 사람들이 정상인들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낀다거나 그래서 배려해준거 같은데, 그 과정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기도 해요. (특별히 불쾌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불쾌했어요. 그냥 이렇게 따로 시험을 봤다는게. 얼마 전에 제 선배가 저한테 편하게 있어서 그런 건지 진짜 궁금해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시험을 정상인하고 똑같이 봤냐고 물어보더라구요. 3년 전에 시험을 치렀는데 그게 이제 와서 왜 궁금할까 그것도 조금... 그런걸 묻는 자체가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렇게 따로 시험을 봤다고 해서 자기네들보다 시험을 월등히 잘 볼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도 똑같고, 홀수 짝수형 나눠주는 것도 똑같고, 시험시간도 똑같고, 단지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이차이인데 그게 왜 궁금한지... 그 선배는 그걸 통해서 뭔가 다른 게 물어볼게 있는 것 같은데 비꼬아서....(사례 14)

나. 시험시간 배분의 문제

면접결과 특별전형 지원자의 수능시험시간을 연장한 것은 장애로 인한 속도의 제한성을 고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이 다른 장애 정도와 체력에 따른 필요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몇몇 여성장애인은 불리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사례의 중증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교시당 20분의 추가시간을 배분받았지만, 장애 특성상 체력소모가 빨라 마지막 교시로 갈수록 문제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중증의 뇌병변장애여성의 경우

그리구 우리는 시험당 20분을 더 주는데, 처음에는 여유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예요. 그리구 장애인들은 그렇게 장시간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아닌데, 저희는 거의 반 기절해서 시험이 끝나요.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연습을 해두. 힘들다보면 나중에 멍-해져요. 나중에 코피 나서 기절하는 학생도 있어요. (사례 1)

시험시간이 한 과목당 20분씩 연장시켜주는데 솔직히 우린 20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남들은 20분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같은 애들은 (중략) 쓰는 것도 느릴 뿐더러, 읽을 속도가 느려요. 다른 애들은 한 페이지 읽는데 일분도 채 안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페이지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읽는 속도가 느리니까 체크하는 속도도 느리고, 읽어서 이해하는 것도 느리거든요. 세 개가 다 일반사람들보다 느린데 시간은 20분밖에 안주거든요. (중략) 솔직히 우리 학교(특수학교)에서 시험 칠 때는 과목 하나를 치는 것도 두 시간을 주거든요.(사례 28)

- 저시력 시각장애 여성의 경우

시간은 1.2배인가... 15분씩인가를 더 줘서... (중략) 시간도 모자랐고, 사람마다 다른데, 약시지만 일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좀... 시기능 활용을 아무래도 특수학교 다닌 사람들은 덜하잖아요. 점자만...보는 것보다는 듣는 위주로 공부했으니까. 시기능적인 면에서 불리한 부분이 많아서 글도 늦게 읽고, 시야도 좁아서 빨리 안 와닿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시간 배분에 있어서도 많이...시간도 좀 더 줘야되고... (얼마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전맹들처럼 1.5배 정도는 되어야지 모든 약시들한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애요. (시험보는 과정에서 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은?) 요즘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속도가 점자도 느리고 약시들도 느리거든요. 그래서 녹음테이프를 제작해서 같이 준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때는 녹음테이프 없었거든요. 그것만 있었더라도 시간에 비해서 20문제 풀었던거 30문제 풀었을건데, 녹음테이프 제작 같은게 그때도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사례 22)

- 저시력, 뇌병변 중복장애 여성의 경우

(수능시험을 볼 때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에요?) 제가 중복장애거든요. 뇌성마비가 워낙 복합적이잖아요. 시각장애도 있어요. 약시에요. 글씨 보려면 오래 걸려요. 필기 장애도 있어서 잘 못하고. ○○○중학교에서 봤는데, 쉬는 시간을 이용

해서 20분간 연장을 해줘요. (혼자만?) 다. 거기에 약시 반하고 뇌성마비 반이 있어요. OMR 작성도 해주고 그랬어요. 20분 더 줬는데도... 그래도 다 못 풀겠더라구. 양이 워낙 많으니까. 지문도 엄청나고... (어느 정도면 실력발휘를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좀 더 주면 좋겠죠. 예전에 다 풀어본 적은 있어요. 채점을 해보니까 그때 200점 만점에 150점 넘게 나왔어요. 근데 일반 학생들하고 맞춰서 볼 때는 반도 못 푸는거에요. 한 두배 정도면 필요하겠다는게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두 배 더 준다고 하면 수능 한번 더 봐야지...*(웃음)*(사례 20)

- 청각장애여성의 경우

수화로 의사소통을 하는 친구들은 언어 이해가 어렵죠. 특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 생각엔 그 친구들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청각장애 친구들 모여서 시험 보는 장소에서 제 시간에 문제를 다 푼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이 안됐어요. 언어영역 같은 경우 대부분 반도 못 풀고 내더라구요. (중략) 그리고 수화를 쓰는 친구들이 감독관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수화 통역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례 7)

다. 시험장소 관리의 문제

시험감독관은 시험장에서 방해가 될만한 소음이나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응시자들이 정직한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소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에 응한 일부 여성장애인이 경험한 수능 시험장은 이러한 당연한 의무가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애인을 가시화시키기 위해 방송국에서 카메라 촬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시험감독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특히 뇌병변 장애인에게 가까이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은 장애특성상의 몸의 경직을 더하게 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잃게 하여 시험을 치르는데 심한 제약이 될 수 있다.

안 그래도 시험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몸이 막 경직이 되고 불안한데, 거기다가 대고 카메라를 들이댄다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제가 카메라 치우라고 제가 계속 그랬어요. (방송국에서요?) 예. 그걸 본 사람들도 있구요. 저한테 보고 연락이 왔어요 (시험 볼 때 들어왔어요?) 시험 볼 때건 안 볼 때 건 싫었어요 (무슨 방송국이였어요?) 지역방송이였으니까 MBC였을거에요. (어떤 내용이였는지 아세요?) 시

험보는거... 장애인이 시험보는거 보여줄라고 한 거 같은데,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사례 14)

면접결과 특수교육대상자로 따로 분리되어 치르는 수능시험 시간배분이 비장애 학생들에게 배분된 시험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여성장애인들은 일반전형자들의 시험이 끝나는 매 교시마다 종료 소리와 소음으로 인해 시험에 지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능시험 볼 때, 주변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왜냐면 우리는 시간을 더 주기 때문에 일반학생들과 쉬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다른 학생들과 우리가 시험 보는 장소 사이의 거리에 대한 조절이 잘 안됐어요. 그래서 시험에 방해가 많이 되었죠. (사례 9)

1층에서는 장애인들이 시험을 쳤고, 2, 3층에서는 소년원이랑 예·체능계 사람들이 쳤거든요. 특이한 케이스들이 그 학교에서 시험을 다 쳤는데, 시간적으로 그 사람들은 (시간적으로)정상으로 치니까, 우리 시험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쉬는 시간이라 너무 떠들어서 정신이 산만했거든요. 또 우리는 7시 반까지 시험을 치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5시면 수능이 끝나서 가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시끄럽고 정신이... 시험 한문제 한 문제가 중요한데 집중을 잘 못했어요.(중략) 그리고 기분 나빴던게 뭐냐면, 장애인들이 시험을 치니까 방송국에서 왔었거든요. 그때 시험이 진짜 어려웠는데, 모두들 예민해져있는데, 문 열고 사진찍고 카메라 들이대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굉장히 불쾌했고, 제가 대학 들어와서 다른 장애인들 사귀게 되었는데 그 애들도 그때 참 불쾌했다고 그런 얘기하더라구요. 준비시간에 찍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비준비 종 치면 다 착석해있고 해서 그때 찍어도 되는 건데, 굳이 뭐 동물원 온 기분으로...(사례 22)

라. 시험문제 출제방식의 문제

면접결과 여성장애인은 대학입학전형에서 모든 감각기관이 제 기능을 하는 비장애인 위주의 문제출제방식으로 인해 도형그림이 많은 수학과목과 과학과목 시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로 면밀하게 표현될 수 없는 도형그림이 포함된 수학이나 과학 시험 문제는 시각장애여성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

을 소모하게 하고, 수화의 언어체계와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문자언어에 취약한 청각장애여성의 경우 언어영역 평가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 시각장애여성의 경우

수리탐구 Ⅱ나 수학 같은 시험 문제의 그림을 좀 쉽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한참 만지다보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입체도형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들이 이해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저는 점판을 두 개 가지고 가서 수학문제 풀 때 점자로 적어가며 풀었거든요. 그런데 점판에 종이 끼우는 시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림 만지다가 시간이 다가고. (사례 9)

2) 면접전형과정에서의 문제

가. 면접 전형장소에 대한 안내의 부재

심층 면접결과, 시각장애여성의 경우는 면접전형과정에서 면접장소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전혀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면접전형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전형과정에서 면접장소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시각적으로 고지된 내용은 직접 알려주고, 면접을 치를 때도 일방적으로 전형자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대기장소를 비롯한 면접장소의 형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우 없이 시각장애여성을 낯선 장소에 방치하는 대학당국의 태도는 여성장애인에게 신체적 위험과 정신적 불안을 초래한다. 아래 사례들은 시각장애여성이 면접전형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안내 체계의 부재로 인해 사물에 부딪히고, 모르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의존해서 면접장소를 찾아가는 등, 위험하고 불안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저시력 시각장애여성의 경우

(면접때) 많이 기다리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먼저 면접을 봐 주는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했던 것 같거든요. 기다리는 부분에서 많이 짜증이 났고. (면접 장소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건 전혀 없었고, 영문과 지원자 쭉 운동장에 서 있으면, 팻말 따라서 줄서서 가면 저도 얘들

따라서 가면서 놓칠 뻔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사례 22)

- 1급 시각장애여성의 경우

저는 면접대기 때 혼자 있었는데, 면접 온 다른 일반 애들이 좀 도와주긴 했지만, 처음이어서 낯설고, 머뭇거리기도 했어요. 30분이 마치 3시간 같았어요. 기다리는 시간까지 해서. 면접 대기하면서 줄 서 있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책상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게 좀 힘들었어요. (사례 9)

나.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면접절차와 기준을 제시[12)]

12) 각 대학 모집 요강을 조사한 결과, 대학이 특정 근거 없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제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K 대학의 경우, 지원 자격을 '장애인 복지법 제 29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지체장애(뇌병변장애 포함)의 장애가 있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어 청각장애나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C대학의 경우도 '장애등급표에 제 1~4등급의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포함)'이라는 지원자격을 두고 있어 청각장애나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입학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J대학의 경우에도 '특수교육진흥법 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청각장애, 지체장애자(뇌성마비 포함)로서 장애인 복지법 제 29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라고 밝히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지원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장애인 심의 기구' 등을 두고 이 기구에서 장애 심사를 하여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D대학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제도를 통해 입학 가능한 학생을 '장애인 복지법 제 19조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지체장애자 중 장애 등급이 3등급 이상인 자로서 특수시설을 요하지 않는 자(특수교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본 대학에서 심사하여 선정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S대학의 경우, 지원자격을 '특수교육진흥법 제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 제 2항에 의거하여 본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라는 규정이 있고, W대학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 제 29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중 본 대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C대학의 경우 '특수교육진흥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본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라는 규정이 있다. Y대학의 모집 요강에도 '본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라는 조항이 있다. 이러한 문서상의 모집 요강의 조항들은 장애 학생과 지원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과를 조정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전면담제도'와 함께 선발 과정에서 중증의 장애 학생들을 가려내기 위한 방안으로 악용될 수 있다.

한편 많은 대학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장애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과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장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은 대학마다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각 대학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는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A대학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학과를 B대학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각 대학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정했거나 혹은 각 대학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마련해야 할 학습 지원이나 편의 시설들을 갖추지 않고, 입학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접결과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몇몇 대학에서 면접전형 과정에서 수학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특정한 면접절차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전형과정과 모순되는 특별전형자격기준을 두거나 입학전형과정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비장애인은 치르지 않는 기준과 절차를 두어 장애인을 구별하고 특정장애인을 입학자격에서 배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일반전형으로 응시하면 1급이어도 제한받지 않는데, 특별전형제도로 응시하려면 3급 이하 경증 장애인어야 한다는 지원자격기준을 제시하는 학교당국의 태도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고려 없이 구색 갖추기식으로 특별전형제도가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게 (원서접수) 전에 부총장을 만났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장애인 입학 서류 내기 전에 만나는 게 절차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부총장이 들어와도 되겠다 싶으면 서류를 내라, 보고 안되겠으면 가라. (중략) 안내를 받아 부총장을 만나러 엄마랑 같이 가서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식의 것을 묻더라구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구요. “애는 처음부터 특수학교 안 다니고 학교를 다녔고 혼자 해왔다”. 그랬더니 확인서 같은 사인을 해주시고 그걸 들고 갔거든요.(사례 4)

○○대학교 면접을 봤는데, 장애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특례입학을 해야되니깐 그거를 서류를 떼어 갖고 갔는데, 제가 3급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2급이예요. 제가 병원 가서 고친 거예요. 왜냐하면 3급 이상이래요. 3급 이상만 뽑는데요. 특례입학을 하려면 오히려 특례입학이라는 게 장애인을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롭더라구요. 1급이라도 상관없다고, 일반 전형은. 말이 되냐. 정말 황당했어요. (사례 28)

다. 여성장애인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조성하는 면접관의 태도

면접결과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에는 관련위원회가 있지만 면접관은 정작 지원자에 대하여 일반적 상식조차 없이 면접전형에 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별전형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결여된 면접관의 태도는 면접전형과정에서 여성장애인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고 있었다. 면접전형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은 학업수행능력을 ‘평가’받기보다는 학업수행능력을 ‘의심’받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여성장애인은 대학입학 면접전형과정에서 인지능력이나 학업수행 능력에 대해 의심하는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학부 면접 때는 선생님들이 장애에 대해 좀 무지하셨거든요. 제가 시각장애였는데 그림 듣는 거하고 말하는 거는 할 수 있냐고 물으셨어요. 그래도 영문과 박사까지 했다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례 22)

교수님이 신기해하시는 거 같더라구요.(중략) 교수님이 공부는 뭘로 하냐, 책은 어떤 식으로 보냐. 점자는 어느 정도 속도, 그러니까 읽으면 어느 정도 나오냐 그런거요.(사례 3)

면접전형과정에서 언어장애가 심하다고 하여 응시자에게 통상의 질문조차 하지 않거나, 장애와 관련된 질문에 응시자의 답변을 신뢰할 수 없다는 듯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면접관의 태도로 인해 여성장애인은 모욕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사전에 지원자에 대한 정보의 검토 없이 면접을 하거나, 눈에 보이는 장애상태로 지원자의 지적 능력까지 판단하는 편견에 의한 차별행위로 볼 수 있다.

7층까지 다닐 수 있느냐고 했던 것 같아요. 가능하다고. 황당했던 것은 혼자 가능하냐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더라구요. 그리고 휠체어 탄 어느 학생이 왔는데 언어장애가 너무 심하니까 아예 질문 안하고, 옆에 있는 다른 지원자에게만 질문을 하더라구요.(나중에 그 학생은 떨어졌나요?) 네.(사례 16)

면접 전형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이 가장 두드러지게 겪는 차별행위는 여성장애인이 선택한 학업의 필요성과 가능성 및 목적에 관해 면접관이 타당한 고려없이 장애에만 초점을 두어 질문하는 태도이다. 학교가 책임져야 할 편의시설 미비를 이유로 응시자에게 그에 대한 개인적 대처 방식을 확인하듯이 반복해서 질문하거나, 효과적인 수업에 대한 대안을 묻기보다는 필기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여성에게 즉석에서 글씨를 써보도록 지시하고, 지원한 전공학과 교수가 아닌 일률적으로 장애관련 학과 교수가 면접을 치르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닐 거냐구.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이 사회 나가

면 다 장벽이구 장애물이 많은데 그렇게 따지면 장애인은 살아갈 수 없다고 얘기했구요. 그리고 제가 진행성인데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구해서...(사례 18)

글씨는 쓸 수 있느냐 해서 쓸 수는 있지만 느리다고 했더니 써보라고 해서 썼어요. 걸어 들어올 때 눈길 정말 기분 나쁘죠. 그리고 써보라고 확인하는 모습도 그렇죠. (사례 1)

저도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못쓴다고 하니까 어떻게 수업 받을 거냐고 해서 그 당시 노트북으로 서브하던가 어쩔 수 없으면 친구들에게서 노트를 빌려서 하겠다구...무엇보다 대답하는 중에도 감시받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면접상황이었으니까...) 그렇다기보다 장애 상태 때문에 노골적인 눈길이 불쾌했죠.(사례 17)

휠체어 탄 어느 학생이 왔는데 언어 장애가 너무 심하니까 아예 질문 안하고, 옆에 있는 다른 지원자에게만 질문을 하더라구요...그 사람은 떨어졌어요.(사례 16)

면접도 따로 들어갔어요. 장애인들. 근데 특수교육학과 교수가 봤어요. 저는 법학과를 지원했는데... 그나마 장애인하고 관련된 사람이라고 해서 특수교육학과 교수가 일률적으로 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편견...(질문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들어가니까 거의 뭐... 그다지 뭐 내용은 없고..(한 몇 분?)1분. (그것도 차별이네요?)차별이죠. (법학과교수가 와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공부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졌지 않았을까...(사례 20)

아래는 실기평가과정에서 면접관이 여성장애인에게 보인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여성장애인이 불쾌함을 경험한 사례이다.

면접 때 대화가 잘 안 돼서 교수님들이 빨리 끝내려고 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질문도 3가지만 했고, 저의 포트폴리오도 제대로 봐주지 않았어요. 미술대학에 일반전형으로 시험 친 같은 과 친구들은 포트폴리오 보면서 이야기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5-10분 정도 밖에 안 했어요. 다른 애들은 15-20분 정도 했었는데..(중략) 전공에 상관없이 특별전형으로 지원한 장애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면접했어요. 전공 교수님은 아닌 것 같고. (사례 6)

3) 학교당국에 의해 편입학을 거부당한 여성장애인 사례

<사례 25>의 시각장애여성은 ○○대학 편입 전형에서 □□□□학과에 지원하려 했지만, 아예 원서접수조차 거부당했다. 학교당국의 관계자는 "특수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교원, 교재 등이 없는 상태에서 △씨*(<사례 25>의 시각장애여성)*를 받아들일 경우 교육 기회면에서 △씨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셈이 된다고 판단해 원서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례 25>의 여성장애인은 자신의 대학 편입원서 접수를 거부한 ○○대학을 특수교육진흥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이후 학교측은 입시관계자 회의를 열어 위 여성장애인의 편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3) 대학의 물리적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차별

1) 편의시설 부재의 문제

가. 학업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부재

편의시설의 문제는 모든 장애인의 문제이나, 특히 여성장애인은 같은 조건의 장애를 가진 남성장애인보다 신체적 힘의 측면에서 보다 빨리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차별의 부담이 가중된다. 여기서는 여성장애인이 대학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교내 편의시설 부재와 부적절한 편의시설에 의해 어떤 제한성을 겪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교내에서의 이동권 침해 문제

<사례 9>의 시각장애 여성은 대학 내에서 원하는 곳을 찾기 위해 주변사람들에게 위치를 물어보지만 눈으로 사물을 인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의도하는 설명을 잘못해서 의사소통이 안될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글자를 눈에 아주 가까이 해야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저시력의 시각장애 여성인 <사례 4>는 강의실을 찾으려면 강의실 호수 표시에 눈을 가까이 대고 일일이 같은 층의 표시 전부를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호수 표기위치가 높아서 잘 볼 수도 없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지체장애여성의 경우 듣고 싶은 과목이 있어도 수업간의 이동거리, 강의실의 층 위치, 장애인 화장실의 유무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원하는 수강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여성장애인의 학업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각장애여성의 경우

저는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 중에는 그런 거 *(보지 못했으니까)* 잘 못 물어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곳곳에 점자 표지판 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사례 9)

- 저시력의 시각장애여성의 경우

학교 지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건물의 구조도 같은 거. 강의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특히 문대 강의실은 미로라고 하는데 저는 보고 다녀야 하는데 강의실 푯말이 높아요. 제 키에 맞지 않게. 그러면 더 모르거든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가본 데 아니고 다른데 가려면 모르거든요. (본인한테는 구조도가 어떻게 안내되면 좋겠어요?) 길도 길이지만 건물이 있으면 201, 202, 203...이런 식으로 이게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겠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지체장애가 아닌)* 제 걸음으로 다녀도 저는 하나 하나 일일이 가까이 가서 확인하고 해야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은 2학년이고 조금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 강의실 확인을 하기 위해 하루 날을 잡아요. (사례 4)

- 지체장애여성의 경우

지금 종합관이 저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한 애들도 거기를 힘들게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종합관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문제는 대부분 교양 수업을 그 건물에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건물은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이 1층하고 3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강의실이 2층에 걸리면 그 과목은 안 듣거나 따로 말해서 강의실을 1층으로 내리거나 해야해요. (사례 5)

(수업과정 중 필요한 지원은?) 도서관을 편하게 올라갔으면 좋았을 것 같고, 통학문제가 혼자 힘드니까... 아빠가 데려다주거든요. 학교 내에서도 워낙 넓다 보니까, 이 건물에서 저 건물 가는데... 학교 안에서 버스가 돌아다니긴 하는데, 제가 혼자 버스를 탈수가 없잖아요. 그 버스는 친구가 부축을 해 줘도 계단이 워낙 높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버스 탈 생각을 안하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도서관 갈 때 버스 타고 가면 금방 가거든요. 친구랑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아빠가 아침에 데려다주면서 한꺼번에 도서관에

데려다주고, 내려올때는 좀 쉬우니까... 천천히 내려오면 되니까... 버스가 좀 낮으면 친구랑 쉽게 탈 수 있겠죠.(사례 15)

강의실 문이 좁아요 문도 통과할 수 없어서 강의실 앞에서 휠체어 들고 옆에서 끌고 그러는데.... 책상하고 책상 사이도 비좁아 가지고 사이를 통과를 못해요. 거의 맨 뒤나 맨 앞... 하여튼 들어오는 통로 쪽에 앉아요.(사례 26)

- 뇌병변장애여성의 경우(휠체어 이용)
교양과목도 점수가 만만치 않은데 이거를 듣고 싶은데 이거를 선택했으면 점수 A+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택 자체에서부터 이미 한번 박탈당한 거잖아요. 장소 때문에. 혼자 못 다니니까 한번에 확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결정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환경이 어쩔 수 없으니까 학교 오는 횟수를 줄이고, 좀 피곤하고 그렇더라도 한 날 몰아서 하고, 장소 문제도 있으니까 이건 못 듣고 요거 선택하고. (사례 20)

- 뇌병변장애여성의 경우(보행가능)
저 같은 경우는 손잡이를 잡아야지 (계단을) 내려가고, 안 잡으면 못 내려가거든요. 층계가 가팔라서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잡아 달라고 해야되고, 바쁜데 잡아달라고 하기 그렇잖아요.(사례 21)

- 뇌병변장애여성의 경우(보행가능)
○○대학교가 잘 되어있다고는 하는데 휠체어 탄 장애인한테는 잘 되어있지만, 꼭 장애인이라고 해서 휠체어 타는 거 아니잖아요. 저처럼 보행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걸 감안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계단을 안 만들고 경사로 만든것도... 우린 계단보다 경사로가 더 힘들거든요. (사례 27)

편의시설은 '편의'의 차원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 직·간접적으로 '필수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비장애인·남성 중심적인 물리적 환경은 대학 내에서 여성장애인의 접근권을 박탈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

② 도서관 편의시설의 부재

대학 교육과정에서 학업에 필수공간인 도서관이 휠체어나 스쿠터의 접근이 불가

능한 구조로 되어 있거나, 제한적 접근만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있어서 도서관은 무용지물의 공간이 된다. 아래의 사례들은 여성장애인이 대학생활 과정 중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경험하는 제한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도서관 이용은 어떻게 했어요?) 도서관 이용... 어휴*(한숨)*... 1, 2학년 때는 못 가고, 4학년 되니까 장애학우들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라고 해서 한 번 그냥 구경 갔다 왔구요. 저는 별루 못 갔어요. (도서관이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안돼요. 계속 누구를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필요한 책은 어떻게 구했어요?) 책은 아는 언니한테 빌려달라고 해서 3번인가 4번인가 봤어요. (사례 20)

(진로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장애 때문에 어려울때가 있어요?) 일단은 가까운 학교 도서관만 해도, 저희 학교 도서관에는 계단이 108개에요 옆에 난간도 없어요. 저 혼자 108개를 올라갈 수 없어요. 누가 동행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맨날 가고 싶을 때마다 누가 같이 시간이 딱딱 맞아서 같이 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잖아요. 도서관에 다닐 때 가장 단순하면서도 겪는 그런 어려움이죠.(사례 15)

먼저 도서관 서가에 도서들이 꽂혀 있는 책장사이를 그냥 사람들 같으면 아무리 뚱뚱한 사람이라도 들어갈 수 있지만 제가 스쿠터를 타고는 갈 수 없죠. 그런 게 좀 제약이 있고요. 또 윗간에 있는 책들은 제가 내리거나 할 때는 도움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도서관 들어가는 문이 휠체어 장애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문이잖아요. 책 무단 반출을 막기 위해 설치해놓은 시스템. 거긴 제가 휠체어를 타고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 문은 이용을 못하죠. 그래서 옆문을 이용하는데, 항상 문이 잠겨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죠. (사례 8)

도서관 가보면 여닫기 문이 정말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내가 밀려고 하면 내가 밀려요. 그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사례 27)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휠체어 장애인이 다니기엔 불편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있긴 있어도 엘리베이터에서 책을 빌리는 곳으로 연결이 바로 안되거든요. 반드시 계단을 사용해야만 여러 층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놓았어요.(사례 7)

③ 여성장애인을 위한 휴식공간의 부재

여성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또 하나의 편의시설은 휴식공간이다. 면접결과 몸의 장애 상태에 따라 누워서 쉬어야만 당장 자기 몸의 조절이 가능한 여성장애인이 상당수 있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쓰는 휴게실은 남성이 공간을 장악하면서 여성장애인에게 휴식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었고, 여학생 휴게실의 경우, 여성장애인의 장애를 두드러지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나, 필요한 시설이 없는 것을 비롯해서, 접근하기 불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음으로 해서 여성장애인의 이용을 막고 있었다.

쉼터. 저는 필요성을 느꼈던 게, (중략) 시간 너무 많이 남고 추운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도서관 가서 공부도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서 눕고 싶은데 없더라구요. 기숙사는 멀고. 그래서 어디를 가 있을까 어디를 가 있을까 하다가 학생회의실에 거기 가서 누워있다 나오고. 계속 불편하더라구요, 그런 게. (어떤 휴게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던가, 꼭 침대를 갖다 놓아라 이런 것은 아니고. (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특별히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비장애여성과)* 꼭 분리될 필요는 없는데요, 장애인 우선권을 먼저 준다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 누가 누울 수 있는데, 여성장애인이 정말 허리가 아프고 이래서 왔는데, 누가 누워있으면 일어나라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 사용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꼭 분리를 할 필요는 없구요. 그 정도의 융통성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장애인들이.(사례 28)

(여학생 휴게실에서 여성 장애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여학생 전용 휴게실도 없었구요, 휴게실 같은게 있었는데, 남자 여자 짬뽕으로 사용해서 담배연기도 심했구요, 여성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면, 말 그대로 휴게실이었다면 적어도 잡지 하나 정도는 점자로 찍어줄 수 있으면 좋겠구요, 휠체어 장애인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들... 되게 좁게 소파만 갖다 놓아서 휠체어 장애인들은 이용도 못했구요. (○○대학교에서요?) 네. 지금도 아마 그럴꺼에요. (휴게실에 남녀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왜 필요할까요?) 여자라고 담배 안 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소음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도 대화를 나눌 때에도 남자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의식되는 부분도 있고...(사례 20)

휴게실에서도 긴 의자, 약국에 있는 의자 같은 게 쭉 있을 때, 휠체어가 툭 튀

어나와 있으니까 뭔가 내가 중간에 나와있는 느낌이고... 휠체어에 맞는 공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허리가 많이 휜 장애인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거에요. 쉬는 시간이라도 좀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아무래도 좋겠죠. 누가 와도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걸 장애인한테 맞추는 것이 필요하죠. (여학생휴게실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해 배려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간이 침대가 있으면 좋겠고, 휴게실이 화장실과 가까우면 좋고, 쭉 이어진 의자는 없었으면 좋겠고, 책 읽는 책상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고... (사례 24)

④ 여성장애인 화장실의 부재

면접결과, 여성장애인은 교내에서 남녀공용으로 만들어진 장애인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있어 상당한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실의 문제는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편리의 차원에서 고려되고 만들어짐으로써 여성장애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고 있다.

(편의시설에 성별성의 문제가 있다면 어떤건가요?) 후배이야기인데,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좌변기가 남자화장실에 있는 거에요. 그러면 남자화장실에 가서 볼 일을 봐야하는 거에요.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남자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을 만들어요?) 예. 어떤거는 그랬데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구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남자화장실 가서 봐라... 그러는데, 자기는 정말 치욕감을 느꼈데요. 지금보면 장애인도 남녀 화장실 따로 구분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런게 있어요. 장애인을 성으로 구분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몇몇 여성장애인이 자기가 여성으로써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써의 이성교재도 하기 힘들다고까지 생각을 하는 장애인들이 많아요.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되어 있지 않을 때 불편한 점은 어떤 건가요?) 남학생들도 그 화장실을 쓸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그게 있죠.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일반화장실의 남녀공용하고 똑같은 거에요. 문 밖에서 남자가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래도 의식되고.(사례 24)

(편의시설 때문에 겪은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에 갔는데, 우리동기 오빠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놀랬어요. 여자화장실 안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으면 더 괜찮을 것 같더라구요. 남자 여자 같이 있으니까 그게 조금 애매해요. 장애인도 남자여자 다 있는데... (사례 21)

⑤ 여성장애인을 위한 생리대 자동판매기의 부재

비장애여성의 키 높이를 기준으로 설치된 생리대 자동판매기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에게는 꼭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자동판매기의 좁은 동전투입구와 물품배출구는 손의 힘이 약하고 몸의 떨림이 심한 뇌병변장애여성의 이용을 불가능하게 한다.

- 뇌병변장애여성의경우
생리대 자판기에서 꺼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나오는 구멍이 좁아서 불편해요. 우리 한테는. 동전 투입구도 휠체어도 사용하기에 높을 거고, 레버 돌리는 것도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저는 누가 옆에서 도와줬어요.(사례 16)

(생리대자판기는) 한번도 사용 안 해봤어요 내가 아예 사용을 할 생각을 안해요. 왜냐면 난 돈 넣기가 힘들어요. 손이 많이 떨리니까 초점이 안 맞아요 그 구멍이랑. 그래 가지고 많이 힘들거든요. 커피 자판기도, 커피 뽑아서 내가 먹질 못하니까 아예 쓸 생각을 안 하거든요. 캔 커피는 가끔씩 먹어요. 왜냐면 500원짜리 하나만 넣으면 되니까... 종이컵으로 된 자판기는 먹을 생각도 안해요. 사용조차 못하니까. (사례27)

나. 학내 공사장의 보호장치 부재

위와 같이 대학 내의 전반적인 편의시설 형편이 매우 취약한 상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장애학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진행된다. 예를 들어, 학내 공사가 있을 경우 장애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시각이나 청각과 같은 감각장애가 있는 여성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된다.

학교가 요즘 확장 공사하거든요. 장애물도 많은데, 포크레인도 왔다갔다해요. 안내견과 같이 가는데도 위협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찻길과 인도의 경계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거 아주 위험해요.(사례 10)

2) 효율성이 낮게 설치된 편의시설의 문제

가. 유명무실한 편의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편의증진법은 “(중략)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내의 유명무실한 편의시설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안전과 편리를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여성장애인은 편의시설의 부재로 인한 제한성과 더불어 유명무실한 편의시설로 인한 제한성을 경험하게 된다.

① 부분적으로 설치된 편의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이동의 제한성

주로 출입구 경사로만 만들고 1층 이상의 접근을 할 수 없게 한다든가, 화장실의 좁은 입구와 턱을 그대로 두고 좌변기만 설치하고서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표시하는 것, 엘리베이터에 점자 표식을 하지 않아서 시각장애여성이 타인에게 다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 편의시설 등, 부분적으로 설치된 편의시설은 편의시설의 취지를 무용하게 하고 있으며 추가적 보완을 다시 요구하게 된다.

- 지체장애여성의 경우

경사로가 건물 입구에만 있으니까, 학생 사무실이 5층에 있는데 리프트든 엘리베이터든 해주었으면 하죠. 화장실도 1층에만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1층까지 갔다오는 시간이 안되죠. 기존의 화장실을 이용하려니 너무 좁아서 그냥 참는 경우가 많았어요.(사례 17)

1학년 때 수업이 거의 3층에서 이루어지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1층에 있으니까 내려가야 해서 이용 못하구, 지금은 좌변기가 층마다 있는데 일반 학우가 사용을 많이 하니까, 그리구 공간은 처음 그대로니까 너무 좁아서. 밖에는 장애인 표지 달아놓고.(사례 1)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작게 만들어 놓고, 휠체어 장애인이 없어서 그런지 몰

라도, 만들어 놨긴 놨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거기 청소도구를 다 놔요 대걸레, 휴지 그냥 창고처럼 사용할 때가 있었거든요 (사례 26)

- 시각장애 여성의 경우
중간 중간에 있는 점자 블록을 대충 해 놓아서 느낌이 안나요. 눈에는 보일지 몰라도 실제 이용을 못해요.(사례 9)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것은 없어요. 엘리베이터에 점자 표시된 거. 그 외는 없어요.(중략) 계단도 몇 층이라고 안되어 있어요. 올라가다 보면 까먹을 때도 있어서...건물은 일반학생에 기대지 않고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기는 문에도 호수가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게시판을 중심으로 몇 번째다 이렇게 다니거든요.(사례 3)

② 이동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편의시설

편의증진법[13]에는 편의시설을 최단 거리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편의시설 설치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면접결과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대학당국의 교육과 감독이 부재한 상태에서, 건물을 돌아가야만 하는 곳에 설치된 편의시설로 인해 여성장애인은 이동에 있어서 제한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장애학생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에게 다시 도움을 부탁해야 하거나, 비장애인보다 훨씬 긴 거리 이동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동거리와 시간이 가중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은 이동시에 비장애학생들과 분리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에 따로 장애학생만 이용하게 하는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3관을 가고 싶으면 갈 수 없고, 2관으로 가서 복잡하게 이용해야 해요. 도서관은 작년에는 거의 못 갔어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면 아저씨를 불러야 하는데 매번 미안하고 해서. 지금은 전공책을 많이 봐야 하니까 이용하죠. 그래도 거의 이용 안 하려고 하게 되요. 제 생각에는 엘리베이터 열쇠가 저에게 있어서 이용하면 좋은데 아저씨들을 불러야 하니까.(사례 2)

13) 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저는 기숙사에서 나올 때 경사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기숙사 정문은 높은 계단으로 되어 있고, 경사로가 후문에 있거든요. 근데, 거긴 항상 문이 잠겨 있고, 경비 아저씨께 말씀을 드려야 열어 주세요.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자리를 비워 안 계실 때는 아저씨 오실 때까지 한없이 기다려야 해요. 제가 기숙사를 드나드는데는 제한이 있죠.(사례 8)

점자 블록은 도서관에 있는데, 해 놓은 장소도 뭐 별로 자주 가지도 않는 곳이고, *(점자 블록이)* 딱 한 줄 있어요.(사례 10)

경사로와 현관까지의 동선 거리 그게 문제 에요. 공대같은 경우는 경사로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면 엄청 돌아야해요. 계단이 없는 대신에 거리가 멀어져요. 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도 강의실까지 한참을 걸어야해요. (중략) 저는 동선 거리가 길면 강의실까지 가기 전에 지쳐버려요. 사실 여기 장애 학생 휴게실도 입구에서 너무 멀어요. 사람들이 이런 거 할 때 동선 거리는 생각을 안 해줘요. (사례 5)

④ 기존 화장실 이용에 있어서의 문제

면접결과 여성화장실 내의 개조한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에 입구가 좁아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문을 닫을 수 없었던 사례나 출입문을 비닐 커텐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부실하게 설치된 여성장애인 화장실은 여성장애인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여성장애인 화장실의 문제는 여성장애인이 장애인문제와 여성문제에서 배제되어 무성적 존재로 간주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턱이 있는 거 그대로 있고 화장실 변기만 바꿔놓고. 그러면 그냥 주변 여자들한테. (들어갈 수 없으니 가)언니들한테 잡아달라고 해서 앉혀주고. 여자 화장실에서 변기만 바꿔놓으면 그게 장애인 화장실이에요. 통로도 그대로고, 턱도 그대로고. (사례 20)

화장실 간판 같은 것이 크게 되어 있으면 제가 보기 좋을텐데, 제가 남자 화장실을 자주 들어갔거든요. 잘 모르고. 친구들은 아니깐 웃고 그러는데, 3학년 때 남녀 공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여대였기 때문에 교수들말고는 별로 이용할 사람이 없었는데. *(화장실)* 팻말 같은 것

도 크게 되어 있거나 크진 않아도 눈에 잘 띄게 되어 있으면... 그리고 남자화장실은 오른쪽이라는 일괄적으로 되어 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사례 22)

시설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어려운게... 화장실 이용에 대한 문제들... 한 달에 한 번씩 치러야될 일이 있는데, 그런게 시설이 안 되어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환경이... 왜냐면 남자들이야 편하잖아. 나는...바닥에 떨어지고 맨날. 1학년때 학교에 *(장애인화장실이)* 하나 밖에 없었거든요. 건물이 몇 개인데... 비닐 커텐 화장실에서 지나가다가 애들이 걷어버려서 볼일 보는 게 다 노출되고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여성들한테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같은 여성끼리인데 뭐 어떠냐 해도, 은밀한 공간인데 그런게 전혀 보장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비닐커텐이 이제 문으로 바뀌었어요?) 아니요. 이따가 한번 가서 봐요.(중략) *(화장실)* 계단이 턱 있는 상황에서 경사로 만들어서 바닥에 타일 그대로 깔아버려서, 올라가면 그냥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누가 잡아야되요. 화장실이라고 있는데도 누가 항상 잡아줘야되는... 그 이용이 굉장히 힘들어... 한시간 동안 떨어져서 못 올라가는 거야. 근처에 얘들이 없잖아. 그러면 한시간 동안 그러고 앉아 있는거야. 못 올라가는거야. 그렇게 해서 수업에 늦게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사례 13)

- 저시력의 시각장애여성의경우
화장실 같은 경우에 저는 잘 안보이니까 밝아야 하거든요. 캄캄하면 정말 몰라요. 생리(시작을)해도 모르고. 항상 밝은 데 찾아가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거는 학교에서 해줘야 하는데.(사례 4)

나. 위험하게 설치된 편의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① 급한 경사로나 부실한 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편의시설 설치 기준 규정을 무시하고 급격하게 만든 경사로는 뇌병변장애인,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 시각장애인, 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모두에게 위험하다. 계단의 손잡이의 경우, 높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계단과의 흐름에 맞추지 않은 것, 손잡이가 두껍거나 약한 것 등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것도 여성장애인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시설이 될 수 있다. 위험한 난간에서 부상을 당하

거나 사망한 사건이 학내에서 발생한 경우도 있음에도 아직도 대학은 편의시설 설치의 중대성을 방관하고 있다.

- 뇌병변장애여성의 경우

(편의시설 때문에 방해를 많이 받으셨어요?) 예. (학교에 어떤 편의시설이 있었어요?) 1학년때는 아예 좌변기가 없었구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물 같은거 안 먹고 집에 오면 배고프니까 막 먹고... 체하고...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대학교 오니까 교양과목을 내 마음대로 못 골라요. 이거를 듣고 싶은데 여기는 화장실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도저히 못 가. 다음시간은 이건데, 이거 들었다가 만약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제 시간에 도착 못하니까 이거는 못 들어. 제가 듣는 건물이 인문사회관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것만 골라야돼요. 근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 다음시간 그거 맞추기 위해서 듣는거에요. 그리고 1학년때 목젖을 다쳤어요. 경사로가 그렇게 급한 줄 모르고 내려가다가 이렇게 여기 탁 걸려서 목에서 파열이 있었어요. 거기가 문제가 많더라구요. 거기서 저 다니기 전에 한 명 죽었었어요. (그런데도 안 고쳐졌어요?) 예. 겨우 해 놓은 게 찍찍이 붙여놓고. (사례 20)

- 저시력의 시각장애 여성의 경우

정말 같이 다니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 장학 도우미나. 저는 그게 정말 필요해요. 전철을 타고 다니는 것도 계단 옆에 난간을 잡고 다녀야되거든요. 난간도 이상한 난간이 있어요. 계단이 바로 앞인데 그 전에 난간이 꺾이거나, 계단이 있는 데를 지나서 꺾이거나 하면 옆을 잡아도 저는 모르거든요. *(도와주는 사람이)*말하는 것도 너무 늦거나 빠르지 않게만 말하면 참 좋겠는데. (사례 4)

② 화장실 비상벨 장치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장애인 화장실 등 혼자 있어야 할 장소에 만일에 대비한 도움요청을 할 수 있는 벨 장치 부재는 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특히 개인적이고 폐쇄된 공간이어서 여성장애인은 더욱 고립된 위기감을 경험하게 된다.

(장애인 화장실에 있을 때) 노크하려면 손이 안 닿아요. 도움이 요청될 때는 사람이 안에 들어 있으면 목소리가 멀리 전달이 안되잖아요. 휠체어 장애인이 혼자 앉았을 때는 못 일어나는 장애인이 있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비상벨이라도 있

어야 도움이 되겠구나... (보조사례[14])

(4) 대학의 학습과정에서의 차별

1) 교과이수과정에서의 문제

가. 교수에 의한 차별

① 수업 중에 여성장애인에게 질문하지 않는 행위

면접결과, 여성장애인은 학교생활 중 교수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려와 차별의 애매모호한 경계에서 여성장애인은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이는 교수에 의한 여성장애인 차별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수 인식 교육이 필요함을 드러내준다. 아래 사례는 여성장애인에게만 질문을 하지 않는 교수의 태도로 인해 여성장애인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수업 중에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수업을 듣는데 다른 학생한테는 다 질문을 하는데, 저한테는 질문을 한번도 안했어요. 어떻게 보면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거 있잖아요. 장애인으로서 학교 오기도 힘든데 그런 것까지 물어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많이 얘기하는게 좋은데, 제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구... (사례 24)

② 여성장애인의 수업에 필요한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

장애 때문에 과제수행이 어려워 대안을 얻기 위해 찾아간 학생에게 그 과제를 그만두도록 하거나, 필기를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비장애학생과 같은 조건일 수 없는 여성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하고 볼 수 있다.

---

14) 이 보조사례는 <사례 15>의 여성장애인과 <사례 26>의 여성장애인을 동시에 면접할 때, 옆에서 참관하고 있던 여성장애인이다.

- 저시력의 시각장애여성의 경우

맨 앞에 앉아도 판서는 안보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판서를 필기하겠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 본적이 없어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적든지, 다른 친구 노트를 빌리든지 그게 다였거든요. 그것도 다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강의노트를 공개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디 올려주시면 제가 다운을 받던지 하면 좋은데. 그걸 싫어하세요. 강의노트를 주시면 안될까요 하니까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공개하기가 싫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업을 받을 때도 공개하시면 전 좋죠.(사례 4)

- 저시력의 시각장애여성의 경우

(수업 시간에 녹음을 하기도 해요?) 네, 근데 교수님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자기 목소리 녹음되는거를... 저는 녹음을 하지 않았는데, 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근데 다 몰래하죠. (교수님이 그런 것도 배려 안 해주세요?) 자기 목소리가 다른 곳에 전달될까봐... 좀 자존심 강한 분들이...(사례 22)

(전공수업을) 5층에서 해요. 5층에는 화장실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학년 되니까 많이 화가 치밀었어요. 너무 겹겹이 쌓이다보니까... 안되겠다...해서 강의실을 2층으로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이가 이러저러하니까 옮겨달라고 하는데... 하니까 자기는 이 강의실이 좋다 이거야 왜 옮기라고 해서 난리냐.. 그랬었어요. 안 옮겼어.(사례 20)

③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형태의 과제를 강요하는 행위

아래의 사례들은 교수가 여성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과제를 제시함으로서, 여성장애인의 학업성취를 저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스크랩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전 안보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 숙제가 있어서 저 시각장애여서 힘들다고 했더니 (교수님께서) 앞에서 (수강)했던 사람들도 다 했다고 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 “그건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해주는 거다”라고 말해도 안 들어주세요. (사례 9)

무교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상식 없이 관심이 있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 굿을 보고 레포트를 써 오래요. 전반적인 이미지 그런 게 아니라 굿의 의례나 절차의 의

미를 해오는 것인데 설명을 잘해주어야 하는데 시각장애인에 대해 잘 모르고 설명도 잘할 수 없으니까 자기 눈에 드는 것만을 설명해주니까 그런 면에서 어렵지요. 그리고 교수님이 특별히 배려하는 것도 없고.(사례 3)

④ 결석을 권하거나 출석을 부르지 않는 행위

아래 사례는 수업 중에 교수가 여성장애인의 수업 수강이 힘들거라는 개인적 판단으로 시각장애여성을 일방적으로 수업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학교에 처음 편입했을 때 교양과목 영어를 들었어요. 남자 강사였는데, 장애인이 저 혼자였거든요. 수업 들어갔는데, 시작하기 전에 가서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업 끝나고 불렀어요. “넌 다음부터 수업 안 들어와도 돼” 그래요. “도움도 안되잖아” 그래요. “학점은 내가 알아서 줄게” 그래요. 전에 학교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이 학교 딱 편입하자마자 그런 거예요. 그걸 따져야되는데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옆에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앉아서 수업 같이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민망할 정도로... 그분들이 “아이 교수님, 그래도 수업은 들어야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에이 힘드니까 오지마” 그래요. 다음 수업에 나왔거든요. “왔어?” 그래요 “내가 왜 안와야되는데요?” 물어봤어요. 안보이고 힘드니까 오지 말라고, 자기가 점수 준다고... 강사 정도 하는 분이 어느 정도 마인드는 갖고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대학강사가.... 그때 많이 좀 충격 받았어요. 근데 수업은 끝까지 나왔어요. (중략) 교수님이 하나 계시는데, 작년에 수업을 할 때 출석을 부르는데 장애인은 빼놓고 불러요. 그 교수님 생각에는 그게 편의를 봐 준다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어떤 편의요?)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 반에 시각장애인이 5명 있는데, 시각장애인 부를 때 그냥 넘어가요. 처음에는 ‘왜 저분이 안 부르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 안부르더라구요. 너무 기분 나빴어요 그때. 그래서 말했죠. 나도 등록금 내고 다니는 학생인데 이름 좀 불러달라고. 이번에 또 듣는데 이번에는 부르시더라구요.(사례 11)

⑤ 수업 중의 폭언이나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행위

심하게는 교수의 근본적 자질 부족이 드러나는 사례가 있다. 앞자리에서 녹음

하고 있는 시각장애 남학생에게 교수가 폭언을 하고 있는 이 수업에서, 강의를 듣고 있었던 <사례 20>의 여성장애인은 비록 교수가 자신에게 직접 하는 폭언이 아니었지만, 장애인을 멸시하는 태도가 담긴 폭언으로 인해 같은 장애인으로써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시각장애 남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가 많은 교수였는데, 병신 같은 새끼... 이러고 그랬어요. (○○씨도 거기 있었어요?) 예. (굉장히 불쾌했겠네요?)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이 어떻게 했는데요?) 책상 위에 아무 것도 없고 녹음기만 있었나 그랬는데, 아무 것도 없다고. 까만 안경을 썼어요. 그랬더니 병신인 거 부각시키려고 그러냐고 (중략) 한번은 *(그 교수가)* 농담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기를 '니네들은 여자면서 법을 공부한다고 난리냐?' 이렇게 하면 얘들이 '어~'*(야유하듯)* 막 이래요. (사례 20)

나. 동료에 의한 차별

대학 내에서 동료와의 관계성은 학업수행과 비명시적인 정보 접근 및 사회성 발달에 중요하다. 그러나 면접에 응한 여성장애인은 동료들로부터도 다양한 형태로 배제와 박탈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① 공동과제에서 일방적으로 역할분담에서 제외: "원치 않는 무임승차"

동료에 의한 차별은 공동과제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여성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활동의 제한성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역할분담에서 제외시키거나, 토론 시간을 위한 연락조차 없이 완성된 과제를 제시하며, 여성장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성장애인을 '무임승차자'로 규정하는 태도에서 여성장애인은 학습기회의 박탈과 함께 대학생활에서 소외감을 경험하게 된다.

> 거의 저는 빼놓고 했어요. 우리는 시장조사가 많은데 애들이 저한테 말을 하고 저를 빼면 좋은데 꼭 나중에 얘기해요. 불편하고 힘들까봐 뺐다구.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안 껴줘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고학년이 되어서도?) 그런 적 있어요. 같이 가겠느냐고 물어보지도 않구...(사례 16)

(공동연구 할 때는 어땠어요?) 이름만 넣고... 제 의사도 안 물어보고 이름만 넣고. (○○씨가 들어간다고 해서 팀 점수가 높아지는게 있어요?) 아니요. 그런건 없구요. 무시는 안하고 소외를 시켰어요.(중략) 저는 들러리였다고 생각해요. 그냥 덤으로 받아준거만해도 감지덕지해라... (그런 식의 태도가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거?) 강의실 옮겨 다닐때도... 항상 과 애들이 들어주고 그래야되는데... 그렇게 다녀야 된다는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냥...그냥 여기서 수업 듣는 것만으로도 좋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항상 풍겼어요. (고시에 합격해서 검사가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전혀 안되었네요?) 그게 입학할 때하고, 수능 준비할 때는 그랬었죠... 1년, 2년, 3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아니었어요.(사례 20)

어떤 때는 조모임을 하는데 연락을 아예 안 할 때도 있구요. 연락을 못 받아서 안 갔는데 어느 날 보면 레포트가 다 완성되어 있어요. 나는 참석을 안 했는데 레포트가 다 완성되어 있으면 내가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이야기를 하면 "너는 아무 것도 안하고 점수 나가니까 좋지?" 이런 식이에요. (사례 28)

② 공동과제에서 일방적으로 여성장애인에게 역할을 부여

동료들간의 공동 과제시 여성장애인을 역할분담에서 배제하는 것 이외에도 역할 결정 과정에는 참여시키지 않고 자신들이 하기 귀찮은 일을 일방적으로 여성장애인에게 떠맡기거나 여성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역할을 맡기는 등의 동료들의 태도로 인해 여성장애인은 심각한 형태의 소외와 모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들*(친구들)*끼리 정해서 저에게는 일방적으로는 역할을 주죠. (참여하는데서 제외를 좀 시키나요?) 네. 나중에는 자기들이 하기 귀찮은 걸 떠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실 지금까지 같이 못했으니까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는 대로 받아들이죠.(사례 7)

어떤 친구는 조모임에서 "네가 이게 안되면 빼버린다"고 해요. 점수는 어차피 같이 받으니까 숙제하는 과정에서는 빼버린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할 수 있

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렵고.(사례 9)

아래의 사례는 역할결정과정에는 참여시키지 않다가 일방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재차 강요하고 있는 동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장애인이 동료에게 장애를 고려해줄 것을 요구했을 때 동료는 “넌 항상 그게 무기냐?”라는 표현으로 여성장애인에게 모욕을 주면서 비장애인중심의 역할수행을 강요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을 ‘무능력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어느 책에 대해서 같이 평가하고 4명이 조 발표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저는 대학생활 초기라 필기도 잘 안해놓고 자료 정리하는 습관도 안되어 있어서 모르는 게 있는데, 제가 잘 못해오니까 다시 해와라 다시 해와라. 이게 뭐냐고. 그 친구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울고.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여서 못하는 건데... 공동과제에서 자기가 점수를 못 받을까봐 너무 압박적으로 해서... 그 아이는 쉽게 했지만 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장애가 있다는 걸 전혀 배려하지 않고. 제가 안보여서 못하겠구나 그런걸 생각 못해요. 그 후로는 공동과제 하면 저는 저 혼자 못하면 괜찮지만 같이 그룹활동 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런*(공동과제)* 일이 있어서 난 잘 안보여서 못할 것 같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넌 항상 그게 무기냐?”고... 걔가 장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서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건지, 아니면 진짜 제가 의도하는 걸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사례 22)

다. 학습지원체계 부재로 인한 차별

수업시간에 녹음기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에게 폭언을 하는 교수의 차별은 개인의 태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교내에 장애유형에 따른 학습지원체계가 없다는 것 역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학습지원망 부재는 청각장애인이 수업내용을 반도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수업교재를 수업 전에 받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필기를 할 수 없는 여성장애인에게는 복사를 위해 노트를 빌려준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인사치레를 해야하는 고충을 치르게 하고 보행이 자유롭지 못한 여성장애인은 도서관에서 자료 얻는 것이 어렵다.

① 정보접근권을 위한 지원체계의 부재

여성장애인이 학업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도서관에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확보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아래 사례들과 같이, 여성장애인은 교내의 편의시설 부재로 인한 제한성과 이 제한성을 축소시켜줄 학습지원망의 부재로 비장애인이 누리고 있는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3>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여성은 장애학생들을 위해 도서관의 대출지원 시스템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책 빌릴 때) 좀 뻔뻔해서 3권 빌릴 것 5권 빌리고... 원래 안 되는데 저는 좀 일부러 그랬어요. (도서관에서 그렇게 해 줬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죠. (장애학생들한테는 대출권수를 좀 늘려야된다고 생각하세요?) 늘리고 연장해야되고. 권수도 많아야 되고 기간도 연장되어야 되고.(사례 13)

청각장애는 수업내용 인지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술로 설명되어지는 수업방식에서 교재에 담겨있는 내용 외에 교수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자막이나 수화통역이 필요하지만 현재 국내 대학에서 이러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도 필기가 불가능하므로 녹음으로 대체하려고 하지만 대형강의실 같은 경우 특히 소음이 심할 뿐만 아니라, 녹음 후 다시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녹음된 강의 내용을 재정취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 소모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

- 청각장애여성의 경우

저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자막이 필요해요. 근데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죠.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그럼 수업은 어떻게 들어요?) 교수님 입모양을 보고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힘들죠.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반도 이해 못해요. (사례 7)

- 뇌병변장애여성의 경우

일단 우리는 필기를 못하니까... 필기를 아예 못하니까 그냥 듣고만 있어요 책보고. (중략) 내 책은 따로 있고 시험 칠 때는 그 친구 책*(책에 필기한 내용)*을 따로 복사해서 공부를 해야되니까 이중돈 들죠.*(이 학교에서 대필도우미는 수업시간에는 없고 시*

험시간에만 있음) 일, 이학년때까지는 녹음을 했었어요. (중략) 그거 똑같이 3시간짜리 한거 기숙사에 와서 3시간 들을 시간적 여유도 없구요... 녹음 상태가 애들 막 떠들고 찌직 거리고 막 그러니까 내 녹음기를 교수님 앞에다 안 갖다 놓으면 잡음이 막 들려요. 그래서 그게 신경질이 나요 막 잘 안 들리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2학년말부터는 제가 녹음을 안 하거든요. (사례 27)

모두 똑같은 형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의 방향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강의평가를 한 학기 끝나면. 지금까지는 페이퍼로 나왔었는데, 이제부터는 강의 평가를 온라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하지 않은 학생은 성적 열람이 안돼요. 그러니까 나는 안되잖아요. 수강신청이야 한번이고 제가 알아서 *(시간표 작성해서 다른 사람에게)* 번호 불러주고 입력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걸*(강의평가를)* 한 과목 한 과목 해달라고 해요. 막막했어요.(중략) 근데 강의평가를 안하고도 열람을 할 수 있도록만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때 안 해줘서 성적 확인하는 날 다시 전화했어요. 그리고 나서 해줬어요. 그리고 웃긴 건 강의평가를 못한다는 거죠. 그게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니죠. 그것도 권리인데.) 평가를 못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많아요. 이런 거. 과들도 많고, 각각 그 과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한두 개가 아니라서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1년 남았는데 그냥 나만 다니고 말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너무 힘도 없고. (중략) 시험 볼 때마다 제가 알아서 그 교수님의 구미에 맞게 시험 형태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아주 곤란해요. 그리고 시험보기 전에는 항상 교수님을 찾아가야 해요. 교수님 전 이런 학생인데, 이렇게 이렇게 시험 보겠다고 얘기해야되고. 사실 교수님 찾아간다는 거 얼마나 불편해요. 교수님들이 항상 기다려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강사분들도 있잖아요. 매번 찾아가고 혼자 연락해야 하고 그러면에서 불공평해요. (사례 10)

지금 가장 보편적이고도 큰 문제가 장애인 종류를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야 되고, 물론 개개인마다 다 다른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어요, 하나의 큰 사회이기 때문에, 학교도. 근데 범주화시킬 수는 있다는 거죠. 뇌병변, 지체, 시각, 청각.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에서도 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잖아요. 지체하고 뇌병변하고는 확실히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거죠. 그런 특성이 아무런 대안없이, 아무런 준비도, 생각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무조건 뭉뚱그려서 이건 너네들 필요하니깐 당연히. 보여지는 것만 하는 거죠. 보여지는 것, 외부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것들만 그렇다는 거

예요, 지금 큰 문제가. 그래서 각 개개인의 장애인들의 욕구 파악도 해야 되고... 뭐가 불편하고 뭐가 부족한지를...(사례 28)

저희가 그걸 건의를 하고 싶어도 그런 기관이 없어요. 학사지원과 등 각 부서는 많은데, 우리의 일을 맡아서 하는 데가 없다 이거에요. 다 각자 일이 있고, 이건 자기네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심 자체가 없고. 제가 학생 상담소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학생지원과, 학생서비스센터, 학생 상담소... 무슨 부서가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다 (자기 담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막했어요. 나중에 교무지원? '지원' 붙은 과도 되게 많아요. 지원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교무지원과에 전화를 했는데, 거긴 또 파트가 여러 개더라구요. screen reader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왜 다른 컴은 되는데 그건 안 되는지 이해도 못하고, 난 그걸 이해시키려고 한참을 떠들어야 하고.(사례 10)

<사례 3>의 시각장애여성은 음성화일로 만들어진 목록조차 없는 자료의 절대부족 상태에 놓여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재를 보려고 해도 예를 들어 토론을 준비한다던가 하면 교재가 부족해요. 음성화일이 있으면 좋은데... (중략) 자료가 부족해요. (중략) 제가 자료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요. 보통 발표 수업하려면 책을 뒤적거리다가 이걸 해야겠다가 되야하는데 저는 안되잖아요. 물건을 고르더라도 제 취향을 고르는 게 낫지. 즉각적으로 내일까지 해와라 그런 게 있거든요. (중략) 해 가야는 하는데 책두 없고 그럴 때 제일 난감하죠. (그건 비장애학생에게는 있는데 나한테 없다는 건가요?) 네. (사례 3)

② 학습지원체계 실행방식의 문제

행정지원체제가 없는 것도 심각한 차별이 되나, 여성장애인의 학내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일시적인 미봉책일 경우 오히려 당사자는 물론 동료간의 관계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장애학생 지원 방안으로 도우미 활용을 위한 지원금이 장학금 명목으로 장애학생에게 지급되는 대학이 있는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아래 사례의 여성장애인은 장학금이 어떤 취지로, 어느 부서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생긴 장학금이 1, 2, 3, 4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갖고, 주어지고 있어요, 생활비로. 한 10만원 정도. (전 장애인들한테?)네. (1, 2 급은 얼마?) 1, 2급은 13만원 3급은 9만원 정도. 4급도 9만원. 3급 이상으로 다. (중략) (이걸 지급하는 취지가 뭐래요? 학교에서.) (중략)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 달에 9만원, 13만원 나오는 게 도우미, 지금 현재 방짝이 도우미로서 있는 거예요, 봉사자로서. 그 도우미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걸로 지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 학생도 지금 학교 생활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 학생 돌아다니는데, 이 학생 때문에 시달리며 봉사할 수 없고, 또 그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우미 지원을 받아서, 방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봉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학교에서는 이걸 지급하는 취지 문제에 관한 제시 방법을 듣지 못한 거네요? 물어본 적도 없고?) 네, (이거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러한 학교 사정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학교에서. 다 그렇겠지만. 근데 도우미를 위해 지급되는 돈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돈주고 누구랑 방을 쓴다는 느낌이 들구요, 굳이 함께 살아가는 차원에서, 일반 비장애인 학생하고 같이 방을 쓰는 게 아니고, 억지스러운, 돈에 의한, 강요에 의한 그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항간에는 치사스러워서 돈 안 받을래. 이런 얘기를 하는 장애학생들도 있구요. 현재 도우미 제도가 활발하게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남을 위해서 나랑 같이 사는 방원하고 같이 쓰기 위해서 돈을 준다는건, 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사용하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죠. 왜 꼭 나랑 쓰면 돈하고 연관이 돼야돼? 차라리 그 장학금을 도우미들한테, 도우미 지원을 받아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그 돈을 방원한테 주던가. (사례 27)

③ 실습지원체계의 부재

여성장애인의 교과이수에 있어 큰 난관은 현장실습과목이다. 아래의 사례는 여성장애인의 교생실습에 대해 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당국은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학년 때 교생실습을 힘들게 갔거든요. 과에서 장애인이 처음이라 아무 대책이 없는거

에요. 장애인이 교생실습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거에요. 근데 교생실습 안 하면 학점이 안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되는데..저는 애가 타는데 학교에서는 모르겠다고 하고... 자리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니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사례 23)

우리 과*(사회복지학)*에 3학년 여름 방학 때는 현장실습이라고 해서 한달 동안 실습을 하는 게 있어요. 전화도 하고 홈페이지 들어가 글도 남기도 그랬는데, 다 지체 1급이라고 하니까 글을 써도 답이 없어요 전화를 해도 확답을 안주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니까 내가 한번 실습을 할 건데도 이런 식인데 나중에 취업을 알아볼려고 하면 더 많이 힘들 거잖아요. (중략) 솔직히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중략) 나한테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나한테 기회만 주워진다면 정말 뭐라도 어디 가서 껌팔이라도 할 각오는 돼 있어요.(사례 28)

④ 강의실 배정지원체계의 부재

여성장애인의 이동거리를 고려해서 강의실과 시험 장소를 배치하는 지원체계의 부재는 여성장애인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을 할 수 없게 하는 학습권 침해가 되며, 긴 이동거리로 인한 체력 소모와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수업에의 집중력을 떨어뜨려서 학업의욕을 저하시키고 결국 대학 생활 유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시험 텀이 바로 이 시험 끝나고 저 시험... 같은 건물 안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는 교양 동에서 봐야 되고, 하나는 법과 단대에서 봐야 되면, 옮겨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약간 불리했던 적이 있었어요. 시험 처음 먼저 보는 것을 좀 더 빨리 갔죠. 이왕이면 빨리. 먼저 쓰면 나갈 수 있으니깐. 빨리 끝내고 다음 시험장으로 갔죠. 아무래도 조급하고, 정신적으로 압박감 그런 거.... (사례 15)

이번에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만약 사회과학대 과목이면 그 건물에서만 해야하는데 추가로 교수님 재량에 따라 추가로 모집해서 인원이 초과되면 다른 건물로 옮겨가는 거예요. 제가 시간표를 다 짜고 보니까 제가 다닐 건물이 두 개였어요. 시간이 거의 맞았거든요. 그런데 한 과목이 학생이 느니까 K관으로 옮긴 거예요. 만약 제가 다닐 S관과 D관은 가까워서 S관에서 두 개를 하고 D관에서 두 개를 하면 되는데, 3교시가 K관인 거예요. 그러면 K관에서 다음 시간에 D관으로 가야하는 거예요. 그러면 늦는 거

예요.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만한 인원을 수용할만한 강의실이 없다 해서 지금은 조교하고 같이 다녀요. 그런데 조교도 바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 늦어요.(사례 3)

2) 평가과정에서의 문제

면접결과, 여성장애인은 시험이나 과제와 같은 평가과정에서 교수들에 의해 차별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는 평가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을 여성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평가하거나, 전혀 장애를 배려하지 않고 평가하는 등의 태도로 여성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여성장애인의 학업성취를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교수의 태도

아래 사례들은 평가과정에서 교수가 여성장애인의 학업능력을 평가하기 보다는 '여성장애인을 위해 이미 예정된 학점을 주는 듯이' 똑같은 학점으로 평가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학업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교수님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덜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해 못해서 A는 아니어도 C를 주시죠. 한번은 시험이 OX니까 시험봐라 해서 저는 시험 레포트도 하고 시험도 봤는데 C+이 나왔어요. (시험을 못 본 것은 아닐까요?) 책 봤으면 다 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 점수를 공개했는데 다른 애들에 비해 못보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다른 애들은 레포트 없이 OX시험만 봤는데.(사례 17)

1학년 때는 제가 적응을 못해서라고 치지만 적응이 되었다고 생각한 지난 학기도 C+도 있었고, 저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평가가 되니까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나 싶다가도 "에이씨!" 하게 되고.(사례 4)

어느 전공교수는 제가 다르게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똑같은 점수를 줘요. 계속 C를 줘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또 학년이 올라가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변화가 없어요. 레포트도 그냥 조금 신경을 덜 써가지 작성을 한 것과 신경을 아주 많이 써서 제

대로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똑같애요. '아 이 사람은 나는 그냥 학생으로 보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은 안되겠다 싶어서, 시험을 안보고 레포트로 대체할께요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점수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깔끔하게 해서 냈는데, 또 똑같애 전하고. (사례 20)

1학년 때 심리학의 이해라는 교양을 우리 둘이 같이 들었는데 시험 대신 레포트를 내라고 해서 냈는데 다른 교수는 어느 정도 점수를 주냐고 물어보셔요. 보통 B+ 나온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그렇게 하겠다구 하시더라구요. (중략) 한번은 정외과 교양 수업이었어요. 레포트 냈는데 F가 나온 거예요.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안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행정학과 조교에게 상의했더니 교수님께 전화를 하더니만 점수를 고쳐준대요. 원하는 학점이 얼마냐하는 거예요. 황당...행정학과 조교와 정외과 조교가 만나서 레포트 다 제출하는 성실한 학생이다 하구 설명하더라구요. (교수님들은 레포트에 대해 점검 안하고 시험지만 채점해서 생기는 일인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사례 17)

저는 F를 받았거든요. 찾아가서 시험 레포트를 냈다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 레포트를 찾아봤나 봐요. 미안하다구 하시면서 그리구 황당한 게 바로 그 자리에서 A로 고쳐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정말 황당했어요. 점수를 미리 알려준 것이기도 하고, 그런 말 들으니까 의욕이 안생기더라구요. (사례 18)

교양이었는데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의하고, 저는 레포트를 내라고 해서 냈는데 D를 줬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평가에 대해 의문점이 든다고 하면서 제 레포트를 보셨느냐고 했더니, 어물정하시면서 찾으시다가 이름이 뭐지 하시면서 구석에서 막 찾으시더라구요. 그리구 찾아오시더니, 잘은 안 봤는데 왜 그랬느냐면 교양 수업은 상대평가인데 다른 친구들은 필기 시험을 봤는데 저는 레포트를 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게 A나 B를 주면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있어서는 선택한 것이 아니구 필기를 못해서 교수님과 상의를 하구 교수님이 레포트를 내라고 해서. 저로서는 절대적인 것인데요. 그랬더니 학생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구. 그렇지만 다 올라가서 지금 고칠 수가 없다구 하시더라구요. (사례 1)

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위의 사례와는 달리 필기장애로 인해 글을 쓸 수 없는 여성장애인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을 지원하는 학교가 있었다. 아래 사례는 여성장애인이 컴퓨터를 도구로 사용해서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교수가 노골적으로 도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제가 컴퓨터로 시험을 한번 보려고 해봤는데, 교수님들이 의심을 하시더라구요. “네가 그때 컴퓨터에서 뭘 찾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런식으로 하시니까 ‘왜 내가 그런 의심을 받아가면서까지 시험을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구두 시험 봤어요. (사례 10)

특수학교에서의 차별에서 밝혔듯이 특수학교에서는 일반학교와 같은 수준의 교과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여성장애인의 학습능력은 부분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사례 27>은 중증의 뇌병변장애 여성으로써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학교를 다녔다. 이 여성장애인은 일반 인문계학교를 졸업한 동료들과의 상대평가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특수학교를 졸업한 자신이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특별전형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별전형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학의 기능에 대해 대학당국의 진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어차피 장애인들 특별전형으로 넣은 거잖아요. 넣어 놓기만 하고 평가를 똑같이 해 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 그게 특별전형이 아예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요. 차라리 장애인도 일반학생과 똑같이 경쟁해서 똑같은 수준에서 들어왔다면 그런 게 없을 텐데... 특별전형으로 넣어 놓고는 평가는 똑같이 하면 당연히 우리는 떨어지죠. (사례 27)

시험 볼 때 구두 시험 보거나 대필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쓰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더 안 줘요. 물론 내가 더 달라면 주겠지만, 그런데 더 달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특별한 그 무언가를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좀 싫고 해서 달라고 하지 않고 알아서 하긴 하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 교수님들의 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전 당연히 그렇게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요. 왜냐면 내가 읽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쓰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것 이해하지 못하는 교수님들이 많아요.(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구요. 저희가 그걸 건의하고 싶어도 그런 기관이 없어요.(사례 10)

저번 학기에 정말 실패를 했어요, 대필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정말 죽겠더라구요. (중략) 뭐냐면 늦게 왔어요, 대필자가. 10분 남겨놓고 왔어요. 날짜를 오인해서 *(시험)*시간을 잘못 알았던 거예요. 시험시간이 50분 안에 40분 동안 땀 쭐쭐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떻겠어요? (나중에 교수님한테 그 얘기를...) 얘기를 했죠. 근데 이미 다 지쳐있는 상태에서 제가 썼어요, 못 알아보는 글씨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썼어요. 정리를 했어요, 40분 동안. 5분이라도, 1분이라도 남겨서 오면 내가 불러준다. 그런 마음으로 썼어요. 왔어요, 10분 남겨놓고. 근데 *(대필자가)* 시험 시간을 더 달래자고 그러더라구요, 대필자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교수의 태도에서 저는 질렸고... (어땠는데, 교수가?) 그냥 시험 감독만 하시더라구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이. 그래?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얘기 한 마디 없이... 어... 그러냐? 어... 어떡해? 그러고 말아요. 그리고 내내 뒤에서 양반자세하고 자기 시험 감독만 계속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시험 시간을 더 주겠다라든가 그런 말을 했으면 그나마 마음 편히 기다릴 수도 있었을텐데 그런 얘기도 없었고, 제가 하도 안 오길래 벌떡 일어나 나가서 학생을 하나 잡았어요. 잡고 내 대필 좀 해주라. 그래요 언니. 그래서 갔어요. 이 친구한테 지금 대필을 부탁을 했다. 그래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지. 같은 시험을 쳤는데 어떻게 대필을 해달라고 그러냐. 안다. 내가 컨닝을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써 둔 게 있다. 그것만 불러주겠다. 와서 내가 컨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얘가 중얼거리며 쓰는지 봐라. 그랬었거든요. 그래, 써 놓은 거 있어? 그럼 그렇게 해봐. 와서 보더라구요. 그래놓고 쓰려니깐 제가 더 이상. 저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깐 생각나는 걸 미리 적어둔 건데, 거기서 덧붙여서 얘기를 할려니깐 다시 머리를 굴려야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럼 결국 시험 보고 나가려는 학생이 대필을 해 준거예요?) 쓰다가 *(원래 대필자가)* 왔어요. 바뀠죠. 대필자인데. 그리고 나서 점수를 되게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너 하나 높여주면 다른 사람들 떨어뜨려야 하는데, 워낙에 다른 애들이 잘 봤다. 상대평가다.” “상대평가 아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바란다. 나는 오답을 쓴 적이 없다. 단지 짧게 썼을 뿐이다. 교수님 아시잖아요, 그 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러면 그거를 고려를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무조건 길게 쓰지 않았다고 해서 점수를 낮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점수를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미

안하다. 미안한데 안 되겠다. 다음에 또 들어라. 그러면 내가 점수를 많이 주겠다. 내가 대필을 사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려움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화가 났었어요. (사례 28)

(5) 대학의 취업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1) 대학 내의 취업 관련 차별

면접결과, 여성장애인은 대학 졸업 전후의 취업준비과정에서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다른 취업정보가 제공되거나, 여성장애학생에 대한 취업지원제도가 없음으로 해서 취업알선은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취급되어진다. 대학의 취업지도와 홍보 등 취업지원체제 전반에서 여성장애학생은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사례 26>은 장애인 중에서도 남성장애인이 취업추천에 있어서 여성장애인보다 우선적인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주다.

① 교수가 취업추천에서 여성장애인을 배제하는 행위

면접결과, 여성장애인은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남성보다 취업정보에의 접근에 제한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생계부양자이고 여성은 가정주부라는 성별분업이데올로기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여성보다 남성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게 한다. <사례 15>와 <사례 26>은 교수의 취업 추천이 남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희 교수님이 어디어디 신문사에 기자 할 사람 뽑고 있다 하면서도 남학생한테만 그런 걸 말씀하세요. 제가 왜 남학생한테만 그런 이야기를 해주냐 하니까 신문사에서 남자를 원한대요. 수업시간에 대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사례 15)

취업 연결시켜줄 때, '어디 가봐라' 그런 거 할 때, 저는 특별히 생각해 주지도 않고,

알아봐 주지도 않고, 다른 학생인 경우는 4학년 때에도 취업을 나가니깐 거기 한 번 원서 넣어봐라,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는 그런 말씀 한 마디도 안하고, 너는 너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친구 같은 경우에, 교수님이 과사에 누구한테 전화해 가지고 누구 와라, 뭐 떼서 와라 하는 식으로... 저같은 경우는 과사에서 전화 한 번도 안 왔어요. 저랑 같이 졸업한 사람 중에 오빠가 장애인이였는데, 그 오빠는 성격도 되게 활발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교수님하고 친해서 과 교수님도 조금 신경 써 주시는 것도 있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관심을 별로 안 써 주시는 것 같아요. (사례 26)

② 여성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망의 부재

(학교 취업센터로부터 받은 건?) 전혀 없어요. 제가 물어봐도 연락을 안줘요... 물어봤는데도 연락이 없었어요. (느낌이 좀 기분 나쁜게 있었어요?) 자원봉사센터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물어보라고 하더라구요. (취업을?) 왜냐하면 거기 주로 장애인들이 많이 들락날락 거리니까, 일에 있어서는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알아봐라... 아까 면접 볼 때랑 똑같애요. 특수교육학과 교수가 본거랑. 같은거죠.(사례 20)

비장애인들도 그렇겠지만 장애인들이 취업을 알아볼 수 있는 게 힘들잖아요. 만약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관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장애인 취업 정보 제공 등)만 전문적으로 하는 정해진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다 더 쉽게 알 수 있게 (사례 10)

(진로계획에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거기 그 (관련)정보 안에 장애인을 포함시키진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비장애인들에게 있을 법한 따로의 어떤 그런 게 정말 필요한데...(일반 정보 안에 장애인을 고려한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거죠?) 네, 그런데 당연히 장애인은 배제시켜 놓는거죠, 그 안에. 그리고 장애인의 직업 정보란은 단순 업무직에 쏠려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등교육을 경험하고 획득한다고 해도 거기에 있는 정보가 많지 않다면 붙여 놓은 쓰레기가 되는거죠. (사례 27)

2) 대졸 여성장애인이 구직과정에서 겪는 차별

가.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여성장애인 차별풍토[15)]

여성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 중심의 생산력과 효율성 논리는 장애인계에서도 여성장애인 보다는 남성장애인,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장애인 개인의 특수성과 장점을 살린 업무 내용과 실행 방법을 개발하고 지원을 받아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지원이 당연함에도 여성장애인은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아래 사례의 여성장애인은 직업재활교육은 대상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에도,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의미있는 일로 직업재활을 선택했지만 장애인을 교육하고 보조한다는 것이 육체적 힘까지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 자신의 진로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3학년 때, 졸업하면 직업재활쪽으로 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잘 되지 않더라구요.

---

15) 이번 연구과정에서 자료를 입수한 H 장애인 기관에 재직중인 장애인 직원 중 남녀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 12월 현재 여성장애인 직원은 전체 장애인 직원 중 10%에 머물고 있고, 그나마도 경증의 지체장애여성만이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남성장애인 직원의 구성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여성장애인은 장애인 기관에서도 소수집단의 위치에 있으며, 이는 여성장애인에게 취업기회의 폭이 매우 적음을 암시하고 있다.

<표 7> H 장애인 기관 내 장애인직원 성별·장애유형 비교 (2002년 12월 기준, 자료출처: H 장애인 기관 내부자료)

성별 / 장애유형 및 정도		여성	남성	합계
지체	1급	·	7	7
	2급	2	17	19
	기타(3-6급)	10	49	59
시각	1급	·	·	·
	2급	·	1	1
	기타(3-6급)	·	9	9
청각	1급	·	·	·
	2급	·	2	2
	기타(3-6급)	·	2	2
기타	공상군경, 뇌병변장애	·	3	3
합계		12	90	102

(그 동기는?) 저희 학과가 직업재활쪽으로 많이 나가거든요.(그쪽이 많이 안정이 되었어요?) 예. (근데 왜 잘 안됐어요?) 같은 레벨이면 장애가 있는 사람보다 장애가 없는 사람을 선택하겠죠. (어디서?) 복지관이요. 내가 복지관을 가고 싶었거든요. (내가 여성장애인이어서 안 뽑혔다는 건 없어요?) 아무래도 직업재활쪽이 무거운 걸 많이 들 때도 있고. 여성장애인보다 남자를 쓰죠. 또 운전할 수 있는...저는 없거든요. (취업할 때 운전면허소지자를 원했어요?) 네. 같은 레벨에서 아무래도 운전면허있는 사람을 뽑겠지. (운전은 배우면 되지?)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장애인은 따로 측정하는 게 있어요. 운전이 가능한지... 저는 다 합격했는데 핸들 돌리는 거에서 떨어졌어요. 그게 파워핸들이면 되는데... 장애없는 여자들도 힘이 든다고 하더라구요. (여자들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예. (사례 21)

사회 복지라는 세계 자체가 특출한 능력 아니면 다 인맥을 통해 들어가더라구요. 복지관에서도 같은 장애인이라고 해도 여자를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복지관 내에서 시각장애인 컴퓨터 강사를 한 명 뽑더라도 여자보다는 남자를 원하거든요. 복지관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여자보다 남자를 먼저 뽑고, 같은 특수교육학과를 나온 시각장애 선생을 뽑더라도 능력은 같은데 학연 다음으로 뽑는 게 남자거든요.(사례22)

나. 일반기업체에서 여성장애인 차별풍토

아래의 <사례 20>은 취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매번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업무의 특성과 상관없이 번번이 취업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중증 여성장애인의 구직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준비는 따로 하셨나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었는데... 사실 저는 직업재활도 안되거든요. (직업재활?) 재활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게 직업재활인데 장애상 불가능한거예요.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영역을 마련하지 않는 한은 그거 필요없는거.... 저는 항상 밀리고 밀리고.. 그랬죠. 직업전문학교 다닐때도 그랬어요. 타겟이 아니죠 저는. (중략) 취업자리 알아보면 여성이라 안된다는 것도 꽤 있었어요. (어디요?) 어딘지 하도 많아서... 인터넷으로 다 조사해서 전화로 물어보면 여성은 안뽑는다고...장애인은 뽑지만 그 중에서 여성이라 안돼요. 이렇게. (그게 어떤 직종?) (중략) 인터넷쪽... 보아하니 언어장애도 있는 것 같다고. (인터넷 관련 일인데 왜..) 모르겠어요. 거기 딱 집어서 얘기 안하고 주변적인거 다 집어넣으니까. (장애인 할당제로 뽑는 곳에

하신건가요?) 그런 데도 지원하고, 그런 문구 없는데도 전화하고. (사례 20)

(6) 여성장애인에 대한 학내 성희롱·성폭력[16]

면접결과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과는 다르게 성폭력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여성장애인이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인식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해 형성되어 있는 편견과 여성장애인이 처해 있는 특수한 환경에 의해 여성장애인이 성폭력에 있어서 비장애여성과 다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면접에 응한 여성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변의 성폭력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서 느낀 점에 대한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특성

면접결과, 여성장애인의 취약한 방어능력과 타인에게 다양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여성장애인을 '무성적 존재', '인지력이 부족한 존재'로 이해하는 사회적인 편견과 혼합되어서 여성장애인이 일상에서 비장애여성과는 다른 내용의 성폭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는 이번 면접의 결과로 나타난 여성장애인

16) 실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들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때 '성적 언동'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데, 여성부는 이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 행위'라고 제시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성폭력범죄'를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과 '성폭력'이 서로 다른 것인지, 아니면 '성폭력'이 '성희롱'에 포함되는지 혹은 '성희롱'이 '성폭력'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통일된 의견이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을 '성희롱'이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성폭력'으로 통일해서 사용함을 밝혀둔다.

에 대한 성폭력 특성을 요약한 표이다.

1) 여성장애인을 무성적 존재로 간주함으로써 발생하는 성폭력

아래의 사례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토론수업에서, 여성장애인이 무성적 존재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두 명의 여성장애인이 대화하는 내용이다.

(사례 26): 수업 시간에 성폭력 관련된 여성학 수업을 들으니깐 느끼는 건데, 여자가 성폭행 당했을 때랑 장애 여성이 성폭행 당했을 때랑, 그걸 받아들이는 학생이랑 가르쳐준 선생님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장애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면 '어 왜 장애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을까? 누가? 어떻게?... 어떤 남자가 여성을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장애 여성을 성폭행 했을까?' (그런 태도가 보여요?) (사례 26): 의외로 되게 느낌이 이상해요. 여자가 성폭행 당한 거랑 장애여성이 성폭행 당한 거랑. (사례 15): '장애인 여성이 외형적으로 매력이 없는데 왜 그런 여자 성폭행 하냐?'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 (누가 그런 태도로 얘길 해요?) (사례 15): 남자들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장애인들이 만약에, 그냥 지체 장애인 그런 장애인 쪽도 있고 정신지체 장애인일 수도 있는데, 그런 애들이 만약에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걸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그러니깐 외형적으로도 매력도 없을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 덜 자연스러워서... (사례 26): 여성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사례 15): 어쩌면 쉬운 상대를 굳이 왜 그렇게 했느냐 비하 섞인 태도... (사례 26): 여자가 많은데 하필 장애여성을 선택했느냐... <(사례 26)과 (사례 15) 동시 면접>

아래의 사례들은 일상생활에서 여성장애인이 여성으로, 혹은 성적 욕구를 가진 존재로 이해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지각하고,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모습을 볼 수 있다.

여성장애인이 꾸미거나 화장을 한다거나하면 굉장히 특이한 시선으로 봐요. (왜요?) 글쎄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거나 예쁜 옷을 입고 다니거나 하는 건 스스로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전에 여성장애인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하고 싶어도 별로 표현을 하지 못했으니까...(사례 8)

후배이야기인데,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좌변기가 남자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봐야하는 거예요.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남자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을 만들어요?) 예. 어떤 거는 그랬대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구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남자화장실 가서 봐라... 그러는데, 자기는 정말 치욕감을 느꼈대요. 지금 보면 장애인도 남녀화장실 따로 구분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장애인을 성으로 구분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몇몇 여성장애인이 자기가 여성으로써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써의 이성교재도 하기 힘들다고까지 생각을 하는 장애인들이 많아요. (사례 24)

아래의 사례는 여성장애인을 무성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사회적인 편견을 스스로 내면화한 시각장애여성이 자신을 '부족한' 존재, '보통 여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위치시키면서, 일상의 남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남자였으면 남자들한테 도움 청하는 게 훨씬 편했을 텐데... 제가 여자니까 오빠들한테 다가가서 도와달라기가 참 그렇더라구요. 자존심도 상하고. 남자들 외모도 중시하고 그리고 어쨌든 좀 부담스러워요. 시각장애인으로써 일반 남자를 대하는 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거는 저 말고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남자를 대하면... 내가 부족한데 말을 걸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보통 여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먼저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남자들도 내가 말을 해도 별로 안 들어줄 거 같고...(사례 22)

이렇게 여성장애인을 무성적으로 간주하는 사회의 편견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여성장애인이 비장애여성에 비해 더 쉽게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게 하는 기제가 된다. 아래의 진술은 여성장애인이 성적 존재로써의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함으로써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가 비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피해보다 훨씬 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여성장애인이 성폭력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비장애여성은 그런 문제가 있

으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피해자라고 분명하게 드러내주는데, 장애여성은 피해자라고 의식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하고, 인간이라는 존엄성도 덜 인정하고... 제가 피해를 입었다 한다면 '그냥 그렇구나...' 거기서 머무는 것 같아요. (사례 1)

여성장애인을 무성적 존재로 간주하는 태도는 가정에서 여성장애인에게 성적 표현을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여성장애인의 성적(性的) 발달에 대한 무관심과 무시, 모욕적인 언어표현을 이용한 성폭력을 유발시키고, 이는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낮춤으로써 성폭력 예방을 어렵게 한다. 아래의 사례들은 성교육의 대상에서 여성장애인이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성장애인단체)에서 세미나 들었는데, 남성들은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자연스레 받아들이는데 여성장애인 경우는 가슴이 나오기 시작할 때 "몸도 불편한 게 할 거 다 한다고 해서 꽁꽁 붕대로 감고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되게 놀랐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타인을 통해서 성적으로 자기도 정체성을 생각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성장애인은 누구와 사귄다고 하면 어디까지 갔느냐, 누구와 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여성장애인은 수치로 여기고. 강자와 약자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사례 1)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에 대해서 지금 교육이 부재되어 있어요.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해 주세요? 부모도 그런 얘기 안해요. 성적인 얘기, 성적인 교육 안해요. 장애여성들 같은 경우, 장애인 자식이니까 '너는 그런 거 전혀 못 겪을 거야' 무시해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이 안된 상태에서 이미 터져 버렸고, 자기가 이게 사랑이라고 믿는 상태에서 친구 말이 안 들어가는 거죠. 부모들 교육이 되게 문제구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성적인 예방이라든가 그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느낀다는 거죠. (사례 27)

위와 같이 성교육으로부터의 의도적인 배제와 성적 존재감을 무시하는, 모욕감을 주는 언어 표현은 여성장애인에게 성(性)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이해하게 한다. 이는 여성장애인이 성폭력에 대해 인지했다 하더라도 피해사실을 드러내고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를 비가시화시키게 된다.

(성폭력에 대해 알고 계신 사례가 있나요?) 제 일은 아니고요. 제가 친한 시각장애여학생이 있거든요. 거기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나이든 남학생이 많거든요. 여학생이 거의 없어요. 어울리다보면 남학생들과 어울리게 되거든요. 한번은 놀러가서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서 쉬는데, 연초인가 했는데, 한 분이 가슴을 추행한 거예요. 그 순간 걔가 하지 말라고 말을 못한거에요. 왜냐면 그 사람은 걔가 자는 줄 알고 그런 거잖아요. 숨기고 싶은 것도 있고... (거기서 끝이에요?) 네. 걔는 그 사람과 그 후 말을 안해요. (사례 3)

2) 신체적·심리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성폭력

면접결과, 여성장애인 중 많은 경우가 여성장애인이 '쉽게 보이기 때문'에 비장애여성보다 더 쉽게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자기방어능력이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 쉽다고 여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의 사례들은 신체적·심리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한 상태에 있는 여성장애인이 어떻게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성폭력에 관한 법을 들어보니, 아주 강력한 반항이어야 성행위에 대한 거부로 인정된다고 들었어요. 비장애여성도 힘은 없겠지만, 장애여성의 경우 신체적 취약점으로 인해 반항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또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둔감하다고 생각해요. 장애여성의 경우 외부 사람들과의 만남이 적기 때문에 사랑이나 혹은 기타의 유혹에 판단을 잘 하지 못하고, 비장애남성이건 장애남성이건 쉬운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사례 18)

(여성장애인이 성폭력에 있어서 비장애여성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만약에 휠체어장애인이 길바닥에서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기어가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느리고요. 접근성이 약하니깐. 그래서 이 남성들이 성폭력을 했을 때,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했을 때, 자기의 신변에 대한 안전성이 조금 더 확보된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까? 그리고 최소한 사랑이라는 알량한, 교묘한 수법으로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탕발림의, 그런 식의 수단이 이

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여성장애인들은 사랑이라는 이 알량한 수법에 당할까요?) 그냥 접하는 게 없으니까요. 남자를 자주 만난다거나 기회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해주면, '아, 이 사람이 날 정말 좋아하나 보다'라고 확 믿어버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고, 사회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례 27)

또한 여성장애인은 성폭력에 대한 인지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사례는 '어수룩하게', '모자라게' 보이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을 당해도 그 피해를 인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가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신지체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심각성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한편 시각장애여성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여성은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과는 다르게 성폭력으로부터 위협받고 성폭력을 경험할 수 있고, 따라서 다른 정도로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시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 성폭력이 비장애인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확률이 높죠. 상대자가 자기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장애인 자체를 무저항적으로 생각하고. 장애인 자체를 어리숙하게 보는 것 같아요. 모자르게... 눈만 안 보이는 건데도...(사례 3)

3) 의존적 상태를 이용한 성폭력

장애로 인한 제한성을 축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할 때, 물리적으로 힘이 필요한 도움은 대다수 남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남성장애인과 달리 여성장애인은 이성인 남성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은 도와주는 행위와 성폭력간에 경계가 불분명함을 깨닫고 당황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도움행위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익명의 남성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폭력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도덕적 가치는, 이들이 행동이 의도적이었

건 아니었건 간에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막는다. 아래의 사례들은 도와주는 행위와 성폭력간의 모호한 경계에서 여성장애인이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의 경우 다른 비장애여성들과 달리 쉽게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했고, 업히는 것이나 안겨서 올라가는 등 뭇 남성들의 등과 손을 빌려야 했고, 팔짱을 해야 했어요. 힘을 사용하는 성은 대다수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은 이성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내가 다른 남성의 등에 업히거나 팔짱을 끼고 싶지 않아도 그 마음을 이겨내야 할 때가 있어요.(사례 18)

황당한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사회복지사가 차량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을 성추행 한다거나 성폭행을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한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그 얘기를 듣고... 우와... 성추행을 하려고 차량봉사를 하는 건지, 차량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우습게 보여서 그런 짓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사람도 아니고 여성장애인 여러 사람을. 성폭행을 한 미끼로, 그걸 전제로, 불어버리겠다는 식으로 해서 교제까지 하구, 그게 한사람한테 행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그 과정에서 참다 못한, 다른 당했던 사람이 현재 사귀고 있는 여성한테 말해서, 그 여성이 '아차 이게 아니다' 싶어서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알았어요?) ○○○*(여성장애인단체)* 통해서 저도 알게 되었어요.(사례 14)

그런 거 있죠. 학교에서 지나가다가 도와주는 척하면서 만지는 경우. 제가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손을 잡고 일으켜 줘도 되는데 꼭 겨드랑이에 손을 끼워서 일으켜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럴 때는 정말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불쾌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사례 28)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강의실이 4층에 있는 경우였어요. 다른 과목이면 강의실을 내리면 되는데, 대형강의라서 큰 강의실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강의실에 갈 때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계단을 올라가요. 그런데 업혀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업히는 게 보통의 여자들이 그렇듯이 남자에게 업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로부터 업히는 게 차라리 편하다라고 강요받은 적이 좀 있어요. 사실 업히고 싶지 않은데... 도와주는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것을 아예 무시해버리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봐요. (사례 8)

황당한 일이, 버스를 타는데, 저는 웬만하면 올라가요. 근데 뒤에서 자꾸 밀어요. 엉덩이를 자꾸. 제일 싫은 게 그거거든요. 내가 올라갈 수 있는데 자기는 혹시나 쓰러질까봐 받쳐준다는데...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은 걱정돼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중년의 아저씨들이나 이상하게 생긴 남자들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밀어주면서 만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보조사례)

(2) 여성장애인에 대한 학내 성폭력[17]

우리나라의 대학환경은 장애인이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 차례의 타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구성되어있다. 여성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런 의존적인 환경은 위에서 설명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특성과 결합해서,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보다 학내성폭력에 훨씬 더 많이 위협받게 한다. 여기서는 위에서 설명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학내성폭력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번 면접결과에서는 소수의 성폭력 유형만이 존재했다.

① 위계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교수, 선배의 술자리에서 술 따르기 강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에 들어와서 우연히 과 교수님과 남자 선배들이 있는 술자리에 갔었는데, 저보고 자꾸 술을 따르라고 했어요. 그때, 다른 여자 선배들도 있었는데, 저에게만 그랬어요. 그리고 저보고 “야, 네 예뻐 보인다.” 라는 말 등을 하구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아주 나빴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했어요?) 그래서 저는 버릇없게 쏘아붙였어요. 남자 선배들보다 교수님이 좀 덜하긴 했는데... 그래도 교수

17)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학내 성폭력’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참고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1997년 1월에서 1998년 6월까지 상담통계 중 학내 성폭력 관련 상담은 181회로써 전체 상담의 3.3%를 차지했고, 이중 교수나 선배에 의한 성폭력피해가 83.4%에 이르고, 그 외에도 동료 및 교직원에 의해 대학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sisters.or.kr/menu5/university.html)

님이면 말리거나 뭐라고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사례 7)

② 도움을 빙자한 성폭력

도와주겠다고 해서 순수하게 도와준 거랑, 도와준다고 하면서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탁 달라요. 느껴져요. (치마를 입고) 도서관 계단을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게 불안해서 쳐다 봐주는 거라고 하면서 다리를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훑으면서... 말은 책 들어줄까 하면서 위아래로 훑고 그랬어요.(사례 15)

넘어졌을 때 남자가 도와줄 때 순간적인 것인데 뒤에서 잡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겨드랑이로 손이 들어와 찝찝하고 당황하게 되요. 도와주려는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라서... (사례 1)

MT가서 술 마시고 "속에서 뒤집어 질 거 같애" 이렇게 하니깐 그 남학생이 저를 끌고 화장실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화장실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갔으면 되는데, 걔가 화장실 문을 잠가 갖고, 나보고 토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때 다행히 제 친구가 들어가서 문 잠긴 것을 보고서 밖에서 거기서 둘이 뭐하냐고, 괜찮냐고 일부러 막 더 떠들어서, 만약에 그 친구 아니었으면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사례 15)

(성폭력에 대한 경험이나 주변의 얘기를 들어본 게 있어요?)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순간 기분이 나빴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나는 '나를 지켜야겠다'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단체 ○○○(*교내 동아리*)에 처음 들어갔을 때 만났던 사람이에요. 성경공부를 1:1로 가르치는 건데, 저는 신입생이니까 가르쳐주겠다는 입장으로 만난 사람인데, 저는 처음가면 항상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한번인가 두 번인가 만났는데 전화해서 사귀자고 말해서, 싫다고 했더니 화를 내면서 끊었고, 그 후엔 한번 더 만났고. (뭐라고 하며 화를 내요?) 왜 싫다고 하냐... 왜 대답을 안하고 피하냐... 그때가 주말이어서 교회가야 한다고 끊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 싫다고 퇴짜를 놓으면 관계가 이상해지니까 적당히 끊으려고 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끊었고, 한번 더 만났을 때 뒤에서 안으려고 했고, 풀으려고 하니까 풀어 주더라구요. 그 후엔 그 단체에 안 갔어요. 그리고 어느 강사분에게 찾아갔거든요. 내가 남자분을 찾아간 것이 잘못인지 모르겠는

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두 번인가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요. 장애 때문에 쉽게 보인다는 생각이... (사례 4)

③ 의존적 상태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 17): 학관 관리실 아저씨 중의 하나도 저한테도 귀를 만지고 엉덩이도 만지려구 해서,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는 것은 고마운데 이러면 제가 마음놓고 도움을 청하지 못하지 않느냐,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라 했더니 딸 같아서 그러는데 그러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구요. 아무래도 도움을 받다보니. (사례 1): 그 아저씨가 저한테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나이도 많으시고 해서 이뻐서 그러시려니 했는데, 몇 번 당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그 아저씨에게는 말이 통할 것 같지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사례 17): 우리가 약해 보이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보호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있겠고... (사례 1): 한마디로 얕보는 것이지요. 약하기 때문에 접근이 쉽고, 아무래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말 안 할거라는 생각과... <(사례 1)과 (사례 17)을 동시 면접>

④ 기타

학교 내 ○○매장 아저씨가 이상하시더라구요. 계속 손을 만지려고 하구 얼굴 만지고 귀를 만지고... 맨 처음에는 당했어요. (비장애여학생들에게도 그렇게 하나요?) 아니, 못하죠. 지금은 무시하고 지나치고, 말을 걸어와도 그냥 지나가요.(사례 1)

□□과*(교내 행정부서)*에 일이 있어 가면 한 선생님이 저를 보면 볼을 꼬집곤 해요. 무척 기분 나쁘지만 당황하고 분위기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그 사람이 비장애여학생에게도 그러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씨한테만 그랬을까요?) 글쎄... 쉬워 보여서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호의가 있더라도... 그땐 왜 아무 말도 못했는지... (사례 1)

학교 내에서든 밖에서든 성폭력을 당했을 때, 교내의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인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학교 상담소의 상담원이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면, 여성장애인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아래의 사례는 교외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장애인이 교내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직원의 무지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더욱 불쾌함을 느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성폭력 피해 이후 학교 성폭력 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해봤는데... 근데 그게 더 신경이 쓰였어요. 자기네는 그런 의도가 아닌 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요... '뭐 그 정도 갖고 고소를 했느냐?', '몇 번 상담을 받아봐' 그런 식으로... (사례 14)

Ⅴ. 여성장애인 관련 법 · 규범 및 정책 고찰

1. 국내 법·규범 및 정책 고찰

(1) 여성 관련 법·정책과 여성장애인

1) 여성발전기본법

이 법은 여성에 관한 법률의 기본원칙을 정한 법으로, 북경세계여성대회 이후 당시 대통령 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북경회의의 행동강령을 반영시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일환으로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여성발전기본법 제1조). 기본이념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평등의 촉진·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적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여성발전기본법 제2조). 이 법은 여성정책의 기본계획과 시책, 여성발전기금과 여성단체의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의 시행으로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근거 마련되었다. 본 법은 2001년 9월에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개정안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형성 및 추진과정에서 성평등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성별 분리된 통계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두도록 규정하는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장애인과 관련하여 계층, 연령을 포함하는 모든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로서의 여성발전기본법에서도 여성장애인은 법의 테두리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있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점이 나타난다.

일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액에서 여성가장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은 새로이 고용된 피보험자 1인당 600,000원을 지급[18]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장애인고용장려금에서 정하는 여성장애인 592천원보다 많은 금액으로, 경증의 여성장애인보다 비장애여성을 우선 고용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율에 있어 전국민 여성의 경우 2.1%임에 비해 여성장애인은 4.9%를 나타내고 있어 여성장애인의 취업현실에 비추어 여성장애인가장실업자가 보다 많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법에 근거한 모든 정책과 통계조사에 여성장애인에 관한 항목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로써 여성장애인도 여성으로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성 내에서의 적극적 조치를 정책으로서 담보해낼 수 없다면 새로운 제개정의 입안이 필요하게 된다.

2)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남녀차별금지법)

이 법은 1999년에 제정되어 2001년에 한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 평등의 실현함이다(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18) 노동부고시 제2002-46호.

률 제 1조). 이 법에는 교육, 고용 등의 차별의 금지 이외에도 성희롱의 금지, 남녀차별금지위원회의 설치와 남녀차별의 조사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남녀차별금지법 제7조 1항에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대학교의 교수, 교직원 등이 학생에게 가하는 성폭력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하면 동료나 기타 외부인 등 대학교와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은 학교의 책임이 아니게 되며, 따라서 이들에 의한 성희롱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학교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남녀차별금지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희롱의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대학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실제 사례연구결과 면접에 응한 여성장애인 중 교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거나, 예방교육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실효성이 낮은 규정임이 드러났다.

남녀차별금지법은 여성발전기본법과 더불어 여성지위향상의 기본법으로 오랫동안 관행화된 남녀차별을 개선하는 척도로서 작용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대체로 장애인에 대한 시각으로만 보호하고자 한 측면이 있어왔다. 그러나 위의 장애인 관련법에 설명된 바와 같이 장애인으로서의 여성은 남성장애인보다 많은 기회에서 제한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성별통계나 성별예산 등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여성장애인과 관련한 법의 제개정 및 정책을 계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본 법에 의해 차별 사례를 드러냄과 동시에 여성장애인이 겪는 성차별 구제에 보다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3) 남녀고용평등법

이 법은 1987년 12월 4일에 제정된 후 그 동안 네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 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 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 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과 대우 및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19]에 의하면 노동부, 고용평등기본계획 주요내용에는 성차별에 대응하여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구체화, 고용평등 상담실 설치, 보육시설의 세액공제 비율 확대, 주택단지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 확대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계획의 시행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은 취업의 제한으로 인해 여성장애인은 적절한 보장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여성장애인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기업이 여성에게 요구하는 능력으로 직업의식(56.1%), 업무추진력(32.8%), 대인관계능력(28.9%), 자기관리능력(23.1%) 등이라고 한다. 대졸여성이 직장생활에서 강화해야 할 것은 컴퓨터 사용능력, 전공지식 등의 구체적 업무수행 능력보다는 직업 및 직장에 대한 의식, 대인관계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졸여성이 회고하는 대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능력 개발 사항은 대학의 진로 및 직업능력 개발 시스템이 중요한 요소[20]라고 한다. 이를 통하여 여성장애인이 어려서부터 겪게되는 차별적상황에서 광범위한 사회관계 속에 놓여있지 못한 것이 대인관계 등 장래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성장과정에서 실효성있는 통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대학차원에서 여성장애인만을 위한 홍보와 특별한 진로 및 취업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남녀고용평등법으로부터 여성장애인을 소외시키지 않기 위하여는 소외계층에 대한 남녀고용차별 실태에 관심을 갖고 이를 보장할 규정을 명시하여야 하며, 법에 근거하여 남성중심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감독이 필요하다.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7년 12월에 제정되어 다음해 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

19) www.kwdi.re.kr(한국여성개발원)
20) www2. kwdi.re.kr:8090/DATA/2002 report220-2.PDF.

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개인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가정과 가족제도를 유지,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7년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조사[21]에 의하면, 조사대상 장애여성의 49.5%의 많은 수가 무시와 멸시, 언어폭력 등의 정신적 폭력과 구타와 폭행 및 성폭행의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장애인의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하여 쉽게 폭력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당장의 폭력직전의 위기상황에서조차 여성장애인은 벗어나기 어렵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본 법으로 여성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규정 신설을 통하여 교육, 홍보 및 제도 마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 법은 1997년 12월 13일 제정되어 그 일년 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으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여성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폭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여성장애인, 노인, 아동인 경우 가해자가 또한 보호자로 비추어져 사건처리를 곤란하게 할 경우가 있다. 제5조[22]의 신고받은 경찰의 현장조치에 있어 특별경고 규정을 신설하고, 제9조[23]의 가정보호 사건의 처리에 있

---

21)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인 정책대안 마련 공청회” 자료집, 1999.

22) 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포역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포역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23) 제9조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 '사건의 성질', '행위자의 성행' 외에 피해자의 성질을 추가하는 개정과 이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특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4년 1월 5일에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최근에는 근친간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어 개정 필요성에 따라 미성년자와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가중 처벌 등을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법은 형법상의 성범죄 조항을 들어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정의한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성교육 등을 통하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의 제 8조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형법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서 정한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서는 범죄입증을 위해서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는 상황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요구되고 있는 '피해시의 상황에 상관없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24]가 무시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7) 제1차 및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정·사회 생활 지원프로그램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재가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장애인의 배우자 초청교육 프로그램이나 결혼 및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여성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교육 강좌등의 프로그램 확대실시,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24) [성폭력피해자권리헌장]은 '98 여성폭력추방주간'에 맞춰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선포하였다. 자료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http://www.sisters.or.kr/menu4/pilsu3.html)

행사 지원, 장애아 지도에 대한 교육강화가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 취업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은 여성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사업체 지원 확대: 여성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 강화(고용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원) 및 여성장애인 적합직종 개발 및 직업훈련의 다양화이다. 이를 위해 여성장애인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를 확대·개발과 직업훈련의 방식을 단순한 기술교육에서 현장실습 및 직장적응 위주로 실시 및 통신이나 정보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방식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개발·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에는 사회적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쉬운 여성장애인의 권익과 가사 및 육아보조 등 여성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필요를 전제로 명시하고 있다. 세부계획으로 여성장애인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여성장애인 특화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여성장애인 적합 직종을 개발하고 보급할 것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 임신·출산·육아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등의 복지 서비스 강화 및 장애인복지 관련 성인지적 통계 구축을 정하고 있다.

(2) 장애인 관련 법·규범과 여성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재활·복지에 관한 일반법이자 기본법에 해당한다. 이 법은 장애인 재활복지에 관한 기본사항과 기본이념을 다루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 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장애인복지법 제 1조).

특히 제 8조[25]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제 9조[26]에서는 여성장애인

25) 제 8조 (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의 권익을, 제 18조[27]에서는 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법에 차별금지에 대한 별개의 조항이 있으나 포괄적이고 벌칙조항이 미약하기 때문에 실질적 실효성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여성장애인과 관련하여서,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 개의 항으로서만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어 선언적 의미를 지닐 뿐 지나치게 구체성이 결여되어있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하여 여성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입안과 시행을 유도하고 강제하기 위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 관련하여, 제78조 제1호에는 장애인의 입학지원 및 합격자의 입학거부 등의 불이익한 조치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그 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벌금이 너무 적어 교육차별을 받는 당사자의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제구실을 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교육권 박탈이라는 중대성에 비례하도록 제2호 타인에게 의지나 보조기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제3호의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운영자의 신고의무 위반과는 별도로 별개의 항으로 신설되어서 과중한 벌금형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특수교육진흥법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6) 제9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7) 제 18조(교육)
④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 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 장애인의 입학 및 수학 등에 있어서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법은 1977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4년 1월 7일 전면 개정되고 이후 두 차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특수교육진흥법 제 1조). 특히 제 13조[28]에서는 교육권에 있어서의 차별의 금지를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 7조[29]에서는 입학전형 및 수학편의의 제공 등을 언급하고 있다.

위의 규정은 대학 입학 시험 등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지원 자체를 거부하거나 합격된 장애인을 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해소하고자 제정 당시에 도입된 것이다(김원경, 2001).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은 특수교육이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궁극적 의지를 함의하고 있으나 정작 통합교육에 적절한 교육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데에 있다.

한편, 여성장애인의 교육정도[30]는 대학 졸업이 1.2%에 불과해 남성장애인 2.3%, 비장애여성 8.3%와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 여성장애인이 고등교육에서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비율도 15.3%로 남성장애인 29.5%, 비장애인 전체 34.7%에 비해 매우 낮다.

대학입학과 관련하여, 특별전형이 실시된 이후 각 대학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연구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기구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

28) 제 13조(차별의 금지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시험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9) 제 7조 (입학전형 및 수학편의의 제공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의 영역, 장애의 정도 및 능력에 따라 입학 전형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수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수 및 학습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장비 등을 제공하거나 이의 사용 및 인력의 활용 등을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

3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입학을 지원하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연구나 합리적인 사전 논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앞서 문제 제기한 바와 같이 대학의 편의적 입장에서 명목 갖추기 식의 전형태도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에서의 적극적 조치와 더불어, 장애인의 교육권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의 구체성과 장애인교육위원회의 실질적 운용 등의 적극적 태도를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이 법은 1986년부터 꾸준히 제정 논의가 있었으나 1990년 1월13일에야 제정되어 1991년부터 시행되어오다 5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조), 이 법의 핵심은 의무고용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마지막 개정(2000. 1. 12.)이유는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특별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기타 장애인고용의무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 제 3조[31]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직업 재활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제 14조[32]에서는 취업 알선에 대해

---

31) 제 3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32) 제 14조 (취업알선 등)
① 노동부 장관은 고용 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해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 알선 및 고용 촉진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재활실시기관 등 관계 전문 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27조[33]에서는 고용 장려금의 지급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2% 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되어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규채용인원의 5%이상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인원의 의무고용을 지키지않고 있는 사업장이 많음에도 고용부담금 외에 의무고용을 담보해낼 수 있는 벌칙조항이 없어서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고용차별을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경우 취업의 제한성으로 인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고 5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철저한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의 감독과 더불어서 취업상태의 지속성을 전제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졸 장애여성들의 취업상담과 단기간의 연수를 거친 실무 능력을 기르기 위한 적극적 지원제도가 본 법상에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취업에 관하여 관하여 본 법 제3조에 여성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여성장애인을 고용할 시에는 최저기준인 474천원 보다 많은 592천원이, 중증·여성장애인의 고용할 시에는 829천원이 지급[34]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장애인보다 취업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5%로 남성장애인 43.5%, 비장애여성 48.3%와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다.[35] 따라서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많은 제한들을 없애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직업 훈련과 취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33) 제 27조
②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 임금액(이하 “월단위 최저 임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100이하로 하되,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이하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월단위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100이하로 한다.

34) 노동부 고시 2002-24호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 제4조.
3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이 법은 1997년 4월10일에 제정되었고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왔다. 이 법은 장애인등이 생활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제1조)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시설에 관한 사항과 시설주의 의무,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보호 대상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제2조 제1호)"라고 하여 장애인만이 아닌 광범위한 이동약자로 정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편의증진법은 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버스 터미널의 편의시설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다든지, 편의증진법의 소관부처가 여전히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있다는 점,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을 심의할 수 있는 상설 심의기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36] 또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두거나, 대부분이 권고적 조항으로 되어 있어 다른 장애인 관련법들과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력이 미약하다. 소관부처의 부적절성으로 인해 편의시설 설치의 건설관련법으로서 의무와 책임으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지적사항이다.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고령자·신체장애인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 원활화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골자로 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이유를 들어 해당 부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의안의 내용에 대하여 답하지 않았다.[37]

여성장애인과 관련하여 상기의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

---

36) 이민종,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2002.11.19.)

37) "고령자·신체장애인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 원활화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골자로 한 건의안에 대해 건설교통부 측은 "보건복지부가 소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부가 주가 되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기는 곤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라고 답변했다.

인의 32.2%가 스스로 외출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남성장애인의 17.6%에 비해 확연히 많은 수치이다. 또한 집밖의 활동 시 불편정도에 대해 40.0%가 매우 불편하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여성으로서 안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것과 더불어 지체장애인의 경우 남성장애인보다 신체적 “힘”에 있어서 거친 물리적 환경에 의한 영향을 훨씬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사려된다. 따라서 본 법의 실효성있는 대폭 개정이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4) 한국장애인인권헌장

한국 장애인들이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인간"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1975년 10월 9일에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인권선언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998년 12월 9일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이 선포되었다.

인권헌장은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전문을 정하고 그 아래에 13개항의 선언을 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모성권과 관련하여서만 정하고 있다.

2. 국외 법 · 규범 및 정책 고찰

여기서는 외국의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법, 규범 및 선언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뉴질랜드 보건국(Ministry of Health)내의 장애전략[38]을 살펴보면 여성장애인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관련 법 규정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세부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실정이며, 따라서

38) Minister for Disability Issues(2001), New Zealand Disability Strategy, Ministry of Health, New Zealand

아래 뉴질랜드의 사례는 성인지적 장애인 정책 마련을 위해 무엇이 요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주구 있다. 이 전략은 15개의 목표로 이루어져 있고, 각 목표에는 구체적인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는 여성장애인 관련한 항목인 [목표 14]를 소개한다.

[목표 14]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참여 촉진

14.1 여성장애인이 남성과 동일하게 경제적 복지와 교육에의 참여를 성취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의 권리 촉진 및 기회를 제공한다.

14.2 동등하고 적합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한다.

14.3 여성장애인이 그들이 선택한 사람과 환경 내에서 자립적이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14.4 여성장애인에 대한 대우에 있어서 비장애여성과 동일하게 건강과 재생산권 고려와 판단기준을 보장한다.

14.5 모든 장애전략의 개발에 여성장애인의 관점 포함한다.

14.6 여성부(Ministry of Women's Affairs)가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

미국의 경우 [Title 9]가 미국 교육성 인권국(the Office for Civil Rights: 이하 OCR)에서 주관 하에 초·중등교육기관과 대학을 망라하여 연방 재정적 지원을 받는 모든 학교에서 인종, 피부색, 국적, 성과 장애에 근거한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OCR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태의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가 [Title 9]와 효과적인[Title 9] 권리구제 절차 하에 성차별 금지정책을 갖고 있어야 하며, 학교는 성폭력 혐의를 적절하게 조사하여 대처하여야 하고, 학교는 보상적 혹은 학습환경을 악화시키는 성폭력에 대해 즉각적이고 적합한 교정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을 요청하였다.(이혜숙, 2000) 아래는 학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재활센터 내에서 발생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39]이 OCR에 의해 조사되고, 조치된 사례이다.

미국의 한 재활센터에서 장애남학생이 장애여학생에게 공격적인 말과 음란한 제스츄

39) Sexual Harassment Success Stories 자료출처 http://www.ed.gov/office/OCR/success-sexharass.html)

어 등의 성폭력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재활센터는 한 학교와 계약상태에 있었다. 학교 당국은 학교의 성폭력 방지정책을 재활센터에 고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장애여학생 어머니의 성폭력사건 조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OCR이 판단할 때 학교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교내 성폭력을 근절시키는데 불충분한 행위였으므로 OCR은 학교당국이 성폭력 방지정책을 개정하고, 학교와 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기관을 포함해 교내 모든 부서에 개정한 성폭력 방지정책을 보급시키고 직원들을 교육시킬 것을 명령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시민국(Ministry of Citizenship) 산하의 장애문제담당국이 지역사회 내부의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하는 단체들에 대한 특별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타리오 여성 이사회에서는 온타리오의 다른 여성단체들과 함께 캐나다 여성장애인 단체인 '캐나다 여성장애인 네트워크[Disabled Women's Network Canada, DAWN]' 대표단을 자문회로 임명하였다.[40)]

1980년 이후부터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문제해결을 위한 발전전략들이 모색되어 왔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은 1967년에 채택된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선언"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1979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은 1980년 7월 코펜하겐 세계여성대회에서 서명 식을 하고 1981년에 20개국의 비준을 얻음으로써 효력을 발휘하였다. 이 협약에 의하면, 여성에 대한 차별은 인간존엄에 위배하고 사회와 가족의 번영을 저해하는 것이며, 모성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자녀 양육은 남녀 그리고 사회전체가 함께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기본 인식하에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제1조에는 여성차별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에는 협약의 당사국은 여

40) 장애여성공감(1999). 캐나다 장애여성운동 1983-1993(54쪽). 공감, 2

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성차별 철폐를 위해 협약국이 정책과 법 정비 등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없이 추진하도록 일반적 조치를 열거해 놓았다. 그리고 근본적 차별 규정과 조치 이외에도 제2장에서는 경험적 차별의 상황에 근거하여 각 분야에서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광이, 2002).

제3차 나이로비 세계여성대회(1985)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권익확보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므로써 전세계에 여성장애인 문제를 환기시켰다. 구체적으로 행동강령 중 296조 장애여성 관련조항에는 장애여성의 사회참여에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여성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제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 (1995)은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세계 각 나라가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 제도를 마련할 것이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행동 강령 중 여성장애인의 성과 인권관련에서 언급된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무력분쟁', '인권' 부분 등이다. 구체적으로 116항에는 여성장애인은 특히 폭력에 취약하다고 언급되어 있고, 124항의 정부의 활동부분 중 13번째에는 '여성장애인에게 여성에 대한 폭력부분에 대해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접근을 도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126항 네 번째에는 여성장애인과 같이 취약한 계층의 여성 이주자를 위해 적절한 법률을 개발하고 특별조치를 취할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131항에는 무력분쟁하에서 여성장애인이 다른 취약계층과 함께 인권침해를 받으므로 무력분쟁이 중단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225항에는 다른 취약계층여성과 함께 장애라는 요소 때문에 여성장애인은 인권에 대한 지식 및 인식의 부족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밝히고 있다.

1970년대부터 각종 국제기구에 의해 채택된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선언과 행동강령이 나타났다. UN은 1971년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1975년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채택하고, 1976년에는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1980년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에서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이념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1993년에는 "장애인의 기회균등화에 관한 표준규칙"을 의결하였다. 장애인 권리선언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하여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생래적인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그 장애의 원인·특질·정도에 관계없이, 같은 연령의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이는 일차적으로 가능한 통상적으로 만족스러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제3조).”고 하고,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의 타인과 동등한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제4조), 의학적·사회적인 재활교육,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제6조), 장애인은 경제적·사회적 보장을 받아 상당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UN의 장애인의 기회균등화에 관한 표준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등한 참여”를 전제로 하여 접근권·교육·고용·소득유지와 사회보장·가정생활과 인적 통합·문화·오락과 스포츠·종교에 있어서의 평등을 규정하고, 이어서 이행조치와 감시체계에 대해 정하고 있다. 특히 접근성에 대하여 “국가는 모든 사회영역에서의 기회균등화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어떤 유형의 장애인을 위해서도 국가는 물리적 환경을 접근하기 쉽도록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정보와 통신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인적통합에 대하여 “국가는 장애인들이 가정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국가는 장애인들의 인적통합에의 권리를 증진하여야 하며, 남녀관계·결혼·친자관계에 있어서 법적으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제9조)”고 명시하고 있다.

Ⅵ. 결론

1.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재개념화: ‘이중차별’에서 ‘여성장애인차별’로

본 연구는 최근 장애인운동 영역에서 새로운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이 고등교육과정에서 어떤 차별을 겪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여성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양적 방법을 이용해서 차별의 광범위한 영역을 개괄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이 겪는 복합적인 차별 양상을 드러내는데 한계를 가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해서 여성장애인이 겪는 차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현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28명의 여성장애인을 심층 면접했으며, 면접에서 나타난 여성장애인의 차별경험을 분석하여 유형화하였다.

면접결과를 유형화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어 온 ‘이중차별’이라는 용어가 여성장애인의 차별경험을 드러내는데 매우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성장애인이 겪은 차별경험 중 ‘이중차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차별경험은 계속 ‘여성으로써의 경험’과 ‘장애인으로써의 경험’으로 분리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경험은 축소되거나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이중차별’에 대한 개념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이면서 장애인으로써의 이중적 위치에 있는 여성장애인의 경험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에 의해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복합적인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보다 연구자의 의도에 의해 여성장애인을 피해자 집단으로 고정시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면접결과 여성장애인은 각자의 차별감수성과 차별대응양식에 기반해서 다양하게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차별경험은 ‘이중차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명명할 때보다는 ‘여성장애인차별’로 명명할 때 여성장애인의 차별경험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 여성장애인의 입장에서 인식되고 문제 제기된 내용이 여성장애인 차별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고, 이는 때때로 비장애여성의 경험과 같을 수도 있고 남성장애인의 경험과 같을 수도 있지만, 결코 어느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의 사회적 위치에서 경

험되어진 차별인 것이다.

2. 여성장애인 차별의 특성

연구 결과 대학교육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여성장애인은 가족, 교사나 교수의 낮은 기대치에 의해 수학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능력개발을 위한 물질적 투자, 관심과 배려의 지원 정도에 대해서 면접에 응한 대부분의 여성장애인은 차별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대학교육과정에서 일부 교수들은 여성장애인에게 출석을 부르지 않거나, 결석을 권하기, 시험 안볼 것을 권하기, 계속 똑같은 점수를 주는 등 획일적으로 평가하기, 질문하지 않기, 취업추천하지 않기 등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여성장애인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 내에서도 대학에 진학하도록 격려하지 않거나 '위험한 세상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이유로 진학을 반대하기, 대학 진학 준비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비웃기, 대학진학보다는 직업교육이나 집중적인 물리치료를 권하기 등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수학능력개발을 저해하고 있었다.

둘째, 여성장애인을 무성적 존재로 규정하는 사회적 태도에 의해 여성장애인은 인격이 무시되는 경험을 할 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에도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에서도 여성장애인은 여성이 아닌 존재 혹은 '제3의 여성'과 같이 다른 범주의 여성으로 규정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는 장애인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만들거나 장애인화장실을 남자화장실 안에 만들어 놓는 학교당국의 태도, 여성장애인에게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반대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동료들의 태도, 여성장애인을 미팅에서 당연히 배제하는 동료들의 태도, 도움을 빙자해서 여성장애인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주변사람들의 태도 등이 요인이 된다. 특히 여성에게 외모가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고 있는 사회풍토는 사회의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의 몸'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몸을 가진 여성장애인의 인격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유발시키고, 여성장애인 스스로도 낮은 자의식을 갖게 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셋째, 여성장애인의 요구가 비장애여성의 요구에 의해 가려짐으로써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가 비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의 여학생 휴게실의 경우 비장애여성 중심으로 시설과 공간이 마련되어서 여성장애인은 이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생리대 자동판매기의 경우 역시 비장애여성의 키 높이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동전을 구멍에 맞추어 넣어야만 생리대를 살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휠체어를 탄 여성장애인이나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생리대 자동판매기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비장애여성의 요구에 의해 마련된 시설은 그 시설이 마련 된 것 자체에 큰 의미가 부여되면서, 여성 집단 내에서 소수자로써의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넷째, 여성장애인의 요구가 남성장애인의 요구에 의해 가려짐으로써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가 비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많은 대학교 내에서 장애대학생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들 모임의 활동은 대학이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남학생이 주도가 되어 진행될 때, 이들이 학교측에 제시하는 요구는 남학생의 경험에 기반한 요구일 수 있으며, 장애인 집단 내의 소수자로써의 여성장애인의 요구는 가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 없이 설치된다거나,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에 대해 특별한 예방대책을 제안하지 않는 것은 여성장애인의 요구가 상당부분 가려지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다섯째, 장애인 집단 내의 성별위계에 의해 여성장애인이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대학생으로 이루어진 동아리에서도 회장을 비롯한 간부 직책은 남학생이 대부분 차지한다거나, 성별분업으로 인해 장애인단체에서 뒤치다꺼리는 여성장애인의 담당으로 고정된다거나,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에게 “여자가 뭐야”라는 식의 성 차별적 발언 또는 폭언을 하는 태도가 여기에 포함된다.

여섯째, 여성장애인의 취약한 자기방어능력은 여성장애인을 폭력에 쉽게 노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의 경험이 적은 여성장애인은 대인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위축을 느끼며 이는 신체적으로 취약한 자기방어능력과 결합되어 여성장애인이 폭력에 노출될 위험을 높인다. 교내에서 지나가던 남학생이 도움을 빙자해서 신체접촉을 하거나 불쾌한 시선으로 바라본다거나, 교직원이나 경비원, 매점 직원 등에 의한 신체접촉은 이런 맥락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일곱째, 대학의 물리적 편의시설과 도우미제도와 같은 행정지원체계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성장애인이 대학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의존적 상태는 여성장애인의 대학생활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은 성장과정에서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를 배우기보다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여성성을 강요받으면서 수동적인 태도를 배울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교내에서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은 이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겪는 불편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남성장애인이 대체로 남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과 비교할 때, 여성장애인이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남성장애인과는 상당히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사례 유형화를 통해서 고등교육과정에서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가시적·비가시적 차별양태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여성장애인의 차별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여성장애인 차별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차별 해소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교육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이 전체 여성장애인 중 극소수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여성장애인이 겪는 차별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고학력 여성장애인에 대한 최초의 차별사례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여성장애인의 교육권 문제가 주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여성장애인의 차별경험은 사회에서 비가시화되어 왔었다. 따라서 비록 적은 수이지만 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흔히 '지성의 공간'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학에서 어떻게 여성장애인을 차별하는 구조가 작동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교육과 관련해서 다른 여성장애인에게 새로운 역할모델을 제공한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교육인적자원부(2001, 9). 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2002.3.28).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안('03-'07).

권선진(1996).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와 특성: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광이(2002). 장애여성관련법.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인권아카데미 강의 자료.

김남순(2001). 장애 학생의 특례 입학과 대학시설환경 및 제도에 대한 연구.

김동연(1997). 장애학생 특례입학 제도에 따른 대학교육 지원 체제 연구. 한국미술치료학회지, 4(2).

김동연, 김영환(1998).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방안.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김동연(1999).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방안. 현장특수교육, 21(4), 8-16.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김성재 외(1998). 장애인 정책 입문. 서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종인(1999). 대학의 장애학생 진로와 대책. 현장특수교육, 21(4), 34-41 안산: 국립 국립특수교육원.

김원경(2001). 특수교육법신론. 서울: 특수교육.

김은정(2000). 장애여성의 몸의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김정열(2001). 편견의 법제와 장애인 수용 시설의 현실. 당대비평, 14(1). 서울:삼인.

김천우(2000). 장애대학생의 학교 생활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형수, 김형욱 외(2001). 무장애대학만들기.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대구여성장애인연대(2002). 여성장애인 자립생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 보고서.

박경숙(2000).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욕구와 대학교육. 한국대학교육협회지, 108,

6-13.
박계순(2000). 대학 입학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 전형. 현장특수교육, 26(6), 34-35.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박승희, 강영택, 박은혜, 신현기, 이효신, 정동영(2001.11). 특수교육 발전 5개년 (2003-2007)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박영희(2001). 장애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당대비평, 15(2). 서울: 삼인.
박옥순(1999). 장애학생 대학입학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현장특수교육, 21(4), 17-25.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서울특별시·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개발.
성남여성의 전화(2001). 여성장애인의 일상을 통해 본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성남시 재가성인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송미섭(1996). 한국고등교육의 변천: 1945-1995.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12.
양재신(2000). 장애인 대학 특례입학 장애 대학생의 교육환경. 현장특수교육, 26(6), 40-44.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오경자, 김기환, 이정윤(1998).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모형개발연구.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
오혜경, 김정애(2000).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서울: 학지사.
원종례(2001). 장애 대학생의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연구, 8. 47-70.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이예자 외(2000).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혜숙(2000).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16.
장애인복지신문(2002. 11. 15.).
장애여성공감(1999), 공감 2호.
장애여성공감(2000), 공감 3호
정근식(2001). 장애의 새로운 인식을 위하여. 당대비평, 14(1). 서울:삼인.
정동영, 김용득, 김종인, 김주영(2000). 특수교육비전 2020. 안산: 국립 특수교육

원.

제주 DPI 장애여성특별위원회(2001). 제주도 장애여성실태 및 차별에 관한 연구보고서.

조한진, 박태영(1998). 대학의 장애학생을 위한 서비스·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특수 교육논집, 15.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2002, 3). 전국특수교육요람.

Kittay, E., Silvers, A. & Wendell, S. (2001). Introduction. *Hypatia 16*(4).

Morris, J. (1991). *Pride Agaist Prejudice: Transforming Attitude to Disability.* Philadelphia: New Society Publishers.

Wendell, S. (1996). *The Rejected Body: Feminist Philosophical Reflections on Disability*.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인터넷자료 >

Rannveig Traustadottir. (1990). *OBSTACLES TO EQUALITY: The Double Discrimina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Overview Article.* Center on Human Policy. (http://dawn. thot. net/disability. html.)

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Research, U.S. Department of Education, *Chartbook on Women and Disability in the United States.* (http://www.infouse.com/disabilitydata/womendisability. html.)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http://www.sisters.or.kr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http://www.idhome.net/welfare_low.htm

부 록

1. 면접지
2. 자문회의록

부록 1. 면접지

1. 전반적인 질문사항

이름, 학교, 전공, 학년, 나이,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력, 학비조달방식(경제수준), 입학유형 (인터뷰 끝난 후: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

2. 대학 진학 과정(입시준비, 입학전형)에서의 차별조사

<분석내용>

(1) 입시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내용
(2) 입시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족배경, 지역, 자존감, 경제적 조건, 장애유형 및 정도, 이전 교육경험 등)
(3) 입학전형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내용
(4) 차별을 막기 위해 입학전형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원의 내용

<해당 질문>

(1) 대학에 진학하는데 영향을 준 특별한 동기가 있었나요?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치거나, 도움을 준 것, 힘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2) 입시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준비과정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3) 입시준비를 어렵게 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족에게는 어떤 지원을 받았습니까?
(4) 입시준비과정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더 불리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나요?
(5) 입학시험을 볼 때 상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6) 시험감독관이나 대필자 혹은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

겠습니까?

(7) 건물이나 교실의 구조, 책상의 배치, 화장실 등 주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8) 지금까지 말하신 것 중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장애인과 다르게 경험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9) 여성장애인이 제대로 실력발휘를 하기 위해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어떤 전공의 교수가 어떤 질문을 던졌나요? 면접 때 불쾌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3. 진로준비과정에서의 차별조사

<분석내용>

(1) 진로준비과정에서의 차별
(여성 장애인의 미래에 대한 본인 및 가족, 교사, 친구 등의 인식태도 포함)

(2) 진로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의 내용

<해당 질문>

(1) (재학생일 경우) 졸업이후의 진로에 대해 계획한 것이 있으십니까?
(1-1) 왜 그 일을 선택했습니까?
(1-2) 그 계획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2) (졸업생일 때) 졸업이후의 진로에 대해 언제부터,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그리고 나서 어떤 준비를 했나요?

(3)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진로계획을 세울 때 얼마나 고려하나요?

(4) 진로준비에 필요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5)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6) 진로계획에 대한 가족, 교수, 교직원,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나요?

(7) 불쾌감이 생기게 하거나 진로준비에 의욕과 용기가 없어지게 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8) 여성이기 때문에 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9) 꾸준히 진로준비를 하도록 자극이 되거나 용기를 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0) 효과적인 진로준비를 위해서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 여성에게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4. 교육현장의 물리적 환경실태 파악

<분석내용>

(1) 필요한 물리적 편의시설 부족의 문제
(2) 물리적 편의시설의 성별성의 문제
(남성장애인 기준에 맞춰 만들어지는 편의시설)
(3) 여성 장애인을 위해 요구되는 물리적 환경

<해당 질문>

(1) 교내, 학교 입구 등에 학교가 장애학생들을 위해 만든 편의시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 학교의 편의시설 등 물리적 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3) 편의시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얘기해주시겠습니까?
(4) 여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나요?
(5) 학교의 편의시설 중 장애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요?
(6) 그 편의시설 이용자 중 남녀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7) 어떤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 특히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학습과정에서의 차별실태 파악

<분석내용>

(1) 학습지원에 있어서의 차별

(2) 강의방법과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있어서의 차별

(3) 교수, 동료, 행정직원들의 차별적 태도

(4) 효율적인 학습과정을 위해 요구되는 지원의 내용

<해당 질문>

(1) 학습과정과 관련해서, 학교 또는 외부단체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1-1) 지원신청을 할 때 필요한 자격요건, 필요사항이 무엇인가요?

(1-2) 지원신청과정에서 특히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장애인이 있나요?

(2) 수강신청, 수업듣기, 시험, 과제작성 등의 학습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2-1) 관심 없고 듣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서 수강 신청하는 과목이 있습니까? 그것이 학점, 학업의욕에 영향을 미쳤나요?

(2-2) 과제에 필요한 자료수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2-3) 도서관은 얼마나, 어떻게 이용하나요?

(2-4) 시험 볼 때 공부한 내용을 충분히 잘 썼다고 생각하나요?

(2-5) 평가방법이나 기준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2-6) 자신이 받는 학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3) 수업 중 교수 태도 때문에 불쾌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4) 친구들과 공동과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불쾌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5) 학습과정에서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이 다르게 경험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최소한 내가 여자만 아니었다면 이런 경험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7) 좀 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성희롱, 성폭력 실태 파악

<분석내용>

(1) 장애여대생의 성희롱 민감성 및 인지도
(2) 장애여대생에게 가해지는 성희롱 유형 및 사후 처리방식
(3) 장애여대생에게 가해지는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해당 질문>

(1)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해 알고 계신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주시겠어요?
  (1-1)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이슈가 된 사건이 있나요?
  (1-2) 교내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1-3)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2) 본인은 학교생활 중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추근대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대응했나요?
(3) 학교생활 중 쾌감은 주는 신체적 접촉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4) 학교생활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주변에서 아는 사람, 혹은 전해들은 이야기 중에 성희롱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5) 여성장애인이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에서 비장애여성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나요?
(6) 교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차별 감수성 정도 및 차별에 대한 대응양식 파악

<분석내용>

(1) 장애여대생의 차별 인지 정도 및 자신에 대한 이해 태도
(2) 장애여대생의 차별적 상황에 대한 이해 태도
(3) 장애여대생에 대한 차별을 비가시화시키는 요인

<해당 질문>

(1) 주위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 선입견을 갖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나요?
(2)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다르게 겪는 경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1)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보다 불리할 때가 있다면 언제인가요?
  (2-2) 책이나 자료집에 보면 “여성장애인이 이중차별을 받고있다”는 말이 많은데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3) 성차별과 장애인차별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사례를 말씀해주시겠요?
(3) 여성학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3-1)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면 어떤 내용을 들으셨나요?
  (3-2) 수업을 안 들었다면 안 들은 이유는 뭔가요?
(4) 장애인계 혹은 장애인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사례가 있나요?

부록 2. 자문회의록

◆ 일　　시: 2002년 12월21일(토) 오전 10시

◆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회의실

◆ 회의안건: 현재까지 완성된 연구보고서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

◆ 참 가 자:

자문단 - 김형수(무장애대학만들기 연구원)
배복주(장애여성 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박지주(대학 상대 학습권 소송 당사자)
조 옥(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정책담당)
민숙희(한국시각장애인대학생 연합 회원)
한승희(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연구원)

연구자 - 김은실(책임연구원,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김광이(연구보조원, 법학 전공)
나수현(연구보조원, 특수교육학 전공)
박하연(연구보조원, 여성학 전공)
양은진(보조원, 특수교육학 전공)

◆ 사　　회: 김은실 책임연구원

박지주(대학 상대 학습권 소송 당사자)

- 한국사회에서 고등교육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고등교육의 목적을 밝히는 것이 필요함. 여기서 말하는 고등교육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함.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온 자료 인용에서 적응이라는 단어는 재고의 필요성이 있음, 교육이 적응은 아님.

- 통계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됨. 얼마나 휴학을 했는지 자료 보충 필요.
-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청각이 2명밖에 없음.
- 부모가 자녀의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비장애인에게도 큰 영향. 여성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드러날 필요가 있음.

한승희(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연구원)

- 사례를 너무 짧게 인용하거나 설명하지 말고 장애와 언급이 맞물리면서 이야기가 되어야 함.

박지주(대학 상대 학습권 소송 당사자)

- 대학의 구체적인 입시 전형에 대해서 훑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런 항목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지. 분석이 필요. 장애가 있어서 지원하지 못하는 과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도 필요.
- 차별을 드러내는 방법에 있어서 자신이 차별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차별을 조사하면, 자의성이 들어갈 수 있고, 질적 조사의 한계를 가질 수 있음. 차별감수성 부분을 차라리 보고서 앞으로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교육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게 이중차별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장애인남성과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차이에 대한 부분을 더 다룰 필요 있음.

민숙희(한국시각장애인대학생 연합 前회장)

- 여성장애인에 초점을 맞춘다면, 교육권말고, 여성성을 드러낼 수 있는 주제, 예를 들어, 이성교제를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 차별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잘 나누어 놓았지만, 사례가 좀 적절치 않음, 적합성이 떨어짐.
- 수정해야 할 용어가 몇 개 있음. 약시는 저시력의 하나의 질환명. 약시보다 저시력인이라고 하는 게 올바른 어휘. 장애여성과 여성장애인이라는 용어가 혼합되어 있음. 특별전형과 특례입학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특례입학은 시혜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장애학생 특별전형으로 용어를 고치는 것이 필요함.

- 사례에서 시각장애인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에 놀랐음. 특수교육 때문에 일어나는 중등교육에서의 문제는 장애인들이 다닌 특수학교의 경우, 직업교육 중점적으로 하고 있음. 이료(안마, 침술) 역사 깊음. 시각장애인의 경우, 100%이료교육을 받고 있음. 선택의 여지가 없음. 피하고 싶으면 일반학교를 가거나, 집에서 과외를 함. 이것은 중등교육권의 침해. 헌법소원의 여지도 있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여기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었음.
- 시각장애인은 특수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특수학교에서 말하고 있음. 자신이 피아노를 할 때, 특수학교 교사들이 왜 피아노를 하느냐고, 특교과에 가서 특수교사를 하라고 권유. 점력을 외국에서 들여왔음. 여자니깐 더 그랬음. 안마나 해라, 대학은 왜 가나. 안마사로서의 여성의 가치는 굉장히 높음. 안마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남자니깐. 돈을 벌어서 가정에 보태는. 시작장애인의 경우 재정적인 자립도 높음. 부모들이 그걸 앎으로써, 여성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정의 생계를 꾸리는. 사회복지과 가서 사회복지사 되라, 시각장애인들에게 특수교사, 가족들이 많이 이야기 함.
- 시험출제 방식에 대해서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에 대해 대체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현실. 면접관이 눈은 안 보이는데 들을 수는 있나. 글씨는 쓸 수 있나. 지적인 능력에 의심하는 질문을 많이 함.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피아노를 쳤나. 감각장애의 경우 지적인 능력에 의심을 많이 받음.
- 사설기관의 문제에 대해서 들어갔다는 것이 이채로웠음. 시각장애인의 경우 정보접근이 안 됨. 보습학원의 경우, 대부분 판서로. 비주얼한 것으로. 별로 말씀을 안 하심. 특별한 배려가 없음.
- 대학에서 저시력 학생들의 경우, 법적으로도 별로 보장되지 않음. 편의시설 증진법도 전맹을 대상으로 함.
- 시작장애인들의 위한 확대안내문을 마련해야 한다. 좀 낮은 위치 160센티 이하에 명도차가 많이 나도록.
- 점자로 트랜스크립션 할 수 있는 기계, 점자로 출력할 수 있는 노트북,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한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물리적인 기자재, 행정적인 지원, 시각장애인에게 정말 필요.
- 출판사의 원본 파일을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지만 꼭 필요함.

- 장학금을 바탕으로 한 책임있는 도우미가 필요함. 공식적인 학교의 책임 하에 도우미 제도가 있어야 함.
- 장애학생을 위한 행정적인 루트가 있어야 한다. 학부제가 있다보니깐, 장애학생을 전담하는 아카데믹 어드바이저가 있어야 함. 수강신청이나 이런 것은 정보접근에 관한 것과 관련. 공지사항을 못 봐서 장학금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
- 취업에 문제로 넘어가서, 시각장애인들이 다른 문자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접근의 문제와 낯설음. 그래서 점자로 옮겨줘야 하므로, 경쟁력이 떨어지니깐.
- 차별 사례보다는 원천적인 접근성 문제가 있는 상황.
- 여성들의 문제를 좀 더 드러내기 위해, 장애 여성이 이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 남성과 이성교제를 함에 있어서도 불평들을 느끼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적극적으로 이성교제를 뛰어들지 않고 내가 무슨 남자친구냐라는 생각을 함. 이성교제에 있어서 장애남성보다 장애여성들이 더 불리한 입장. 장애남성은 비장애인 만나는 게 사회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 그러나 장애여성들이 비장애인 남성을 만나면, 남자가 문제가 있거나, 여성장애인이 능력있다고 생각함. 장애인들끼리 사귀는 데에도, 부모들도, 연세대 정도면 장애 남성이 너 정도 되면 왜 장애여성과 사귀느냐. 똑같은 상황에서도(학벌, 장애)장애여성들은 차별받게 됨. 불공평을 느낌. 집에서는 차별을 받지 않았지만. 장애여성으로서 이중적인 마이너리티 경험. 모멸감 느낌.
- 장애여성으로서 동료들과 구분되는 사례도 있음. 과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남자면 같이 어울리는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좀더 남자가 술을 마셔도 괜찮다고 함. 그러나 장애여성이 그러는 것은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어려워함. 여성장애인이니깐 술마시고 취하면 추하다고 사회적으로 생각하므로, 술자리에 가는 것이 조심스럽고 부담감을 가지게 됨. 미팅에서도 당연히 제외됨.
-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여자가 나 밖에 없어서 남자들한테 화장실까지 데려다달라고 할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 있었음.

배복주(장애여성 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 용어상의 문제. 장애에 대한 정확한 명칭에 대한 언급. 연구팀에서 일관성 있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석을 달든지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 지체장애, 여성장애, 남성장애, 용어에 대한 정리필요.

- 사례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함. 기존연구나 활동가나 가지고 있는 기조가 토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는 생각. 사례가 중심이 되다 보면, 사례에 매몰되는 문제가 있음
- 특별전형 이전의 대한 사례가 없다는 것. 기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 장애인차별에 대한 역사성이 많이 보완되어야 하겠다는 생각. 특별전형 이전 세대에 대해서 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한 생각이 지금의 특별전형으로 이어졌다. 교육권 차별에 대한 역사성을 많이 첨가하는 것이 필요. 장애인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 사이에 교육권에 대한 운동이 어떻게 이뤄졌고, 생각은 어떤지.
- 장애여성운동에 대해서도 어떻게 문제 제기가 되었나 하는 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
- 선행연구에서 외국문헌의 흐름과 한국문헌의 흐름이 너무 맞춰지고 있다는 생각. 외국문헌의 흐름으로 한국문헌의 흐름이 정답인 것처럼 느껴짐.
- 접근성과 이동에 대한 부분이 많이 혼합되어 있는데 접근성이 여기에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고,(정보, 물리적 접근) 접근권을 통칭해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사회적으로 물리적인 이동권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필요.
- 실태조사에 있어서도, 민간과 정부기관이 조사 한 것은 가치가 다른데, 한데 묶어놓았음.
- 고등교육 이전에 대해서 장애여성들에 대해서 가족들과의 갈등 많음. 학력이 무학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위축,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심한데, 가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함. 취업이 안 되니깐 기대감이 낮은. 내가 공부를 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
- 고등교육에 있어서, 학교 수업만 치중되었는데, 과외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다루어야 한다는(이성교제 등)
- 수업에 있어서도, 특별전형 이전에는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음. 2,3천명 중에서 장애학생이 혼자라서 전혀 배려가 없었음. 특별전형 이전에 대한 세대들에 대한. 과가 많이 제한되어 있었음. 음대와 미대 접근이 불가능했음. 대부분 특교과, 사회복지과. 이공계는 거의 불가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거의 찾아볼 수 없었음. 10%도 안 됨.

- 교육권의 운동도 대부분 장애 남성 위주. 대부분 의, 약대, 한의대에 관련해서 싸움. 소송의 대상자들도 거의 남성들이. 그런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지 않았나 언급 필요.
- 취업에 있어서도, 인식이 굉장히 경직, 편견, 선입견.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의 경우에도. 동아리 선배들 남자들 대부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취직. 여성장애인은 거의 없음. 어느 저시력 장애인은 편견, 선입견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 발휘 못했음. 뇌병변 장애의 경우 속도 느려서. 특히 여성장애인들을 편견 심함. 특별전형을 해서 많이 입학은 시키지만,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냐에 대해 문제. 장애여성들 중에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음. 취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학교가 담당해야 한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 성희롱에 있어서 좀 다른 조사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음. 성희롱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이기적으로 쓸 필요가 있음. 타자에 관련해서 많이 쓰여졌는데,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겠음.
- 이중차별보다는 장애여성이 겪는 차별을 다 포함해서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사회가 너는 장애고,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 받는다는 것은 아니니깐. 이중차별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차별에 대한 민감성도 좀 더 민감해야 되지 않을까. 대학내에서 나온 사례라서 차별이 약한데, 보고서가 보강이 되려면 일생을 보고, 차별을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
- 사례보다는 쟁점을 부각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김은실(책임연구원,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 이 보고서는 사례중심으로 푸는 것임.

배복주(장애여성 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 공감 내에서 이 보고서에 대한 공유를 했는데, 왜 이런 보고서를 써야 하는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아예 접근이 안 되는데, 대안을 쓰는 게 낫지 않은가. 특별전형 이전에는 휠체어를 타거나 하면 대학에 들어올 수 없었음.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 다 시키므로, 대학에 안 들어옴. 굉장히 혜택받은 장애여성의 문제가 아닌가.

김은실(책임연구원,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 여성장애인에게 학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얘기할 필요가 있음.

배복주(장애여성 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 이중차별에 대한 정리가 필요. 차별/소외되는/배제되는 다 포함해서. 개개인들이 느끼는 차별의식은 다를 수가 있다는 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해줄 것.

김은실(책임연구원,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 이중차별보다 장애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이라는 용어가 낫지 않을까.

김형수(무장애대학만들기 연구원)

- 대구대의 약점이, 장애학생은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20만원을 장애학생이 용돈으로 쓰기 때문에, 문제 제기 할 수가 없음. 학교측에 포섭되는 것임.

배복주(장애여성 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 여성장애인의 경우, 남성장애인한테 다른 차원에서 부탁함.

김형수(무장애대학만들기 연구원)

- 서울대도 문제. 대구대는 이원화되어 있음. 대구대는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서비스 잘 받는 학생과 받지 못하는 학생으로.

배복주(장애여성 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 특교과나 사회복지과는 취업이 보장되므로,

김형수(무장애대학만들기 연구원)

- 장애학생이 특수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폭력.
- 이 보고서가 장애인 특별전형을 잘하자는 얘긴가, 장애인 여대생에 대해서 복지

를 잘하자는 것인가. 장애인 여대생이 누군가. 분석의 틀을 정확하게 가졌으면 좋겠음.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차이점이 없음. 기존의 사회복지, 특수교육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차이가 없음. 참고문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음. 그런 논조로 가고 있다는 것이. 사례연구 중심으로 하다보니, 사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가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움. 비교연구하는 것이 좋을 듯. 민숙희씨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잘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음. 장애에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 통일성 있게 개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 이중차별이라기 보다, 장애인과 여성이 합쳐진 존재가 차별을 받거나 하는 것이지, 반 갈라서 장애 반, 여성 반이 아니라 통합적, 총체적 차별을 갖고 있다는 용어로 지향. 왜 장애인 대학생들이 의식이 낮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가. 특히, 여학생들이 심각. 원인들을 분석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사춘기까지 내려감. 장애 청소년들을 분석하고, 캠프를 여는 것이. 특수학교에 있는 여학생들을 분석해서, 정체성에 대해. 그것이 고등교육까지 연결되는. 장애인으로서 대구대에 다니는 것이 자부심이 낮음.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자부심이 높음. 일본, 영국, 프랑스의 경우에 장애여학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연구를 넣는 것이. 통계치에 대해서 빼는 것이 좋을 듯. 비장애인이나 장애남성들 위주로 된 거라서 더 위험함. 미주나 각주로 하는 것이. 질적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 인터뷰 중심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를 중심으로 접근하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분석이 필요. 당사자가 봤을 때, 제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를 방지할 수가 있음. 재학생, 교직원, 교수들, 부모들이 장애학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 한국사회에서의 장애인여대생의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음. 부모들을 인터뷰하면 다른 내용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소송을 내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박사 공부해서 학교와 맞서는 것이 옳은가를 분석해서.

조 옥(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정책담당)

- 여성장애인 차별을 바라볼 때, 어떻게 차별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방법론의 문제. 여성장애인 무학력, 저학력. 과연 장애대학생이 있는데, 여학생은 보이지 않고, 차별 상황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고. 고등교육 시대로 가게 될 텐데, 고등교육에서 차별을 받는. 통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성별 통계치가 안 되어

있음. 그런데 성별 통계가 안 되어서 이 보고서가 공허한 면도 있음. 3개월 가지고 다 담는 것을 한계가 있음. 대안으로, 이중차별보다 여성장애인의 차별. 교육권을 중심으로. 3쪽에 고등교육권이 바로 나와서 논리적인 비약. 연구의 필요성에서 교육권에 대해. 이론 보강측면에서, 연구, 정책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빠져 있다는 것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차별을 앞부분으로 옮기는 것이 어떨까. 차별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못 느끼면 차별이 아닐 수 있음. 20대에는 교육을 받고 있고, 노동시장 접근이 안 되어서 차별 의식을 드러내는 데에 한계가 있음.

한승희(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연구원)

- 이동이 넓어지면서 차별을 많이 느끼는데, 대학을 간 사람들이 더 차별을 받지 않을까. 고등교육에 한정을 시키는 것이 이 보고서의 범위를 잡는데. 자료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배열하는 것이.

조 옥(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정책담당)

-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여성장애인들이 남성장애인들보다 생활에서 더 만족하고 있다는 자료인데, 이것을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음. 정책관련해서, 정책입안자들이 성인지에 관한 관점이 없음. 교육정책 쪽에서 성인지에 관련된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 보고서 끝에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 성인지 의식이 없다는 것에서 문제 제기. 성교육, 성인지 에 관련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취업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취약. 많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생각.

<끝>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여성장애인차별에 관한 사례연구
-고등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발 행 일: 2002.12.30.
주관기관명: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ISBN 89-90475-15-5 93330